



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발 간 번 호

11-1092084-000019-01



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2022. 11.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발 간 번 호

11-1092084-000019-01



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2022. 1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홍종

연구진

<연구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 율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송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유애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박차미

본 보고서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위탁되어 연구책임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울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연구진들의 참여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무조정실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차〉

Ⅰ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1
제1장 2022년 기관역량진단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연구방법 및 진단절차	3
가. 진단방법 설계	4
나. 기관역량진단 세부 추진절차	7
3. 진단대상 기관의 사업구조분석	9
제2장 기관역량진단 결과 분석	27
1. 총평 및 주요 특징	27
2. 진단 항목별 결과 및 사례 분석	31
가. 진단 항목별 주요 결과	31
나. 항목별 상세 분석	35
3. ODA 기관역량 개선 방안	59
가. 교훈	59
나. 개선 방안	61
제3장 개선과제 및 시사점	67
1. 기관역량진단의 주요 성과	67
2. 기관역량진단 개선과제	68

□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컨설팅 71

제1장 2022년 기관컨설팅 지원 개요 71

1. 추진 배경 71
2. 대상기관 71
3.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72
4. 컨설팅 항목 수요조사 74
5. 컨설팅 진행 절차 75

제2장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결과 77

1. 자체 역량진단 대상기관 현황 및 시사점 77
2.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결과분석 79

제3장 기관별 컨설팅 요청사항 83

1. 수요조사 결과 요약 83
2. 공통 요청사항 84
3. 기관별 요청사항 85

제4장 컨설팅 결과 공통내용 87

1. 사업 수행체계 87
2. 평가 수행체계 96
3. 기타 사항 100

부록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101
부록 2.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115
부록 3. 국무조정실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	118
부록 4.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기준	136
부록 5. 2022 ODA 성과관리 워크숍 발표자료	139
부록 6. 2022 ODA 성과관리 워크숍 토론자료	148
부록 7. 기관역량진단 기초자료 양식	155

〈표 목 차〉

Ⅰ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표 1-1. 기관역량진단 항목 및 지표	2
표 1-2.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시행 대상 기관	3
표 1-3.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시행 대상 기관의 ODA 사업구조	6
표 1-4. 기관역량진단 세부 추진절차	7
표 1-5. ODA 성과관리 워크숍 프로그램	9
표 1-6. 상위규모 대상기관별 양자 ODA 사업 현황(2021년)	10
표 1-7. 중위규모 대상기관별 양자 ODA 사업 현황(2021년)	12
표 1-8. 대상기관별 자체평가 현황(2021년)	15
표 1-9. 교육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16
표 1-10.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실적(2010~21년)	17
표 1-1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18
표 1-12.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실적(2015~21년)	19
표 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 실적(2013~21년)	20
표 1-14. 해양수산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21
표 1-15.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실적(2013~21년)	22
표 1-16.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23
표 1-17. 법무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23
표 1-18.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실적(2015~21년)	24
표 1-19. 관세청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25
표 1-20. 기상청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26
표 1-21. 문화재청 자체평가 실적(2016~21년)	26
표 2-1.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등급)	27
표 2-2.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평균점수)	27
표 2-3. 규모별·부문별 평균 역량 점수	29
표 2-4. 성과관리 역량 부문 진단 요약	31
표 2-5. 자체평가 역량 항목 진단 요약	32

□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컨설팅

표 1-1.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73
표 1-2. 기관컨설팅 수요조사 항목	74
표 1-3. 기관별 추진현황 및 날짜	76
표 2-1. 2021년도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17개)의 분야·분류별 사업 수(개) ...	77
표 2-2. 2021년도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의 분야별 금액 비중	78
표 2-3.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의 연도별('20~'22) 자체평가 실시	78
표 2-4. 항목별 충족 기관 수 및 비율	80
표 3-1. 컨설팅 세부 수요조사 결과	83

〈그 립 목 차〉

Ⅰ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그림 1-1. 2022년도 ODA 기관역량진단 추진 체계도	4
그림 1-2. 2022년도 ODA 기관역량 진단설계 방법	5
그림 1-3. 기관별 양자 ODA 사업 유형 비중(2021년)	13
그림 1-4. 기관별 양자 ODA 사업 분야 비중(2021년)	14
그림 2-1. 규모별 등급 분포	28
그림 2-2. 각 부분의 세부항목별 지표달성도	29
그림 2-3. 규모별 성과관리 세부항목(3개) 지표달성도	29
그림 2-4. 규모별 자체평가 세부항목(3개) 지표달성도	30
그림 2-5. 항목별 점수 분포: 전체 기관	33
그림 2-6. 항목별 점수 분포: 상위-중위규모 기관 비교	34
그림 2-7. 평가예산 규모와 자체평가 역량 지표	60

1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제1장 2022년 기관역량진단 개요

1. 추진배경

□ ODA 시행기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5)**는 사업추진 체계와 자체평가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관역량진단’ 실시를 결정함.

○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ODA 시행기관에 대한 통합적 성과관리방향 논의가 본격화되어 왔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20. 11. 27 시행)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실효성 있는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1년 기준 42개 기관이 총 1,628개 사업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기관 간 역량 차이가 크고 격차가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됨.

- 특히 사업규모 중하위 기관의 경우 성과관리 취약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메타평가 결과('18년) 우수 비율: 예산 상위기관(100억 원 이상) 43.4%(33/76건), 하위기관(10억 원 미만) 9.3%(3/32건)

○ 2022년부터 ‘기관역량진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진단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업추진 체계 및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 진단 실시 및 역량강화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제3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1.5월)는 ODA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기관역량진단’도입을 의결함.

- 2021년도에 진단지표 설계(KIEP)하고, EDCF, KOICA 등 6개 시행기관에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진단 대상 및 항목 등 제도설계 방안 마련

□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2.1)는 2022년부터 기관역량진단 본격 시행
 키로 하고, 교육부, 복지부 등 25개 시행기관을 진단 대상으로 선정함.

- (진단 항목) 성과관리 역량 3개 부문(△사업기획 △사업관리 △사후관리 노력),
 자체평가 역량 3개 부문(△수행기반 △자체평가 관리 △평가결과의 활용)
 총 6개 부문에 대한 진단항목 및 세부 진단지표·배점 등을 확정함.

표 1-1. 기관역량진단 항목 및 지표

진단 항목		세부 진단지표	배점
대항목	소항목		
① 성과관리 역량 (50%)	1. 사업기획	가.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10
		나. 계획 수립의 충실성	5
	2. 사업관리	가. 수행체계의 명확성	5
		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10
		다.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	10
	3. 사후관리 노력	가. 사후관리 이행 노력	5
		나. 사업성과 유지 노력	5
② 자체평가 역량 (50%)	1. 자체평가 수행기반	가.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	5
		나. 평가계획의 명확성	10
	2. 자체평가관리	가. 평가 과정의 신뢰성	10
		나. 평가결과의 충실성	5
		다. 평가품질 개선 노력	5
	3. 평가 결과의 활용	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5
		나. 평가결과 환류의 충실성	10
가점	사업효과	우수사례 가점	3

자료: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40-5호, 「'22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 (진단 대상) ODA 사업예산이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21년 기준) 이상인
 기관 총 25개를 진단키로 결정함.
- 이 중에서 교육부 등 13개는 2022년도에 진단하고, 나머지 12개는 2023년도에
 진단 실시(기관별 격년 주기로 시행)

표 1-2.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시행 대상 기관

구 분	'22년도 시행 대상 기관
상위 규모 (100억원 이상)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농진청 (총 7개)
중위 규모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관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총 6개)

자료 :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40-5호, 「'22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 (결과 활용) 기관별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당해 기관의 성과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미흡 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 컨설팅을 추진기로 함.

2. 연구방법 및 진단절차

- (1) 진단방법 설계 ⇨ (2) 개별기관 진단 실시 ⇨ (3) 종합 분석의 3단계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과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산출물 도출함.
- 부처별 실적자료 제출 이후 기관별로 작성한 기초자료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기관역량진단 항목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기관(13개)에 대해 심층 분석을 추진함.
 - KIEP 연구진은 기관별로 제출한 실적기술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대상 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상세 실적 및 사례 등을 확인·보완함
 - 역량진단 대상기관별 역량진단 실시 및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역량개선 방향을 제시함.
-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평정위원)으로 구성된 평정회의에서 기관별 진단을 실시하고 등급을 도출함.

그림 1-1. 2022년도 ODA 기관역량진단 추진 체계도

단 계	진단방법 설계	⇨ 개별기관 진단 실시	⇨ 종합 분석
방 법	▪ 문헌·통계 분석 - 성과관리 관련 정책 문서 및 지침 수집 - ODA 성과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분석 -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평가 실적 등 기초정보 ▪ 기관별 실적자료 수집 ▪ 기관별 사업구조 검토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기관 실적기술서 및 제출자료 확인 ▪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 ▪ 우수/미흡 사례 분석 ▪ 평정 자료 준비 - 평정을 위한 기관별 분석자료 마련 -기관별 실적 발표회 개최 및 평정회의 개최	▪ 13개 기관 진단 결과 비교·분석 ▪ 부문별 모범사례 도출 ▪ 역량강화 지원방안 도출 ▪ 공유·활용 방안 도출 ▪ 관계기관/전문가 협의 ▪ ODA 평가토론회 개최
결 과 물	기관별 실적기술서 검토, 대상기관 현황 분석자료, 역량진단 매트릭스	13개 대상기관별 평정 검토자료 (기관별 검토보고서)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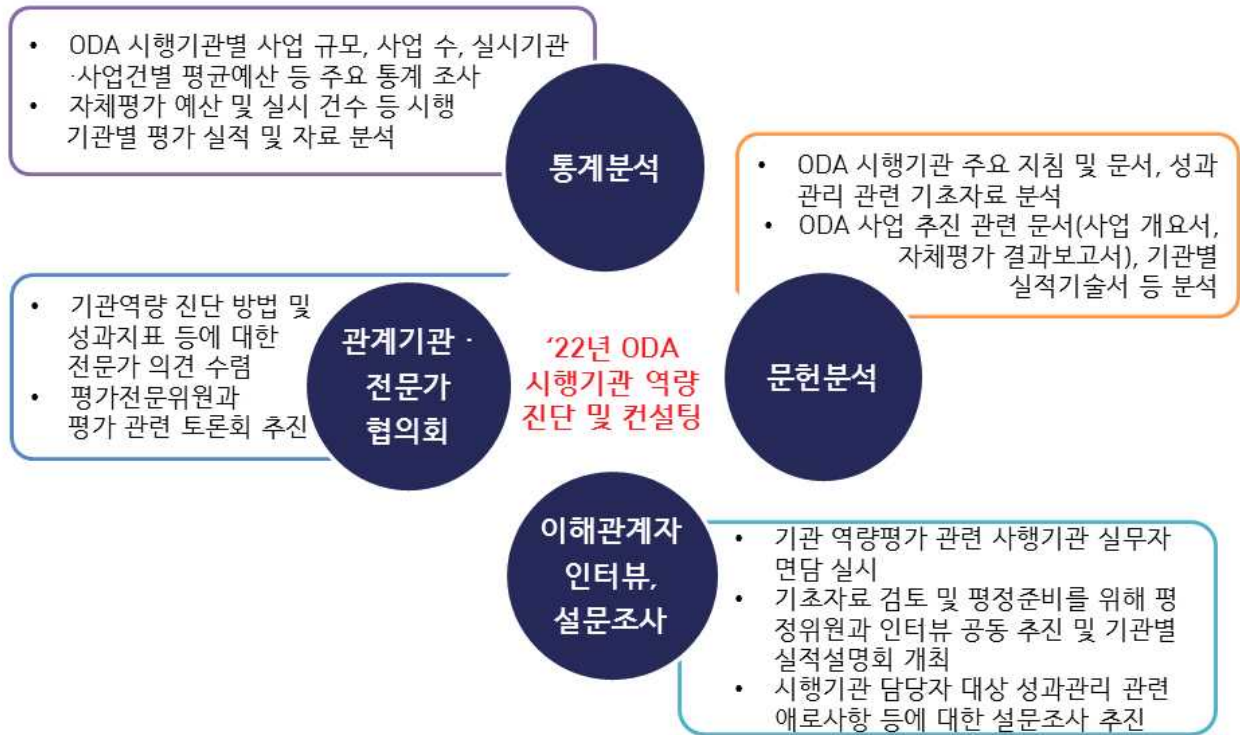
자료: KIEP 작성

가. 진단방법 설계

□ 문헌·통계분석

- ODA 시행기관 성과관리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 문서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ODA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추진계획 등을 검토함.
- ODA 성과관리 방안 및 기관 역량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로 OECD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의 다자개발기구 평가, 미 국제개발센터(CGD)의 공여기관 평가·학습 시스템 평가방법(안) 등 기관역량 평가 사례 및 평가방법론을 분석함.

그림 1-2. 2022년도 ODA 기관역량 진단설계 방법



□ 기관별 실적자료 조사 및 분석

- ODA 시행기관별로 사업 규모 및 시행 구조, 사업 유형, 자체평가 실적 등 성과관리 역량진단에 필요한 기관별 기초정보를 분석함.
 - 기관역량진단 시행 대상기관의 사업 형태 및 성과관리 현황 분석 연구, 기존 시행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2021년 ODA 시행기관역량 시범적용 결과를 비교·검토함.
 - 대상기관별 ODA 규모, 사업 수, 실시기관·사업건별 평균 예산, 사업 유형, 자체평가 예산 및 실시 건수 등 시행기관의 현황과 사업구조를 분석하고, 기관별로 작성한 기초자료의 내용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함.

표 1-3.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시행 대상 기관의 ODA 사업구조

구분	기관	ODA 총예산 (A)	양자 ODA 규모	사업수행 기관 (B)	기관별 평균예산 (A/B)	사업건수 (C)	사업건별 평균예산 (A/C)
상위	교육부	765	737.2	13	58.8	94	8.1
	보건복지부	677.4	407	8	84.7	46	14.7
	산업통상자원부	521.1	492.2	5	104.2	58	9
	농촌진흥청	260.8	256.5	1	260.8	29	9
	국토교통부	227.4	209.7	11	20.7	28	8.1
	과학기술부	195.9	170	14	14	56	3.5
	해양수산부	142.2	74.8	12	11.8	11	12.9
중위	문화체육관광부	118.6	60.9	7	16.9	25	4.7
	고용노동부	85.9	56.9	4	21.5	12	7.2
	관세청	78.7	55.2	2	39.4	14	5.6
	법무부	55.2	31	2	27.6	6	9.2
	기상청	48.1	40.8	2	24.1	8	6
	문화재청	27.1	26.1	3	9	10	2.7

주: 1)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액 기준

2)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선정·의결한 13개 기관(※ 2022년 진단대상)

□ 이해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진단방법 및 세부 평정 기준에 대하여 평가전문위원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사하고 파악함.
-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 역량 진단의 범위, 세부 항목별 점검 사항 및 제출 자료의 타당성, 교차검증 방안 등 진단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함.

나. 기관역량진단 세부 추진절차

표 1-4. 기관역량진단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요 내용
① 사전 준비	- 진단대상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제도시행 설명회 및 자료 제출 요청 - 진단대상 기관별 실적자료 작성 및 제출
② 부처별 실적 제출자료 검토 및 평정 준비	❶ (연구용역진) 기관 제출자료 검토·분석 ❷ 시행기관별 면담조사 실시 ※ 기관별로 실적자료 추가 보완·제출 요청 ❸ (평정위원) 기관별 분석 보고서 검토·보완
③ 기관별 실적 설명회 개최	(기관별 설명회) 기관역량진단을 위한 13개 시행기관의 설명회 개최 - 기관별 제출자료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진단대상 기관 - 평정위원간 질의·응답 실시
④ 평정위원회 개최	(평정위원회) 기관별 평정 및 등급 확정
⑤ 진단결과 보고서	- 기관별 보고서(피드백 용) 종합 - 기관별 보고서 평정위원 검토·보완 - 기관역량진단 종합 결과 분석 및 기관별 진단결과(안) 마련
⑥ 평가전문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전문위원회는 「기관역량진단」 종합 결과(안) 의결

자료: 저자 작성

☐ 대상기관 제출 자료와 실적기술서 확인·검토 및 추가자료 수집

- KIEP 연구진은 역량진단대상 13개 부처·기관별 실적기술서 및 증빙자료 검토하고, 진단 항목별 세부 질문에 대하여 기관이 작성한 기초자료의 내용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함.

☐ 역량진단 대상기관 담당자 면담 조사 실시

- 대상기관의 ODA 담당자, 사업수행자, 부처별 사업추진 전담기관 등 이해관

제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상의 애로사항, 자체평가 제도 운영 시 제약 요인 등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주요 개선과제를 조사함.

□ 기관별 검토보고서 작성

- 13개 기관이 제출한 평정기초자료와 실적관련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비대면 혹은 대면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각 진단항목별 득점기준 충족여부 및 근거, 기관별 우수/미흡 사례, 성과관리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 및 방안 제시
 - 평가전문위원회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평정위원들이 기관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재차 검토·분석함.

□ 기관별 실적 설명회 및 평정위원회 개최

- 기관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ODA 수행체제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평정위원의 질의응답 및 설명 기회 제공
- 평가전문위원회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평정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평정 및 등급 확정
- 대상기관 피드백 및 평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역량진단보고서 최종안 도출

□ ODA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 신규 도입된 기관역량진단 제도 등 ODA 성과관리 개선에 대한 이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ODA 토론회를 추진함.
 - 2022년 9월 2일(The K-호텔, 양재) 기관역량진단 결과 및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 공유 및 성과 확산 워크숍을 추진함.
 - 부처 및 주요기관 ODA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ODA 전략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공유함.

표 1-5. ODA 성과관리 워크숍 프로그램

상세시간(안)	내 용	비고
14:00~14:05	○ 인사말씀	※ 국조실
14:05~14:50	○ (주요 정책) ODA 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소개 - 새정부 ODA 기본방향 - ODA 성과관리 체계 및 기본 추진방향 - '22년도 기관역량진단 사례 및 시사점	※ 국조실 및 KIEP
14:50~15:00	휴 식(10분)	
15:00~16:00	○ (기관 발표) ODA 추진 주요 사례 발표 등 - (KOICA) ODA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 (농진청) 농업분야 ODA 성과사례 공유 - (부산시) 부산형 ODA와 세계박람회 유치 연계 전략 - (Q&A) KOICA, 농진청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KOICA,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16:00~16:10	휴 식(10분)	
16:10~17:30	○ (토론) 향후 ODA 성과관리 역량제고 방안 * (사회) 박△△(조세재정연구원), (발제) 김△△(한성대), (토론) 권△△(KIEP), 노△△(KCOC), 이△△(수출입은행)	
17:30~17:35	○ 마무리말씀	※ 국조실

3. 진단대상 기관의 사업구조분석

□ 진단대상 13개 기관의 양자 ODA 사업의 현황 및 추진체계를 보면, 대부분 소관부처가 다수의 실시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상위규모(100억 원 이상) 부처·기관의 경우, 다수의 산하·협력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민관협력, 개발컨설팅, 연수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

표 1-6. 상위규모 대상기관별 양자 ODA 사업 현황(2021년)

소관부처/실시기관	사업 건수	사업 규모 (억 원)	주요 사업유형
교육부	90	737.2	
국립국제교육원	2	567.5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한국연구재단/23개 대학	19	48.2	민관협력
APEC 국제교육협력원	28	31.6	연수사업, 프로젝트
한동대학교(UNESCO UNITWIN)	13	30.0	민관협력
숙명여자대학교(UNESCO UNITWIN)	5	4.1	민관협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UNESCO UNITWIN)	4	3.0	민관협력
한국교원대학교(UNESCO UNITWIN)	4	2.0	민관협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1	22.0	연수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	12.0	민관협력
한국연구재단	2	7.8	기타, 기타기술협력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	6.4	기타기술협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	2.8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보건복지부	36	407.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5	405.3	프로젝트, 연수사업, 행정비용
공모위탁기관	1	1.7	연수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1	49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	468.4	프로젝트, 연수사업
국가기술표준원	7	14.5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한국에너지공단	4	9.3	개발컨설팅
국토교통부	24	209.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59.0	프로젝트
한국국토정보공사	3	34.5	프로젝트
코리아와이드	1	24.2	프로젝트
한국국토연구원	2	19.6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시설안전공단	1	15.0	프로젝트
한국철도공사	1	14.0	개발컨설팅
한국교통연구원	1	10.9	개발컨설팅
ITS협회	1	10.0	프로젝트
스마트도시건축학회	1	9.0	개발컨설팅
다음기술단	1	7.1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8	6.4	연수사업

소관부처/실시기관	사업 건수	사업 규모 (억 원)	주요 사업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	170.0	
한국교육방송공사	1	42.7	프로젝트
한국정보화진흥원	15	34.4	프로젝트, 기타기술협력
한국연구재단	16	28.0	프로젝트, 민관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21.2	연수사업, 프로젝트
한국전파진흥협회	4	15.0	프로젝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11.8	개발컨설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10.0	프로젝트
공모위탁기관	2	5.7	프로젝트
광주과학기술원	1	0.7	연수사업
한국과학기술연합연구원	1	0.6	연수사업
해양수산부	19	74.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34.8	프로젝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	12.4	프로젝트
한국해양조사원	2	9.5	프로젝트
한국수산자원공단	1	4.4	프로젝트
해양환경공단	1	4.0	프로젝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3.5	연수사업
해외어업협력센터	2	3.0	연수사업
해양수산부	2	1.8	기타기술협력
수산과학원	1	1.0	프로젝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0.4	연수사업
한국원양산업협회	2	0.0	프로젝트
농촌진흥청	26	256.5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자료: 국무조정실(2020). 2021년 기관별 ODA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중위 규모(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부처·기관 역시 산하 실시기관을 통한 사업 집행 비중이 높으며, 연수,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등 기술협력 유형을 다수 추진

표 1-7. 중위규모 대상기관별 양자 ODA 사업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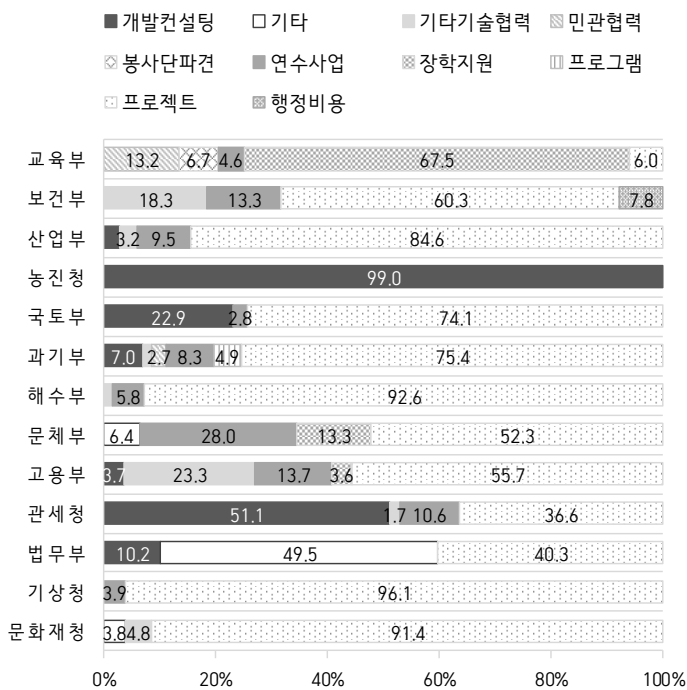
소관부처/실시기관	사업 건수	사업 규모 (억 원)	주요 사업유형
고용노동부	9	56.9	
한국산업인력공단	4	31.1	프로젝트, 연수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20.0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3	3.8	개발컨설팅, 기타기술협력
한국고용정보원	1	2.0	프로젝트
법무부	3	31.0	
법무부 난민정책과	1	27.1	기타
대검찰청	1	2.2	프로젝트
법무부 국제법무과	1	1.7	개발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9	60.9	
한국관광공사	3	34.6	프로젝트, 연수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1	10.0	장학지원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	2	6.6	연수사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	5.9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3.8	연수사업
관세청	10	55.2	
관세청	9	50.7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1	4.4	연수사업
기상청	6	40.8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	39.3	프로젝트
기상청	2	1.6	연수사업
문화재청	7	26.1	
한국문화재단	6	25.3	프로젝트
한국유네스코위원회	1	0.8	기타기술협력

자료: 국무조정실(2020). 2021년 기관별 ODA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기관별 양자 ODA 사업유형

- 상위규모의 기관별 사업유형은 대부분 프로젝트 사업비중이 높고, 중위규모 기관은 기술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부의 경우 장학지원사업 67.5%, 보건부 프로젝트 사업 60.3% 등이고, 산업부는 프로젝트 사업이 84.6%를 차지하고 있음.
- 문체부는 프로젝트 52.3%, 연수 28% 등이고, 관세청은 개발컨설팅 51.1%와 프로젝트 사업 36.6%로 나타남.

그림 1-3. 기관별 양자 ODA 사업 유형 비중(2021년)



■ 상위규모 기관별 주요 사업 유형

- 교육부: 장학지원(67.5%), 민간협력(13.2%)
- 보건부: 프로젝트(60.3%), 기타기술협력(18.3%)
- 산업부: 프로젝트(84.6%), 연수(9.5%)
- 농진청: 개발컨설팅(99.0%)
- 국토부: 프로젝트(74.1%), 개발컨설팅(22.9%)
- 과기부: 프로젝트(75.4%), 연수(8.3%)
- 해수부: 프로젝트(92.6%), 연수(5.8%)

■ 중위규모 기관별 주요 사업 유형

- 문체부: 프로젝트(52.3%), 연수(28.0%)
- 고용부: 프로젝트(55.7%), 기타기술협력(23.3%)
- 관세청: 개발컨설팅(51.1%), 프로젝트(36.6%)
- 법무부: 기타(49.5%), 프로젝트(40.3%)
- 기상청: 프로젝트(96.1%)
- 문화재청: 프로젝트(91.4%)

자료: 국무조정실(2020). 2021년 기관별 ODA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기관별 양자 ODA 사업분야

- 기관별 사업분야는 교육부, 보건부, 관세청, 기상청 등은 담당업무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공공행정, 환경, 교육 등은 업무에 따라 연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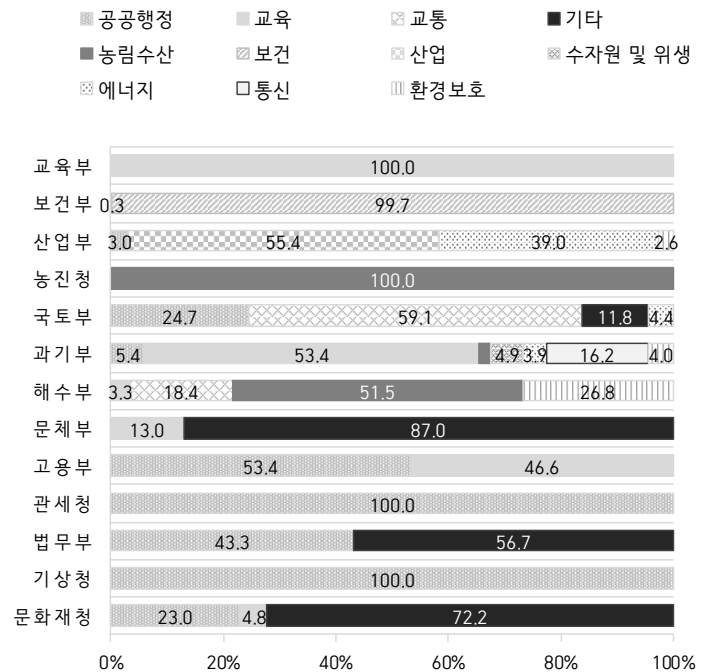
그림 1-4. 기관별 양자 ODA 사업 분야 비중(2021년)

■ 상위규모 기관별 주요 사업 분야

- 교육부: 교육(100%)
- 보건부: 보건(99.7%)
- 산업부: 산업(55.4%), 에너지(39.0%)
- 농진청: 농림수산(100%)
- 국토부: 교통(59.1%), 공공행정(24.7%)
- 과기부: 교육(53.4%), 통신(16.2%)
- 해수부: 농림수산(51.5%), 환경보호(26.8%)

■ 중위규모 기관별 주요 사업 분야

- 문체부: 기타(87.0%)
- 고용부: 공공행정(53.4%), 교육(46.6%)
- 관세청: 공공행정(100%)
- 법무부: 기타(56.7%), 공공행정(43.3%)
- 기상청: 공공행정(100%)
- 문화재청: 기타(72.2%), 공공행정(23.0%)



자료: 국무조정실(2020). 2021년 기관별 ODA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진단대상 기관 자체평가 현황 분석

- 자체평가 역량은 본 기관역량진단 2대 항목 중 하나로, 자체평가 수행 기반 및 추진 방식, 평가 품질 등 주요 진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별 자체평가 현황 및 기존 메타평가 결과를 분석함.
- 2021년 기준 진단대상 기관의 자체평가 현황을 보면, 대부분 연간 2~3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규모와 자체평가 건수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음.
 -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등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처들은 연 3건의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사업 건수에 비해 평가대상 사업 비중은 낮은 편이며, 1건당 평균 평가 예산은 약 4,500만원임.
 - 문체부, 고용부, 기상청, 문화재청 등의 중위규모 기관은 연 2건의 자체평가를 시행 중임.
 - 해양수산부, 법무부, 기상청, 문화재청은 별도 자체평가 예산이 없어, 평가추진방식 및 보고서 품질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요구됨.

표 1-8. 대상기관별 자체평가 현황(2021년)

기관명	'21년 자체평가 사업건수	'21년 자체평가 예산 (백만원)	ODA 사업 건수	ODA 규모 (억원)	평균 자체평가 예산 (1건당, 백만원)	ODA 규모 대비 자체평가 예산 비중
교육부	3	100	94	765	33	0.13%
보건복지부	3	160	43	571	53	0.28%
산업통상자원부	3	150	56	502	50	0.30%
농촌진흥청	2	60	28	257	30	0.23%
국토교통부	3	60	27	226	20	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95	54	186	32	0.51%
해양수산부	3	-	25	119	-	-
문화체육관광부	2	85	12	75	43	1.13%
고용노동부	2	20	10	73	10	0.27%
관세청	2	20	11	56	10	0.36%
법무부	1	-	6	55	-	-
기상청	2	-	6	41	-	-
문화재청	2	-	10	27	-	-

자료: 2021년 기관별 ODA 예산 현황,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 각 대상기관의 자체평가 현황을 바탕으로, 기관별 제출자료 분석 시 해당 기관의 평가추진 상의 제약 요인 및 개선사항을 분석함.

[상위 규모(100억원 이상) 7개 진단대상 기관의 자체평가 실적]

- 연 평균 2~3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대부분 평가예산을 확보하여 외부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경우 별도 평가예산이 없고 주로 내부평가를 수행해 음.

표 1-9. 교육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후속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0
	한동대학교 UNESCO UNITWIN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40
	2019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사업 중간평가(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외부	중간	프로젝트	40
2020	2020 숙명여자대학교 UNESCO-UNITWIN 사업 종합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구 아프리카 희망브릿지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10
2019	교원해외파견사업 중간 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사업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8
2018	한-다문화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19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사업 종합평가	외부	중간	분야별	20
	아세안 우수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외부	중간	프로젝트	10
2017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50
	이러닝 세계화 평가	외부	종료	분야별	20
	유네스코 유니트윈 한동대 사업단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40
2016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사업	외부	종료	프로젝트	30
201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외부	종료	국별	25
2014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부	사후	국별, 분야별	75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0.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실적(2010~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50
	탄자니아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50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60
2020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97
	라오스 북동부지역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중간평가	공동	중간	프로젝트	68.4
2019	이종욱 펠로우십 라오스 임상과정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88
	가나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80
2018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86
2017	라오스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50
2016	가나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42
2015	스리랑카 응급의료 기능강화사업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55
2014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42
2013	이종욱 펠로우십(개도국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교육사업)	외부	종료	프로젝트	50
2010	라오스 모자보건증진사업	-	-	-	-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필리핀 금형 솔루션 센터 조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에티오피아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2020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조성 지원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60
	에티오피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60
2019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30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30
2018	우즈베키스탄 산업통상협력 프로젝트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페루 스마트배전망 구축 지원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1
2017	에너지 산업 협력 개발지원 사업 사전평가	외부	사전	프로젝트	38
2016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기후변화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외부	사후	프로젝트	30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외부	중간	정책, 국별	20
2015	산업자원협력개발 지원사업	외부	종료	프로젝트	40
	개도국표준체계보급 지원사업	외부	중간	정책, 국별	30
	기후변화 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공동	중간 종료, 사후	프로젝트	30
2014	산업자원협력개발 지원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50
	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외부	종료	정책, 국별 형태별	30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기후변화협약 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10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2.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실적(2015~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인도네시아 버스터미널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베트남 다낭시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0
2020	캄보디아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 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모니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10
2019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베트남 도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 최적화 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2018	캄보디아 국가 토지정보인프라 사업 종료 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페루 아레키파 도시교통(ITS 등) 개발 용역 종료 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콜롬비아 메데진시 도심지 교통 기능향상 사업 종료 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7	유엔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43
	베트남 하노이 Lich강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보츠와나 국가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6	개도국 고위공무원 주한공관원 초청연수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5	건설사업관리(CM)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 실적(2013~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25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운영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50
	개도국 교육 방송 구축 운영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형태별	34
	K-Lab 설치 및 운영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34
2019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2016~2018년)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30
2018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 (‘16~17년, 4,594백만원)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 (‘15~17, 3,940백만원)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27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사업 (‘13~17년, 3,856백만원)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27
	해외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사업 (‘16~17년, 1,056백만원)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10
	UN ESCAP ICT 개발센터(APCICT) 지원사업 평가	내부	중간	프로젝트	0
	한-UNDP 협력사업 (2단계)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13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외부	사후	프로젝트	25
	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ICT 역량강화 사업 종합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미얀마 K-Lab 설치 및 운영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5.7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평가	외부	사전	프로젝트	10
2016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자체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	외부	사후	프로젝트	30
2015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30
2014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외부	사후	프로젝트	30
2013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외부	종료	프로젝트	30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4. 해양수산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수산인프라구축 지원사업(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베트남 선원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피지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
2020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중간평가	내부	중간	프로젝트	-
	태평양 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 중간평가	내부	중간	프로젝트	-
2019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조성·관리 모델 구축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5
	캄보디아 연안·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2.25
2018	에콰도르 수산물 위생관리분야 ODA사업 평가(수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중간	프로젝트	-
	필리핀 해양수산 인프라 시설 구축(해양조사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7	피지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 중간평가	내부	중간	프로젝트	-
	세네갈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10
2016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2
2015	연안개도국 물자지원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4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	-	-	-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5.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실적(2013~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KOPIA)사업(가나, 우간다, 세네갈, 도미니카(공))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30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30
2020	KOPIA 스리랑카, 에콰도르, 니카라과 타당성 평가	외부	중간, 사후	프로젝트	44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5.5
2019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AFACI)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9.25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KOPIA 1·2차 사업, 라오스, 짐바브웨 KOPIA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30
2018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케냐, 파라과이 시범마을 조성 사업 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30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2차 사업 중간평가(캄보디아, 필리핀, 알제리, 파라과이)	외부	중간	프로젝트	30
2017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2014년 및 2015년 종료사업의 사후평가	외부	사후	프로젝트	20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베트남 센터 농업기술협력사업 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20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1단계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40
2016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외부	사후	국별, 프로젝트	30
2015	아시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성과평가	외부	중간	분야별	30
2014	남미(볼리비아, 파라과이) 해외 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2013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50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개 진단대상 기관의 자체평가 실적]

- 중위 규모 기관들은 연간 사업건수 10건 이하로 연 1~2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평가로 추진하는 경우 증가
- 법무부의 경우 별도 평가예산이 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내부평가로 수행함.

표 1-16.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캄보디아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10
	호치민 산업안전보건센터 교육훈련 역량강화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10
2020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지원사업(2단계)	외부	종료	프로젝트	6.6
	개도국(스리랑카)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6.7
2019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사업(기능경기대회) 내부 중간평가(코스타리카)	내부	중간	프로젝트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 구축 지원사업 내부 중간평가(라오스)	내부	중간	프로젝트	-
2017	베트남 고용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사후평가	내부	사후	프로젝트	-
2016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5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4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내부	종료	국별	-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7. 법무부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2021년 라오스 마약통제 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20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 (라오스)	내부	종료	프로젝트	10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 (라오스)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10
2018	2017년 몽골 마약퇴치 지원사업 종료 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7	2016년 키르기스스탄 마약퇴치 지원 사업 종료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6	개도국 법제정비지원 사업(라오스 중재법 현대화 지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
	도미니카공화국 여성, 아동범죄 예방 및 퇴치지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
	키르기스스탄 마약퇴치지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5	개도국 증권법 제·개정 지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3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타지키스탄)	내부	종료	정책	-
2014	해외 한국법센터 설립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개도국 증권법 제 개정지원	외부	종료	프로젝트	3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8.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실적(2015~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종료평가	외부	종료	형태별	50
	문화동반자사업 종합 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35
2020	체육분야 ODA 연수사업 종합평가	-	-	-	-
	AMFEK 문화동반자 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9	문화예술 ODA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
	미얀마 문화예술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중간평가	내부	중간	프로젝트	10
2018	문화동반자사업 종합 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19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50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AMA(Art Major Asian) 장학지원 사업 평가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7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1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종합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2
2016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내부	중간	프로젝트	0.4
2015	문화예술교육 ODA사업	내부	종료	프로젝트	0.4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19. 관세청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0
	WCO RCT 실무연수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0
2020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연수 평가	외부	종료	형태별	20
2019	2018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 종료평가(요르단)	외부	종료	분야별	20
	2018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 종료평가(알제리)	외부	종료	분야별	20
2018	2017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분야별	20
2017	2016년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분야 종료평가	외부	종료	분야별	20
2016	GTI 지역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역량강화 초청세미나	외부	종료	프로젝트	-
	선진협력기관 초청연수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5	세관행정 현대화 세미나	내부	사후	국별	5
2014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 재설계 사업	외부	사후	프로젝트	55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20. 기상청 자체평가 실적(2014~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
	방글라데시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
2019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중간평가	외부	중간	프로젝트	-
2018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한 개도국지원사업 평가	외부	중간, 종료	형태별	69
2017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20
2016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5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	내부	종료	프로젝트	-
2014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 운영 지원	내부	종료	주제별	-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표 1-21. 문화재청 자체평가 실적(2016~21년)

연도	평가사업명	구분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2021	미얀마 바간 지진피해 복구지원 사업 종료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박물관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간평가	외부	종료	프로젝트	5
2020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중간평가	내부	중간	프로젝트	19
2019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미얀마)	외부	중간	프로젝트	5
2018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라오스 홍낭시다 보존복원 사업)	공동	중간	프로젝트	100
2017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평가	공동	중간	프로젝트	40
2016	세계유산 보존 관리 지원사업	외부	중간	프로젝트	-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2장 기관역량진단 결과 분석¹⁾

1. 총평 및 주요 특징

□ (총괄) 총점 평균은 73.4점으로 5단계 척도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진단대상 13개 기관 중 A등급 3개, B등급 7개, C등급 3개로 절반 이상기관이 B등급을 받음.

표 2-1.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등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기관 수	-	3	7	3	-

* S(매우우수, 90점 이상), A(우수, 80점 이상), B(양호, 70점 이상), C(보통, 60점 이상), D(미흡, 60점 미만)

- 진단 결과, ODA 시행기관별 기본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으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관역량의 개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항목별) 성과관리 역량(38.4점) 부문이 자체평가 역량(35.0점)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평균점수)

① 성과관리 역량	② 자체평가 역량	합계
38.4/50.0	35.0/50.0	73.4/100.0

- (성과관리) 상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부문은 대체로 양호하나, 사업수행 이후의 사후관리 부문은 개선 여지가 큼.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 전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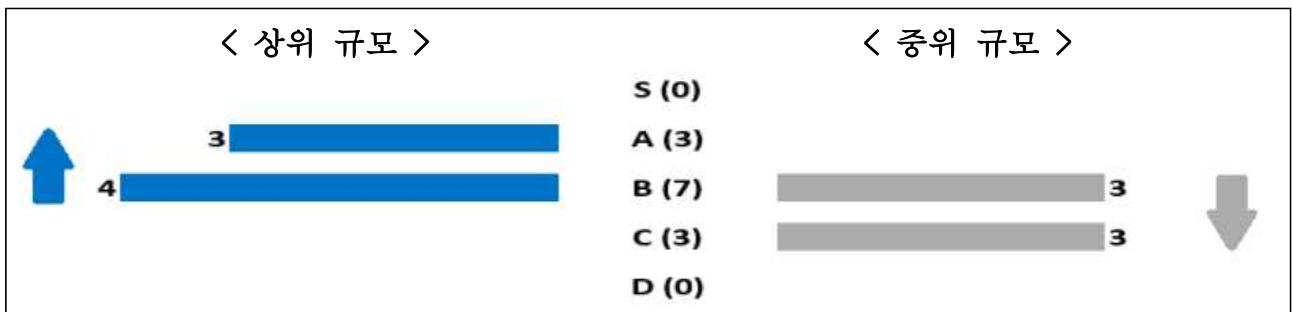
1) 제2장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평정 및 의결('21.7월) 결과와 연구진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함.

- (자체평가) 사업규모가 작은 기관 위주로 자체평가 추진기반, 품질관리, 평가결과 활용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규모별) 사업규모가 큰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음.

- 평균 평정점은 상위규모(양자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77.6점, 중위규모(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8.6점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9점 차이를 나타냄.
- 상위규모 7개 기관은 A등급(3개) 또는 B등급(4개)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규모 기관은 A등급 없이 B, C 등급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

그림 2-1. 규모별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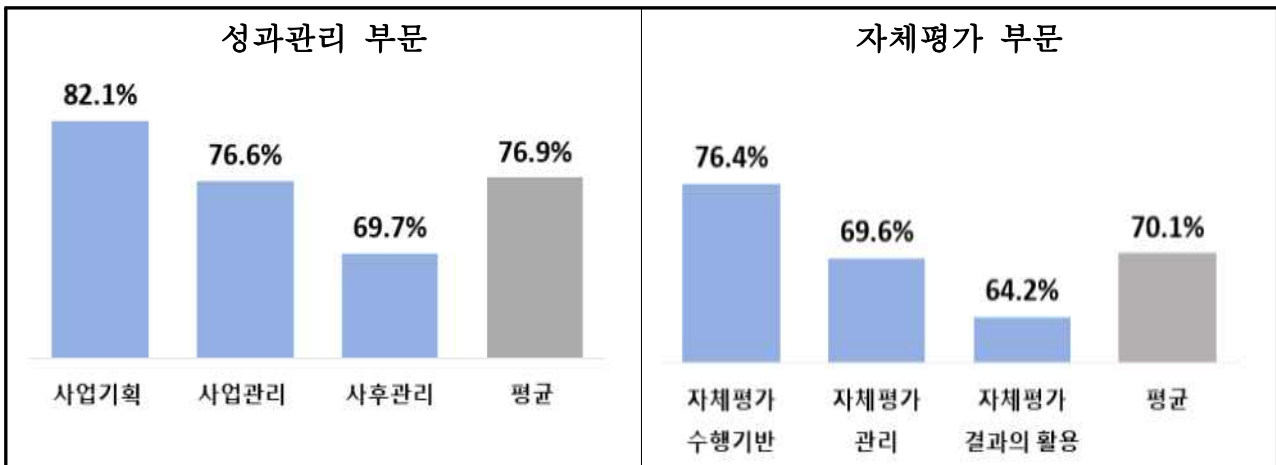


- 사업규모가 큰 기관이 ODA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행 및 관리 역량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진단됨.
-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추진기반(규정 등)의 미비, 낮은 인식 등에 기인하여 진단 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특징) 기본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부문별(성과관리/자체평가), 규모별(상위/중위) 역량 격차가 존재함.

- 성과관리 부문의 지표달성도(76.9%)가 자체평가 부문(70.1%)보다 높음.
 - 성과관리 부문은 사후관리 노력(69.7%), 자체평가 부문은 결과 활용(64.2%) 측면의 지표 달성 수준이 가장 낮음.
 - 지표달성도 70% 미만인 세부 항목은 총 3개로, △사후관리 노력 △자체평가 관리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이 해당됨.

그림 2-2. 각 부분의 세부항목별 지표달성도



- ODA 사업규모가 큰 기관(상위규모)의 역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진단된 가운데, 상위/중위규모 기관 간 격차는 자세평가 부문(중위규모 30.9점)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표 2-3. 규모별 · 부문별 평균 역량 점수

구 분	성과관리 역량(50)	자세평가 역량(50)	합계
상위규모(7개)	39.1	38.5	77.6
중위규모(6개)	37.6	30.9	68.6
전 체 (13개)	38.4	35.0	73.4

- 중위규모 기관의 경우, 특히 △자세평가 관리(58.8%), △평가 결과의 활용(53.3%)은 항목의 지표달성도가 낮음.

그림 2-3. 규모별 성과관리 세부항목(3개) 지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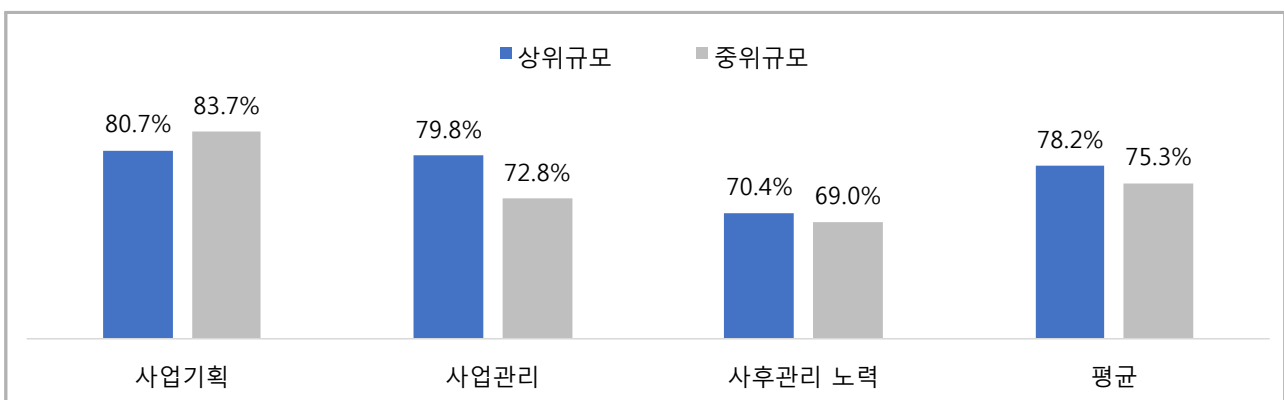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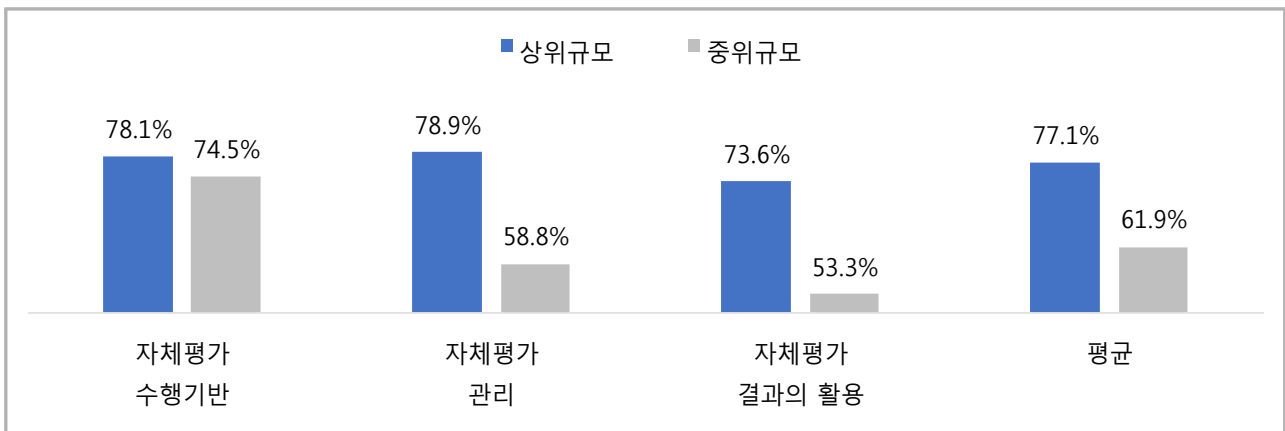


그림 2-4. 규모별 자체평가 세부항목(3개) 지표달성도



□ (요인 분석) 상위·중위규모 기관 간 역량 차이는 △ 예산·조직 등 제반 사항과 △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제반 사항) 상위규모 기관은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

- 전담조직 보유: 부서내 전담부서(농진청, 고용부), ODA 전담기관 지정(복지·산업·과기·국토·해수부)

- 평가예산 확보 기관 및 평균액: 상위규모 7개 기관의 평균 평가예산은 108백만원, 중위규모 5개 기관 평균 48백만원을 기록함.

○ (인식)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도 상위-중위규모 기관 간 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

- 규모가 작은 기관은 ODA 사업 비중이 작아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관련 지침 미비 또는 형식적인 지침 보유 등의 기반조성 미흡으로 연결되고 있음.

- 전담부서와 전담 수행기관을 보유한 상위규모 기관이더라도 기관 차원의 인식이 낮은 경우, 성과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확인됨.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전략수립이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례가 있음.

2. 진단 항목별 결과 및 사례 분석

가. 진단 항목별 주요 결과

표 2-4. 성과관리 역량 부문 진단 요약

진단 항목(배점)		주요 내용	평균 점수	평균 달성도 (%)
대항목	소항목			
① 성과관리 역량 (50점)	1. 사업기획 (15점)	• (전략 부합) 대부분의 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 등 상위 전략을 반영하여 자체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중으로, 사업추진계획 수립 현황은 대체로 양호함. ※ 총 10개/13개 기관(77%)이 자체 중장기 전략 보유, 3개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2.3	82.10
		• (계획 수립)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수원국 수요 반영, 성과지표 사전 설정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나,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및 기관내 사업 간 전략적 연계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		
	2. 사업관리 (25점)	• (수행체계) 상위규모 기관 중심으로 ODA 전담 수행기관을 지정, 기관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체계적 사업추진 기반 구축 노력이 확인됨.	19.1	76.60
		• (관리기반 및 DB 관리) 일부 기관만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ODA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정보 관리 포털을 보유·운영 중으로, 사업정보 활용·관리는 대체적으로 미흡함.		
		• (연계·협업)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추진 등 공동의 사업성과 제고 노력이 확인됨. 단 실질적 사업 연계 및 성과 창출에 한계가 발견됨.		
	3. 사후관리 노력 (10점)	• (사후관리 이행) 소수의 기관이 사후관리 지침을 두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이행에 노력중임. 사후관리와 성과유지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모든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보유한 기관은 3개(총 13개) 기관에 불과	7	69.70
• (사업성과 유지) 다수 기관이 성과유지를 위해 수원국과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 협조체계 운영, 일부 기관은 사업성과를 확산 중임.				
소계			38.4	7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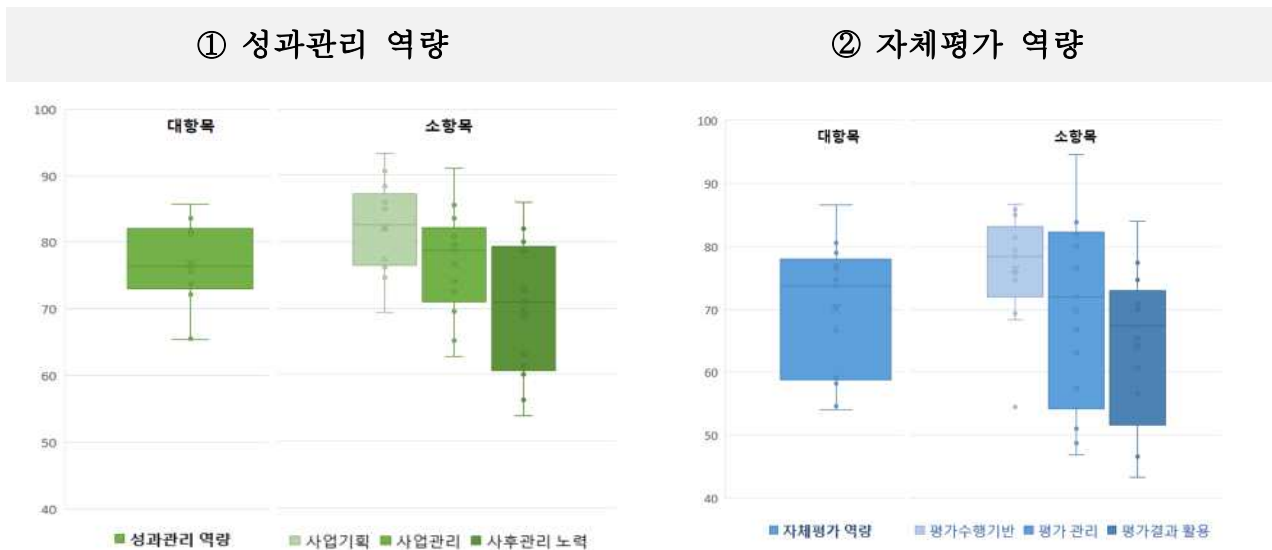
표 2-5. 자체평가 역량 항목 진단 요약

진단 항목(배점)		주요 내용	평균 점수	평균 달성도 (%)
대항목	소항목			
② 자체평가 역량 (50점)	1. 자체평가 수행기반 (15점)	- 전반적으로 자체평가 제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음. 일부 지침의 실효성 미흡, 통합적인 평가계획의 부재 확인 - (상위규모) 전 기관이 자체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자체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 일부 기관은 평가 조직·기반 등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 (중위규모) 대체로 자체평가지침을 보유(5/6)하고 있으나,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미구성(4/6)하거나, 구성된 경우에도 미운영(2/6)	11.5	76.40
	2. 자체평가 관리 (20점)	- 전반적으로 외부 평가의 확대와 객관성·신뢰성 개선 노력이 확인됨. 단, 평가보고서 긴 품질 편차가 크며, 평가품질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가 미흡함. - (상위규모) 다수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예산으로 외부평가 실시하여 객관성을 제고, 일부 기관은 품질심사 기준, 평가자 선 기준 등을 구비하여 평가품질을 명시적으로 관리 ※ 상위규모 6개/7개는 5천만원 이상의 평가예산 계획 수립('21년 연간자체평가계획) - (중위규모) 다수 기관은 평가예산 확보를 통한 외부평가 시행에 노력중이며, 일부 기관은 평가예산 미확보로 인해 내부평가로 보완 * 외부평가 실시기관: ('20년) 2개 → ('21년) 5개	13.9	69.60
	3. 평가 결과의 활용 (15점)	- 제언 검토 및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 공개 및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대가 필요함. - (상위규모) 개선과제 도출 등 평가결과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기관별로 평가결과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타당성 있는 개선과제 도출(3/7), △개선과제 이행·환류(4/7), △결과 공유(2/7) - (중위규모) 평가의 환류 이행 및 평가결과 공개 노력 부족	9.6	64.20
소계			35	75.00

□ 항목별 평균 점수 및 분포

- 기관의 달성도 분포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후관리 노력, 자체평가 관리, 평가결과 활용 소항목에서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그림 2-5).
- 사업기획, 자체평가 수행기반은 비교적 평균이 높고 기관 간 격차가 작은 편으로 나타남.
- 사후관리 노력, 자체평가 관리, 평가결과 활용 항목은 달성도가 70% 미만으로 낮고 기관 간 격차가 커, 자체적인 역량강화 노력 외에도 달성도가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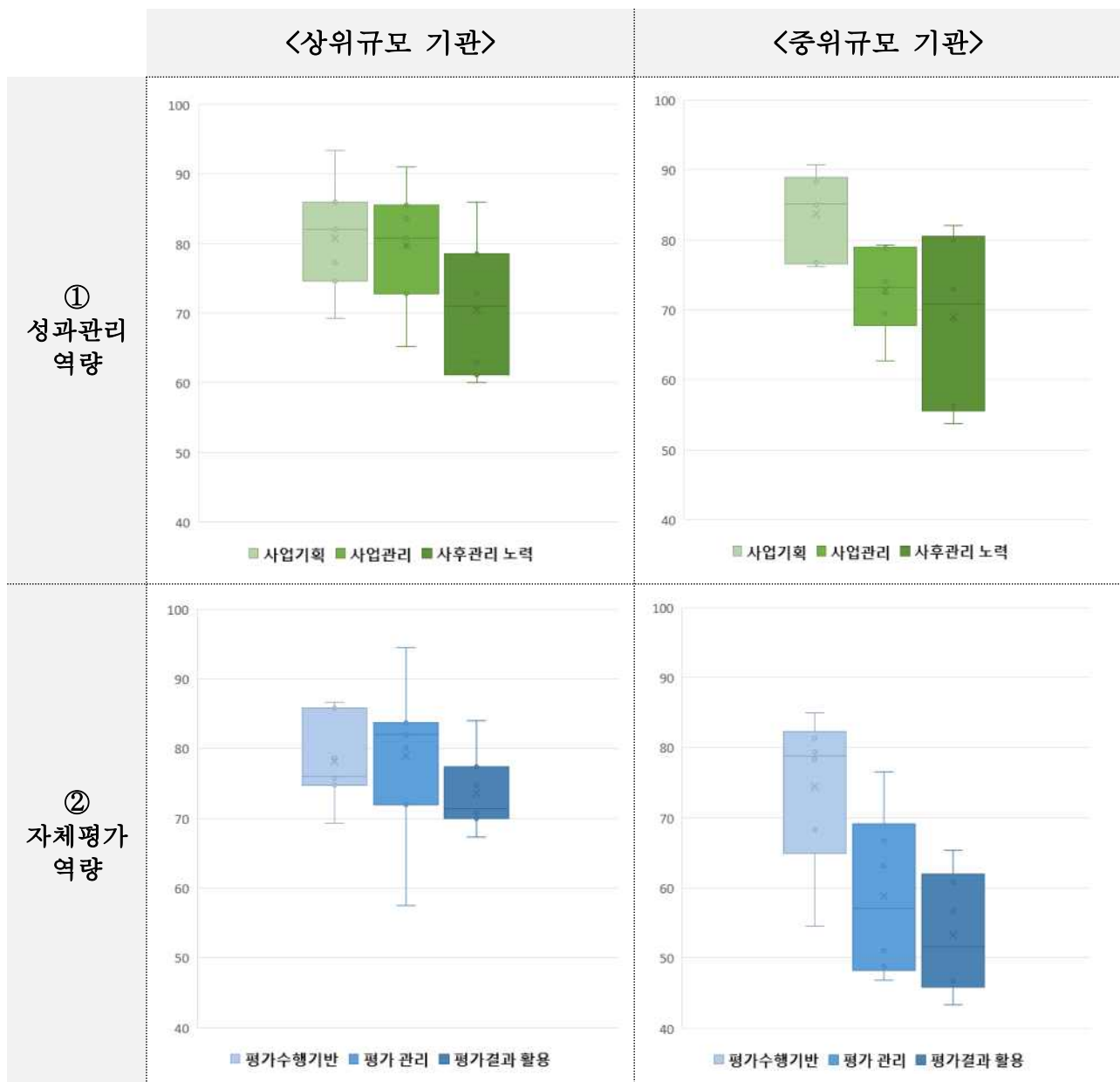
그림 2-5. 항목별 점수 분포: 전체 기관



- 성과관리 역량 부문은 평균적으로 달성도가 높고, 기관 간 편차도 작은 편으로 나타남.
- 3개 소항목 중 '사후관리 노력'은 평균 69.7%의 낮은 달성도를 보이며, 최고 86% 최저 53.8%로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체평가 역량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도를 보였으며, 기관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남.
- 첫 번째 자체평가 수행기반 소항목은 비교적 평균이 높고 기관 간 격차가 작은 편이나, 1개 기관은 60% 미만으로 평균과 20%p 이상의 격차를 보임.

- 평가관리 소항목은 평균 평점이 보통으로 진단되었으나, 기관 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평가결과 활용 소항목은 전체 6개 소항목 중 평균이 가장 낮고 하위 50%의 분포가 넓게 나타남.
- 기관의 사업규모별로 성과관리 항목간 달성도를 비교해보면 격차가 확연히 드러남(그림 2-6).

그림 2-6. 항목별 점수 분포: 상위-중위규모 기관 비교



- 상위규모 기관은 성과관리 역량과 자체평가 역량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큼.
 - 사후관리 노력은 6개 항목 중 평균이 가장 낮고 기관 간 편차도 큰 편임.
 - 평가관리 항목의 평균 달성도는 78.9%로 높은 편이나, 최소값과 최대값의 구간편차가 비교적 넓게 나타남(그림 2-6).
- 중위규모 기관은 사업기획 소항목을 제외하고 상위규모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도, 기관 간 큰 편차를 보임.
 - 성과관리 역량에서는 사업관리 소항목에서 상위규모 기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중앙값 이하가 넓게 분포함. 사후관리 노력의 평균 달성도는 상위규모 기관과 비슷하나, 기관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체평가 역량 부문은 상위규모 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결과를 보임. 특히 평가 관리, 평가결과 활용은 평균 달성도가 60% 미만이며 대부분 70% 아래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나. 항목별 상세 분석

①-1. 사업기획

□ 종합 분석

- ①-1. 사업기획 항목은 평균 달성도 82.1%(12.3/15점)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사업 규모로 인한 격차가 크지 않음.
- 가.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지표는 비교적 높은 달성도를 나타냈으며, 상위-중위규모 기관 간 격차 없이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보임.
- 나. 계획 수립의 충실성 지표에서 상위규모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이는 부처 차원의 통합적 ODA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여부와 관련이 큼.

□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

- (가. 전략 부합성) 대부분의 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상위 전략을 반영하여 자체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13개 대상기관 중 총 10개 기관(77%)이 자체 중장기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시행기관의 ODA 추진계획 수립 사례]

- ▲ (국토부) 국토교통 ODA 사업 기본계획('21-'25)
- ▲ (기상청) 기상·기후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ODA 중장기 계획 수립('18-'22)
- ▲ (관세청) 개도국 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21.5월)

- 단, 부처/기관 차원의 ODA 목표 및 추진전략이 부재하고, 매년 ODA 사업을 취합한 시행계획만을 제출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됨.
- 부처/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이 반영된 중장기 ODA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관 사업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연계성 있게 편성하여 사업 간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전략 부합성 우수 사례] 관세청

▲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기관의 중장기-단기-사업별 목표 설정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 개발협력 활동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한계를 분석하여 사업 방향 및 구체적 개선방안을 설정하고, 운영·관리 면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제시

- 1) 20-30 관세외교전략('20.4): 중장기 ODA 추진목표를 명확히 제시
- 2) 21년 관세청 개도국 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21.5): 중장기 목표에 맞춰 기관 사업 전체에 대한 연간 ODA 추진 전략 수립
- 3) 사업 유형별 이행 계획*: 사업별 성과·한계 분석 및 세부 개선방안 제시

* 연수 사업: '2021년 국제교육팀 사업계획('20.1)'
컨설팅 사업: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사업 개선방안('20.1)' 등

▲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관 사업 간 일관성 및 전략적 연계 도모

- 초청 연수,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 수요 발굴
 - ⇒ 수요 기반 컨설팅 사업 추진
 - ⇒ 컨설팅 기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 확대

- (나. 계획 수립의 충실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수원국 수요 반영, 성과 지표 사전 설정,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이 사업 기획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시행계획은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가 동일하게 제시되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 관찰됨.
-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나 심의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어 타당성조사 및 사업기획 절차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부처 차원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수원국 수요조사,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성과지표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기관의 통합적 ODA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목표치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사업 관리

□ 종합 분석

- 1-2. 사업 관리 부문의 평균 달성도는 76.6%(19.1/25점)로 보통 수준이나, 세부 지표별로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특히 상위-중위 규모 기관 간의 격차가 두드러짐.
- 가. 수행체계의 명확성은 기관 내에서 ODA 사업이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로서, 상위-중위규모 기관의 평균 점수는 비슷하나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사업 건수가 많고 사업 유형이 다양한 일부 상위규모 기관의 경우, 수행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중위규모 기관은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미흡으로 진단된 일부 기관은 총괄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지표는 사업의 단계별 관리 체계와 작동 여부, 사업 정보 관리 및 활용 정도를 진단함. 사업관리의 3개 세부항목 중 가장 낮은 달성도를 나타내며 기관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지표에서 상위규모 기관의 경우 대부분 사업관리 지침을 보유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중위 규모 기관의 과반수 이상은 개선의 여지가 큼.
- 다.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은 타 시행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노력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다른 세부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

- (가. 수행체계의 명확성) 상위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ODA 전담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체제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체계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ODA 전담 수행기관 지정 현황]

▲해수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부(해외건설협회),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다만 일부 기관은 전담기관(산하기관)에 ODA 사업수행 전반을 위임하고 부처 차원의 전략수립 및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발견됨.

[수행체계 명확성 미흡 사례]

▲ (◇◇부) 전담 수행기관의 ODA 사업관리를 위한 부처 차원의 세부 규정 및 전략의 부재 등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

- 일부 중위규모 기관은 전담조직 없이 타 분야(국제교류 등) 업무를 병행하는 등 체계적 수행에 한계가 있음.

[체계적 수행 미흡 사례]

▲ (◇◇부) 본부 총괄부서(국제**과)는 전담인력 없이 다수의 국제교류 업무와 ODA 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 7개 산하기관별로 개별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ODA 추진의 총괄·조정 및 통합적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사업관리의 3개 세부항목 중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였으며, 기관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남. 총괄부서의 역할 미흡 및 수행체계에 맞는 사업 관리지침이 미비하거나, 부처 내 다수의 사업부서·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통합 관리 및 조정체계가 미흡한 경우 사업별 관리지침, 사업위탁관리·협조기관 지원 지침의 보완 등으로 사업관리체계에 개선의 여지가 큼.

- 일부 기관만이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행기관 차원의 통합관리지침을 보유한 시행기관은 총 13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불과함.
- 다수 기관이 ODA 사업관리 규정 미비 또는 각 사업별 관리지침 운용 등으로 인해 통합적·체계적 사업관리가 어려움.

[사업관리의 체계성 미흡 사례]

▲ (◇◇부) 총 94개 사업을 5개 부서(본부 3, 소속기관 2), 12개 사업실시기관이 개별 수행('21년)함에 따라, 각기 다른 지침 운용 중

- 사업정보 관리를 위한 포털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사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문서, 정보 관리기준 부재 등 사업정보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함. 담당부서나 실시기관에서 사업정보를 분산 관리하고 있어 사업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한계가 발견됨.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우수사례] 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 사업별 구체적인 관리 지침 및 매뉴얼 수립·적용

- 사업 시행지침, 위탁 관리용 사업수행 매뉴얼
- 사업 단계별 보고회 개최, 사업보고서 품질심사 실시

[사업정보(DB) 관리 체계 우수 사례] 농진청 - 국제기술협력포털 보유

- ▲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체계적 축적, 관리
 - 사업문서 표준 양식 구비, 문서관리기준 보유
 - 사업제안서, TCP(WP), 연차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주요 사업문서를 농진청 국제기술협력포털시스템(ITCC)을 통해 관리
 - 기록물 공개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사업정보 공개

- (다. 사업 간 연계·협업)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연계사업 발굴·추진 등 공동의 사업성과 제고 노력이 확인됨.

[사업 간 연계·협업 노력 우수사례]

- ▲ 가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프로그램(WEPF) 공동 추진(산업부, 농림부, 농진청, KIAT)
- ▲ 라오스 태풍감시에측 통합플랫폼 구축관련 융합사업 TF구성(환경부, 기상청, KOICA)
- ▲ 우즈베키스탄 병원건립 관련 유·무상 연계사업(EDCF, KOFIH)

- 다만 협의체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경우가 관찰됨. 보다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업 및 파트너십 확대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

①-3. 사후관리 노력

□ 종합 분석

- ①-3. 사후관리 노력 항목의 평균 달성도는 69.7%로 성과관리 역량 부문의 3개 소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임. 특히 사후관리 기준 및 지침의 미비 등 사후관리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가. 사후관리 이행 노력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이행 체계의 작동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로서, 성과관리 역량 부문의 세부지표 중 평균 달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사후관리 지침 보유 등 일부 체계적인 제

도를 보유한 기관도 있으나, 다수는 사후관리 이행 기반이 미흡하여 기관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나. 사업성과 지속 노력 지표는 사업의 교훈, 국내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업성과의 지속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진단하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냄. 다수 기관이 수원국과의 지속적 협조체계 운영 등 사업성과 지속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

- (가. 사후관리 이행) 체계적인 사후관리 이행을 추진하는 기관도 일부 있으나, 다수 기관이 관련 규정 미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보유한 기관은 총 13개 기관 중 3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후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미비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사후관리 이행 노력 미흡 사례]

- ▲ (◇◇부) 일부 분야(산업·에너지)만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보유
- ▲ (◇◇청) 사후관리 범주를 단순 유지·보수로 한정하여 인식

- 일부 기관은 사후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사후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수립되거나 구체성이 미흡한 경우 효과적인 사후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의 범위와 지원 절차, 방법 등 사후관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 이행 노력 우수사례]

▲ 사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보유 - KOFIH, 과기부

- 사후관리 대상 선정, 지원 범위, 기간 및 예산 등 기준 설정
- 사업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 계획 포함

▲ 사후관리 추진 사례 - 기상청

-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
- 수원국 수요를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이어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 유지·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노력

* '20년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17~'19)'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22년 '몽골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2~'25)' 발굴

<수행기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예시 - KOFIH>

- 사후관리, 사후점검, 사후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후관리 대상 선정, 지원 절차 및 범위,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 개 요

- 사후관리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점검과 사후지원을 의미함
 - 사후점검: 사업종료 후 기지원 내용의 운영현황 및 성과 점검을 위해 실시된 정기적(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비정기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
 - 사후지원: 사업의 중장기 목적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사업이 완료된 후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활동

2. 사후관리 대상사업

- 사업기간이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사업 중 사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3. 사후관리 지원 절차



<수행기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예시 - KOFIH>

4. 지원절차별 세부내용

① 사후 점검

- ① 모니터링,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후점검 실시
- ② 사업소관부서(해외사무소)는 필요 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사후점검 실시
 - 사업의 운영 및 관리 현황, 사업성과 달성도,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
- ③ 점검은 자체점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④ 사업소관부서(해외사무소)는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

②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 ① 사업소관부서(해외사무소)는 총괄부서와 협조하여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범위,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사후관리 지원범위

- 기자재에 대한 고장수리, 소모품 및 부품 지원
- 해당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
-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기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나. 사업비

-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이내(단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함)로 함.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지원 한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종료 보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음

<부처 사후관리 지침 예시 - 과기부>

- 사후점검, 사후지원을 구분하여 사후관리 대상, 절차,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지침

제정 2017.3.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3-2호 안건, '1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평가 결과(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 사업의 성과가 현지인들에 의해 지속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실행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② "사후관리"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점검 및 추가 지원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의미한다.
 1. 사후점검은 사업종료 후, 일정시점에 기 지원 사업의 현황, 과급효과 등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후지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 투입을 수반하는 모든 후속지원 활동을 말한다.
- ③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사후점검) 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컨설팅, 장비·설비 등 기 지원한 사항에 대한 수원국의 활용 현황 및 성과
2. 후속조치 필요사항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처 사후관리 지침 예시 - 과기부>

- ② 사후점검은 사업종료 보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로 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점검할 수 있다.
- ③ 사후점검은 시행기관 자체 점검 또는 외부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거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사후점검기관')은 과기정동부 장관에게 사후점검 계획,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지원) ① 과기정동부는 사후점검기관 또는 수원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후지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1. 수원국 정책·여건·수요, 우리나라 ODA 정책 부합성, 수행체계 등 적절성
 - 2. 투입요소와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사업투입 요소의 효율성
 - 3.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등 효과성
 - 4. 수원국 및 국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5. 사후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 6. 그 밖에 과기정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기정동부는 제1항의 사후지원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후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1.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
 - 2.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
 - 3.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컨설팅
 - 4. 그 밖에 과기정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사후지원은 사후점검 후 1~2년 이내로 추진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과기정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후지원 사업은 시행기관 직접수행 또는 외부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사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과기정동부 장관에게 사후지원 계획,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기정동부 사업 내부 평가지침 및 시행기관의 각 사업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나. 사업성과 지속 노력) 다수 기관이 성과유지를 위해 수원국과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사업성과 확산 사례가 있음.
 - 사업 교훈을 차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등 사업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임.
 - 초청연수·장학사업 참여자 동문회 운영 및 행사 개최, 사업 종료 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유지·확대, 컨설팅 사업을 후속제도 개선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확산 등의 성과가 관찰됨.

[사업성과 유지 우수사례]

- ▲ (문체부) 초청연수(매년), 장학사업 참여자 동문명부 구축 및 동문행사 정기·수시 개최
 - ▲ (국토부) 콜롬비아 국가지능형교통체계 컨설팅을 통해 콜 정부 ITS 계획 법제화('22.4)
 - ▲ (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을 통해 한국의 통관시스템 확산
- * 탄자니아('12), 우즈베크('13), 카메룬('14), 가나('15), 알제리('18), 타지키스탄('19) 등 7개국 도입

2-1. 자체평가 수행기반

□ 종합 분석

- 2-1. 자체평가 수행기반 항목의 평균 달성도는 76.4%(11.5/15점)로 자체평가 역량 부문에서는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임. 다만 중위규모 기관의 경우 평가지침의 실효성 부족, 위원회 미운영 등 자체평가 제도의 구비와 실질적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가.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는 평가지침·매뉴얼 보유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자체평가 제도의 적정한 운용 정도를 진단하는 지표로서, 평균 점수는 양호한 편이나 상위-중위 규모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일부

중위규모 기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진단됨.

- 나. **평가계획의 충실성** 지표는 평가 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개별 평가계획의 충실한 수립 정도를 진단하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줌.

□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

- (평가제도 - 상위규모 기관) 전 기관이 자체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일부 기관은 평가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평가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 및 적용하고, 평가대상 선정 기준이나 외부 평가팀 선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외부위원이 포함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또는 평가대상 선정·평가결과 심의 과정에 외부위원의 참여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활성화함.

[자체평가 수행 기반 우수사례]

- ▲ (산업부) 산업·에너지 분야의 모든 사업에 대해 연차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 핵심 사업은 국개위 심사 대상 자체평가 과제로 선정, 평가 실시 및 보고
- ▲ (농진청) 기관 내 성과평가팀을 신설('22.1), 체계적 평가 수행체계 마련

- (평가제도 - 중위규모 기관) 자체평가 지침은 있으나 실효성 부족하거나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등 자체평가 제도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이행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됨.
 -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자체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4개 기관) 구성된 경우에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2개 기관).
 - 자체평가 지침의 내용이 형식적이며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경우가 다수이며 지침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운영되지 않고 있음.

[자체평가지침 실효성 미흡 사례]

- ▲ (△△청) 자체평가지침 조항 간 상충되거나 실효성이 없어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음. 일반적인 ODA 평가 지침의 내용과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 △△청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 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음.
 - 지침 제9조(평가 실시 방법)에서 평가 방법을 '내부평가'와 '사업 만족도 평가'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부평가와 만족도 이상의 성과 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제10조(평가의 실시)에서 평가의 주체를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수행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독립적 평가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실제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계획 수립) 국개위 평가계획 제출양식에 따라 다소 형식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의 설정이 미흡한 경우가 관찰됨.
 - 종합적 평가계획이 미비하여 일부 사업은 계속 제외되거나 소수 개별 사업만을 대상으로 일회성 평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 평가계획 제출양식에 따라 사업마다 획일적 평가계획이 제시되거나, 평가 지표나 조사방법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평가보고서의 결과와 상이한 경우도 발견됨.
 - 소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별 평가계획 미흡 사례]

- ▲ (△△청) 개별 평가계획에 평가지표와 조사방법, 환류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미흡하고, 대상사업별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형식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예시>

- 컨설팅 또는 초청연수 사업의 주 성과지표를 '만족도'로 수립하고, 목표치를 이전년도 실적 기준에서 5% 축소 또는 유지로 임의 설정
 - ⇒ 참여자 만족도는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가 되지 못하며, 사업의 성공 여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음.

- 초청연수 사업의 보조지표로 설정된 '현업 적용도'의 측정 산식에 '사후보고서 제출국 수'를 활용
 ⇒ 사후보고서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보고서 제출국 수로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성과지표 및 목표치	○ (주지표) 컨설팅 만족도						
	성과 지표	실적(목표)			2020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8	2019	2020			
사업 적청도	3.55	-	3.37	'18년도 실적의 90%로 산정*	외부평가 결과 (4점 만점)	설문조사 등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5% 축소 조정							
성과지표 및 목표치	○ (보조지표) 컨설팅 결과의 정책 반영률						
	성과 지표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20					
컨설팅 결과 정책 반영률	40%			정책반영 예정 과제 수 / 전체 개선과제 수	설문조사		

성과지표 및 목표치	○ (주지표) 초청연수 만족도						
	성과 지표	실적			2021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8	2019	2020			
연수 만족도	94.4	93.5	93.8	20년도 만족도 유지	연수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설문조사	
성과지표 및 목표치	○ (보조지표) 현업적용도 평가						
	성과 지표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21					
현업 적용도	50%			사후보고서 제출국 수 / 연수참가국 수	사후보고서		
	50점			업무적용도 조사 (100점 만점)	설문조사		

성과지표 내용	○ (주지표) 교육목적의 부합성, 강의내용 전달, 강사의 전문성, 교육자료의 유용성 등 초청연수 만족도를 주지표로 하고,					
	○ (보조지표) 연수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보고서 제출 및 현업적용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하여 수원국이 교육내용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보조지표로 함께 측정					

②-2. 자체평가 관리

□ 종합 분석

- ②-2. 자체평가 관리 항목의 평균 달성도는 69.6%(13.9/20점)로 낮으며, 상위-중위 규모 기관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특히 평가 객관성 확보 노력과 평가품질 개선 노력 세부지표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짐.

- 가. **평가 과정의 신뢰성 지표**는 평가 기준 및 절차, 방법에 부합하게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 객관성 확보 정도를 진단함. 평가수행의 적절성 세부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중위규모 기관의 객관성 확보 노력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진단됨.
- 나. **평가 결과의 충실성**은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제언의 구체성과 유용성을 진단하는 지표임. 일부 중위규모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와 제언의 충실성은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진단됨.
- 다. **평가품질 개선 노력 지표**는 평가품질 기준 및 심의(검토) 절차 이행 여부 등 평가 품질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평균으로 볼 때 미흡한 수준임. 특히 중위규모 기관의 평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됨.

□ 규모별 상세 분석

- **(상위규모)** 대부분 기관이 평가예산을 확보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자 선정 기준, 평가보고서 품질기준, 평가결과 심의절차 등을 보유하여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도 다수로 파악됨.
 - '21년 기준, 총 6개/7개 기관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평가예산액은 125백만 원으로 조사됨.
 -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별 평가계획, 위탁수행 관리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있음.
 - 평가 위탁 시 과업지시서에 평가범위, 조사 방법, 보고서 목차, PDM, 평가 매트릭스 등 평가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보고서의 품질 심의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중위규모)** 대체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보고서의 충실성도 양호한 수준이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품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조사자료 범위 및 방법 제한적, 사업자료

외에 추가적 정보 수집 부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비 등 미흡한 평가 보고서가 여전히 상당수이며, 평가보고서 간 충실성과 품질에 편차가 큼.

- 평가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외부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다만 외부평가 시행의 경우에도 평가보고서의 낮은 품질로 인해 실질적 환류 기능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평가 품질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평가 예산 대비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음.

* 외부평가 실시기관: ('20년) 2개 → ('21년) 5개(평균 48백만원)

[자체평가보고서 품질 미흡 사례]

- ▲ (◇◇부) '21년 외부평가를 실시했으나, 평가 매트릭스 설계 등 품질관리가 미흡, 실질적 정책제언 부족 등 평가 효과성 저조
- ▲ (◇◇청) 평가보고서에 조사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 분석 등의 필수적 분석이 부재함. 사업결과보고서의 인용을 제외하고 평가팀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객관적 근거제시 미흡 등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 분량에 비해 내실있는 평가정보가 부족함.

- (평가 품질관리) 기관별로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으나, 평가보고서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가품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지표·평가방법 연구를 추진하거나, 평가전담 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과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보고서 심의기준이 미비하여 평가결과가 형식적으로 검토되거나 품질 미달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치가 부재한 경우 평가보고서의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매뉴얼」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품질체크 리스트, 점검절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미흡한 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매뉴얼」의 평가보고서 심사 관련 내용>

-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매뉴얼(2022 개정, p. 22)에서는 평가보고서(안)에 대하여 평가 계획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보고서 구성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타당한 근거 및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 환류 과제가 적절히 도출되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③ 평가보고서(안) 심사

- 평가실시기관은 외부평가의 경우 용역기관의 평가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등을 기준으로 아래사항 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각 평가실시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 평가보고서(안)이 계약서 및 상세 평가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실시기관이 제시한 보고서양식에 맞추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 평가보고서(안)의 내용이 평가실시기관이 제시한 보고서 양식에 제시된 내용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
 - ▶ 평가보고서(안)이 상세 평가계획 상의 평가질문들에 대해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내부평가의 경우, 평가보고서가 평가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결과 환류 과제가 적절히 도출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때, 10억 이상 기관은 평가결과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가보고서 심사기준 사례 - 농진청>

-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항목을 5개 총 12개 질문으로 구성하여 하여 평가보고서의 명료성, 조사방법의 투명성, 결론의 논리성·객관성, 공정성, 계획대비 충실성을 심사
- 각 질문의 배점에 따라 평점을 부여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보고서 심사표

심사자 : _____ (서명)

☐ 보고서명 : *****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형점
합계		100	
1. 평가기준과 원칙에 대한 답변의 명료성 (30점)	• 평가보고서가 평가계획 상의 평가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 평가보고서가 평가원칙과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 대상이 이룩한 성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평가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10	
	• 답변이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10	
2. 평가조사방법의 투명성 (15점)	• 평가보고서가 사용한 평가조사방법론이 적절한가?	10	
	• 평가보고서가 제시하는 데이터나 평가방법론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5	
3. 구성 및 결론의 정당성 (25점)	• 목차 등 구성이 논리적이고, 문장이 간결하여 쉽게 이해되는가?	10	
	• 평가보고서가 도출한 결론이 객관적으로 뒷받침 되는 논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 평가보고서가 평가수행상의 한계 및 제약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분석을 제시하는가?	5	
4. 내용의 공정성 (15점)	• 평가보고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10	
	• 평가보고서가 평가대상의 강점 뿐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가?	5	
5. 평가계획 대비 보고서의 충실성 (15점)	• 평가보고서가 당초 평가실행계획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가?	7	
	• 평가보고서가 평가실행계획에 제시된 방법론에 맞춰서 작성되었는가?	8	
추가 의견			

<평가보고서 심사기준 사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

-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기준 5개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문을 제시
- 각 항목의 배점에 따라 항목별 종합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평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기준 <전면개정 2020. 4. 28.>

보고서명			
심사일자	년 월 일	심사위원명	(서명)

품질심사 기준	배점	점수	심사평
1. 평가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평가배경 및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평가대상과 범위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평가대상 사업 수행배경, 경과, 맥락적 요인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였는가? ○ 평가팀 구성은 책임성,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였는가?(평가자 정보 및 역할 제시, 평가 주제·분야 및 지역 전문가 등의 포함 여부, 이해관계자 및 시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 등) ○ 평가목적, 대상, 유형에 적절한 평가기준 및 질문을 설정하였는가? ○ 평가방법론의 선택이 타당하며, 평가방법과 자료수집(자료의 수집 방법 및 도구 그리고 출처 등) 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가?	25		
2. 평가 수행의 신뢰성 ○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모형(PDM) 기반으로 평가가 설계되었는가? ○ 기존 PDM의 논리성 및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는가? ○ 평가대상 사업 관련 문헌 및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평가대상 사업의 대상 집단과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범위와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평가대상 사업의 지원환경과 지원논리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고 충분하가?(개발 정책, 수요 및 환경, 기타 수원국 환경 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합평가 매뉴얼 및 평가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지침 및 평가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수원국, 공여국, 시민사회 등 개발파트너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했는가? ○ 평가 자료 수집 또는 조사방법이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평가 과정에서 차별이나 기타 윤리적 사항에 유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15		

<평가보고서 심사기준 사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

3. 평가 분석 및 결과의 타당성			
○ 제시된 평가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는가? ○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평가하였는가?(OECD DAC 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및 범분야 이슈(양성평등, 환경 등) ○ 객관적 증거 및 자료에 의해 입증된 결론이 논리적 연계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 평가 결과가 평가 범위 및 평가 질문에 대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25		
4. 평가 교훈 및 제언의 유용성			
○ 사업수행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충분하고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평가 결론과 교훈 간에 유기적 논리적 연계성이 존재하는가? ○ 제언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형태로 도출되었는가? ○ 제언의 우선순위가 구분, 제시되었는가? ○ 제언을 주요 이해관계자별 혹은 사업 수행 단계별 등 구체적 범주 에 따라 제시하였는가? ○ 평가 결론 및 교훈, 제언 간에 유기적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가?	25		
5. 평가 결과보고서 구성의 체계성			
○ 평가 용역제안서 및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 ○ 평가 요약, 목차 및 보고서 내용이 명료하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작성되었나? ○ 국영문 요약은 명확하고 보고서 주요내용(평가목적, 평가 방법론, 주요 평가결과, 교훈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평가 결과 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평가 수행동안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부록에 첨부되어있는가? (현지조사 개요 및 활동내역, 면담자 목록, 수원국 설문지, 설문 결과 등)	10		
총점 및 총평	100		

※ 평가 종류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은 조정(수정, 삭제 등) 가능

②-3. 평가결과 활용

□ 종합 분석

- ②-3. 평가결과 활용 항목은 전체 6개 소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 달성도 (64.2%)를 기록함. 상위-중위 규모 기관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위규모 기관의 경우 특히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공개 세부지표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지표에서 진단하는 평가결과 기반 개선과제의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나. 평가결과 환류의 충실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특히 중위 규모 기관의 평가결과의 공개 및 공유 지표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

- (가. 개선과제 도출) 평가결과 도출한 개선과제를 기관별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추진한 성과가 다수 있음.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우수사례]

▲ (농진청) 평가 시행부서에서 제언의 타당성을 검토, 제도개선 추진

- 과제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보완('22.上), 평가프로세스 개선('22), 사후평가 도입('23.下) 등

▲ (관세청) 평가 제언 중 '비대면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에 대한 보완'에 대응하여 'WCO 회원국 비대면 연수사업 발전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VR)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이행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 중위규모 기관의 경우 평가를 통한 이행과제 도출 등의 환류 노력이 대체로 미흡함. 개선과제 도출 실적이 없거나 2년 연속 동일한 개선과제를 제출한 경우도 있음. 반복적이고 이행 용이한 개선과제를 선정할 우려가 있고, 보고되는 이행률은 높으나 실제 사업관리체계 개선이나 유사사업 기획에

활용된 사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평가보고서 제언의 타당성·이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이 제언의 낮은 채택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제도개선과제의 도출에는 다소 소극적임. 전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언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검토 후 구체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성과관리 체계 정비 및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별 개선과제에 대해서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개선과제의 이행 목표, 방법,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시 과제 이행의 주요 성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성을 제고하도록 함.
- (나. 평가결과 환류) 상위규모 기관은 다수가 평가 결과의 공개 방침을 보유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춘 것으로 진단됨.

[평가결과 공유 우수사례]

- ▲ (산업부) 수원국 및 사업수행기관에 자체평가 결과 요약본을 공유하고, 일부 사업은 수원국 협력기관의 평가 제언에 대한 환류 계획을 받아 평가보고서에 첨부함.
- ▲ (복지부-KOFIH) 수원국과 평가결과 영문본 공유 및 현지 환류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원국측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음. 내부적으로 사업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사업관리 실무에 적용하도록 독려함.

- 중위규모 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에서의 평가 결과물의 공개·공유에 소극적이며, 수원국 정부와의 의견 수렴이나 결과 공유 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국조실을 통해 ODA Korea 포털에 요약본을 공개하는 것 외에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에 소극적임.
- 평가결과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음. 특히 평가계획 수립 시에 기관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와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평가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

3. ODA 기관역량 개선 방안

가. 교훈

□ 전반적으로 많은 기관이 ODA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 간 큰 편차가 나타남.

○ 기관의 ODA 사업 규모, 사업의 성격 및 추진 구조에 따라 기관 역량이 매우 상이한 양태를 보임.

- 조직 내 ODA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거나 산하 전담 수행기관을 두어 경험 축적된 일부 상위규모 부처·기관은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모두 양호한 역량을 보임.

- 일부 중위규모 부처는 ODA 사업에 대한 이해나 전반적인 기관역량이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 구비,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함.

○ ODA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처의 명확한 ODA 추진 목표에 맞춰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부 부처의 경우 ODA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전담 수행기관에 사업 전반을 위임하는 등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미흡함.

- 부처의 타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 등 부처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ODA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할 여지가 큼.

□ 기관 간 역량 차이는 △예산·조직 등 제반 사항과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제반 사항) 상위규모 기관은 전담조직* 및 평가예산** 측면에서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함.

* 부서내 전담부서(농진청, 고용부), ODA 전담기관 지정(복지·산업·과기·국토·해수부)

** 평가예산 평균액 : 상위규모(7개, 108백만원), 중위규모(5개, 4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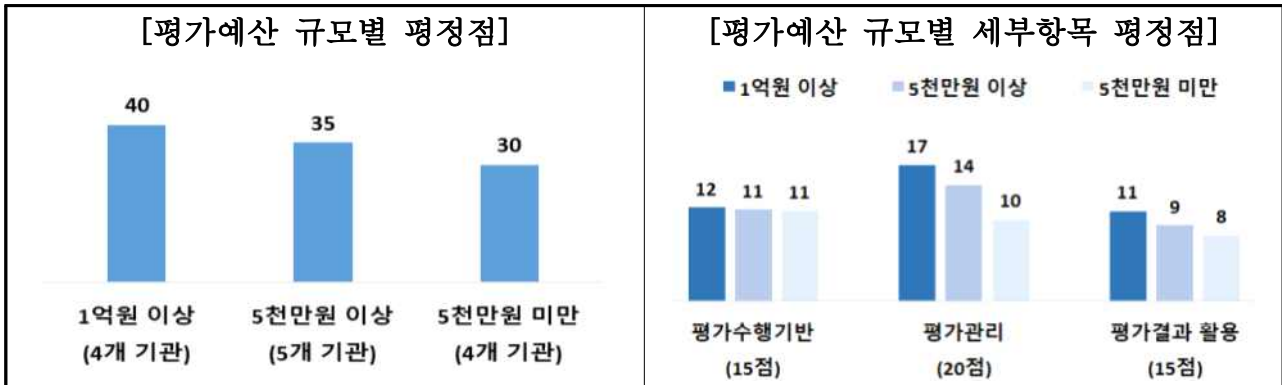
- 평가예산을 확보한 기관이 '자체평가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남.* 평가예산을 확보하여 외부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품질 관리나 평가 제언 활용 등

자체평가 역량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평가예산 규모별 자체평가 평점 점수

: (5천만원 미만) 30점 → (5천만원 이상) 35점 → (1억원 이상) 40점

그림 2-7. 평가예산 규모와 자체평가 역량 지표



자료: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평정 및 의견(‘21.7월) 결과, 연구진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함.

-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외부평가팀의 역량에 따라 평가보고서의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단순 외부평가 시행 여부보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후속 품질관리 노력이 중요함.

○ (인식)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과관리 기반조성 미흡**으로 나타남.

* “ODA 사업 비중이 낮다보니, 성과관리 필요성을 잘 못느껴”(◇◇ 실무자)

** 자체평가위원회 미운영, 관련 지침 미비 또는 형식적인 지침 보유 등

- 전담부서와 전담 수행기관을 보유한 상위규모 기관이더라도 기관 차원의 인식이 낮은 경우, 성과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됨.

*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시행기관(중앙부처) 차원의 전략수립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

□ 기관의 추진 여건,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기관별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기관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인식 제고) ODA에 대한 이해 및 사업관리·평가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종합 점검 및 자체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음.

- 부처의 주체적인 정책관리 및 총괄 역할 수행, 기관 내 성과관리 분절화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에 노력 필요
- (추진 기반) 관련 규정 및 지침 구비, 사업관리·평가 매뉴얼, 자체평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 공통사항 보완 시 역량 개선의 여지가 큼.
- 전담조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사업관리 기준 및 매뉴얼 구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수행체계 정착 필요
- 평가 예산·인력 확보가 미진한 기관은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여건 개선 지원이 필요

나. 개선 방안

1) 항목별 개선 방안

☐ (수행체계) 시행기관(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관리체계 확립

- ODA사업을 전담기관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도, 중앙부처는 전략 수립, 위탁 사무 관리 등 주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총괄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총괄부서의 주체적인 정책 기능 및 총괄 역할 강화가 필요함.
- 특히 ODA에 관여하는 관계 부서 및 산하 기관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기획) 부처의 종합적 추진 전략 하에 연계성 높은 사업으로 편성하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업 간 시너지 확대

- 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전략과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행기관(중앙부처) 중심의 중장기 ODA 추진 전략,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이행계획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기존 사업의 반복보다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연계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사업 발굴·추진체계를 구축함.
- 기관 차원에서 수원국 수요 조사,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을 검토하고, 기관의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대표 성과모형을 수립하여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및 분야별 성과지표·목표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관리) 사업관리지침의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통합적·체계적 사업 관리 기반 마련

- 기관의 조직 특성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지침 및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 총괄적 사업관리 및 사업별 성과관리·모니터링 지침 등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부서 간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위임·위탁관리 계획을 수립함.
- 특히 기관의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매뉴얼, 위탁관리 기준, 사후관리 지침 등의 구체성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사업 전주기*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사업관리 단계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점검을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 사업 기획·발굴 → 계획수립 → 사업관리 → 평가·성과 관리 → 환류
- 위탁 사업의 경우, 주기적 보고 및 점검,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사업 정보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서 관리 및 정보 공개기준 수립이 긴요함.
-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 관련 문서의 종류, 표준양식, 관리 책임자,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정보의 효과적 공유와 활용을 위해 DB 관리 방안(플랫폼 활용, 정보공개 기준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를 고려하는 체계 정착

- 사후관리를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기관의 ODA 성과 지속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후관리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 예시>

▲ 사후관리, 사후점검, 사후지원의 정의

▲ 지원 절차: 사후점검 ⇨ 계획 수립 ⇨ 대상 선정·승인 ⇨ 시행 ⇨ 종료·보고

* 사후점검: 모니터링, 중간·종료·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운영·관리 현황, 성과 달성도, 후속조치 필요사항 점검 등

▲ 사후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사업비, 사업기간

- (프로젝트) 시설물 교체·기술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내, 사업종료 완료 후 5년 이내 등

- (연수사업) 귀국 연수생의 지식공유·연구활동, 지역사회 활동, 동문회 운영 등

- 사후관리 규정을 수립·보완하고 전략적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후속사업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제도 및 계획)** 소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자체평가 제도 운영

- 평가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발성 평가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평가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관의 소관 사업 구성을 검토하여 핵심사업 중심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되, 제외되는 사업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을 묶어 정기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침 개정 및 자체평가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자체평가 수행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자체평가의 기능을 기관의 의사결정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실효성, 구체성이 부족한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평가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함.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 평가대상 선정, 평가 계획·결과 심의, 개선과제 도출 등 평가 과정 전반에서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함.

□ **(평가 관리)** 평가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예산 확보 및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내실화

○ 평가보고서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품질관리 기준 마련 시급

- 평가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최소한의 자료 수집·조사방법 등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심사하는 체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보고서 품질 개선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기관별 ODA 사업구조와 주요 특징을 고려하되 국조실의 메타평가 가이드라인(2014)을 참조하여 평가품질 관리기준 설정 필요

<평가품질 심사 기준/체크리스트에 고려할 주요 내용 예시>

- ※ 국조실은 평가내실화를 위해 평가단계별로 계획의 적절성, 과정의 신뢰성, 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품질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
- **평가계획의 적절성:** 평가실시기관이 기획단계에서 평가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자체평가에 있어서 대상과 범위 선정이 적절하고 논리적인지를 검토
 - 특히 평가예산 및 자원을 고려하여 평가수행팀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평가방법론과 기준선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
- **평가과정의 신뢰성:** 평가수행기관(외부평가자)이 평가활동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분석과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 평가매뉴얼 및 TOR을 준수하였는지, 평가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평가환경 및 지원논리 분석이 명확한지 등을 검토
 - 평가보고서에 적용된 평가기준을 적절히 활용하였는지, 평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조사방법이 타당하고 객관적인지, 분석과 결론도출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
- **평가결과의 유용성:** 평가수행기관의 평가결과와 제언이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평가실시기관의 평가결과의 배포 및 공유, 최종 보고체계 및 공개정도를 확인하고, 환류메커니즘의 적정성 검토

자료: OECD/DAC(2010), 개발평가 품질 기준(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 국조실(2014), 메타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 평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외부평가 확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외부평가일 경우에도 평가팀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체크 리스트, 점검절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함.
 - 예산 여건상 내부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자문,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품질관리 절차를 적극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 제언의 적극적 환류 및 평가결과 공유 확대

- 기관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와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결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추진 개선 및 향후 사업 발굴·기획에 유용한 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평가 범위 및 질문, 제언의 범위와 평가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도출되도록 관리함.
- 환류과제(장/단기 과제)를 적극 도출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수원국 파트너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정보 공개 추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가결과와 제언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검토를 강화하고, 평가보고서의 제언을 그대로 이행과제로 채택 또는 미채택할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류과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평가결과의 공유·공개 기준을 검토하여, 수원국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함.

제3장 개선과제 및 시사점

1. 기관역량진단의 주요 성과

- 2022년 최초 시행된 기관역량진단을 통해 ODA 시행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 기관역량진단 기준을 통해 ODA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시행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제시함.
 - 성과관리 역량: 중장기 목표 수립, 통합적·체계적 사업 기획 및 관리, 연계·협업, 성과 유지 노력 등
 - 자체평가 역량: 자체평가 제도, 평가 기획·관리, 평가 품질, 결과 활용 및 공유 등
- 역량진단 과정이 ODA 시행기관이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학습하는 계기가 되어, 진단 과정 자체가 역량 강화의 첫 단계로 기능했다는 점을 기관역량진단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관역량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작성, 면담 과정을 통해 ODA 성과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 기관 담당자들의 관심 제고 및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였음.
 - 또한 ODA 추진의 일반적 원칙과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기회도 제공함.
- 시행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
 - 진단 항목에 따라 자료 및 답변 준비, 인터뷰 등의 의사소통을 통해 국제적 규범, 타 부처/기관의 사업추진 사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기관역량진단 결과 공유 워크숍(22.9.2. 개최)을 통해 주요 결과 및 우수·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ODA 역량 강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심을 제고함.

-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여 시행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정보에 기반한 정책 판단이 가능하도록 ODA 시행기관에 대한 기초정보를 축적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 및 기관별 제언을 도출함.
- 특히 시행기관별 ODA 추진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파악하고, 우수·미흡 요인과 제약을 분석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기관별로 사업 규모 및 유형, 전문 분야, ODA 시행 제반 여건(조직, 수행 체계, 사업관리 인력·예산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제언과 체계적 지원 방안 도출이 가능함.

2. 기관역량진단 개선과제

- 기관별·진단항목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기관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지원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시행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평가 지침 및 매뉴얼, 사업 정보 관리 체계, 평가품질 관리 기준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관이 보유·적용해야 하는 △ 최소한의 업무 매뉴얼, △ 사업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의 종류, △ 문서 관리 범위·방법, △ 사업 연계조정 기준, △ 평가 품질관리 방법(평가품질 기준, 보고서 심의 방식) 등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부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성과지표 수립 및 기초선 조사 실시, 데이터 수집 등은 소규모 사업에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이므로, 현실적인 기준을 제안하고 컨설팅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 특히 중위규모 기관에서 낮게 나타난 항목들, 즉 사업관리·모니터링 체계, 사후관리·자체평가 제도, 평가품질 관리의 개선을 위해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행기관의 수요에 기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평가 방법 연구 등을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미흡 기관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예산, 전문성 등의 ODA 추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함.

□ 역량진단 결과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진단 결과 도출된 기관별 제언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적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 단기(2년) 개선 과제: 다음번 기관역량 진단 시까지 개선할 시급 과제

- 중장기 개선 과제: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제안하고, 부처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역량진단 결과 개선과제 이행 실적을 차기 진단 시 우수사례 가점 등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ODA 시행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기관역량진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성이 높음.

○ 기관역량진단의 목적이 우리나라 ODA 추진역량 강화에 있으므로, 시행기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우수·미흡 부문에 대한 분석 및 구체적인 제언 제공, 우수사례 공유,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행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 확대

○ 기관역량진단의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임.

- 전반적으로 시행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우수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역량진단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료 수집에 제약이 있었음.

- 기관역량진단 설명회 및 실적기술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진단을 위한 조사·면담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도록 함.

□ 모든 대상 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이 완료되는 '23년에 달성도 및 기관 간 편차에 따라 역량진단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달성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음.

- 예) ①-1. 사업기획(15점)의 '가.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10점)' 지표는 전반적으로 인식과 달성도가 높으므로, '나. 계획수립의 충실성(5점)'의 사업 발굴·기획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와 배점 조정 검토 가능

○ 달성도가 낮고 편차가 큰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높이고 보다 세부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세부 질문을 조정·보완함.

- '22년 진단 결과, ①-2-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①-3. 사후관리 노력, ②-2. 자체평가 관리, ②-3. 평가결과의 활용 항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질문을 보완하고, 배점 조정도 검토가 필요함.

② 2022년도 ODA 시행기관 컨설팅

제1장 2022년 기관컨설팅 지원 개요

1. 추진 배경

- 제35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는 의결안건 ‘ODA 성과관리체계 개편방향(안)’을 통해 시행기관 간 성과관리 역량 격차 문제를 제기함.
 -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2.1월)는 20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을 통해 국개위 평가과제로 기관역량진단 실시계획과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의결함.
- 소규모 시행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 역량강화 지원 및 개별 컨설팅 등 ODA 시행기관 간의 역량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 조치가 필요함.
 -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경험이 부족하여 기관역량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역량강화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기로 함.

2. 대상기관

- ODA 시행기관 중 기관역량진단에서 제외된 하위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자료를 제출한 17개 기관(‘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제40회 국개위) 또는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지자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시, 부산시, 서울시, 울산시, 인천시, 제주도 등 10개 기관
 - (중앙부처) 감사원, 공정위, 권익위,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앙선관위, 질병관리청 등 10억원 미만의 7개 기관

○ (기타) ODA 시행기관 중 자발적으로 컨설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 기관역량진단에서 제외된 소규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컨설팅 희망여부 조사('22년 상반기)를 시행함.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질병관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이 컨설팅을 희망하여 기관별로 컨설팅 항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함.

* '22년 ODA 예산규모 38억원으로 소규모 시행기관은 아니나, ODA 사업 추진 극초기로 ('22년부터 사업 실시) 사업 수행과 성과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함.

3.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 기관역량진단에서 제외된 하위기관 및 지자체가 자체 역량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진단 항목별 최소 기대 수준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기관역량진단과 일관되도록 △성과관리 역량, △자체평가 역량을 구분하고, △지자체 항목을 별도 추가함.

□ 17개 기관('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제40회 국개위)을 대상으로 기관의 일반 현황, 체크리스트 항목별 해당 여부 체크, 근거자료 제출, 未 해당 시 사유 및 향후 보완 계획 작성을 요청함.

○ 기관의 일반 현황으로 △기관 개요, △사업추진 현황('20-'21), △추진 체계, △평가 제도 및 실적, △기타 특징 및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청함.

○ 추가적으로 체크리스트 항목별 관련 질의를 통해 기관의 세부 애로사항을 파악함.

□ 자체 진단을 통해 기관역량진단 대비 사전 인지 제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이해도 강화 및 체제 정비 효과를 기대함.

표 1-1.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진단 항목	세부 항목
1 성과 관리 역량	① 부처/기관 내 ODA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조직)를 갖추고 있는가?
	② 정부 ODA 전략*을 반영한 내부 전략/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종합계획, 중점협력, 각종 범부처 ODA 전략, 국정과제 등
	③ ODA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등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④ 사업기획시, 수원국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
	⑤ 사업기획 단계에서 체계적인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관련 질의	a. 부처/기관 차원의 전략 수립, 사업 기획·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은? (※ 필요시 별지 작성)
	b. 성과목표 또는 성과지표 설정시 애로사항은?(※ 필요시 별지 작성)
2 자체 평가 역량	① 사업 담당자와 평가 담당자를 분리하고 있는가?
	② 평가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기관별 내부 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준수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④ 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고 있는가? ※ 사업관리체계 개선에 환류, 유사사업 기획에 반영 등
관련 질의	c. 사업별 평가예산 확보 방법은?(※ 필요시 별지 작성) (예시: 별도 자체평가예산, 사업비 내에 성과관리 예산 편성, 출장비/회의비 활용 등)
	d. 자체평가 수행시 애로사항은?(※ 필요시 별지 작성)
3 지 자 체	①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개위 심사를 받고 있는가?
	②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가?

4. 컨설팅 항목 수요조사

- 컨설팅 희망기관별 세부 컨설팅 수요 파악을 위해 △ 사업수행체계, △ 평가수행체계를 구분하여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함.
- 항목별 컨설팅 희망여부 체크, 구체적 컨설팅 희망 내용 혹은 현황 기술을 요청함.
 -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희망 기관이 기 제출한 자료(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포함)와 기관역량진단을 통해 파악한 ODA 수행기관의 주요 애로사항을 토대로 수요조사 항목을 세부 조정·보완함.
 - 예) 소규모 기관의 경우 대부분 내부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가 이행’ 항목을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세분화함.
 - 항목별 산출물/기대효과를 명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함.

표 1-2. 기관컨설팅 수요조사 항목

항목	컨설팅 항목		산출물/기대효과
사업 수행체계			
ODA 수행체계	1	부처/기관 차원의 ODA 방향성 및 업무분장 (부서/담당자)	○ 부처/기관의 명확한 ODA 목표, 방향성 수립 ○ 업무분장체계정리
	2	사업개요서 상 성과목표(output/outcome), 지표 설정	○ 사업유형, 특성별로 적절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사업계획	3	사업개요서 상 M&E 계획, 담당주체, 관련 예산	○ 담당주체와 예산을 명시한 M&E 계획 마련
	4	주기적 성과데이터 수집	○ 객관적 성과 측정 방안 이해 및 수행
성과관리	5	기초선조사, 모니터링 실시	

항목	컨설팅 항목		산출물/기대효과
평가 수행체계			
평가지침	6	평가지침 내용 및 조항의 적절성 검토	○ 일관적·객관적 평가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개선)
업무분장	7	부처/기관 차원의 자체평가 관리 업무분장	○ 자체평가 총괄, 관리, 기획 부서 및 담당자 설정 ○ 부서 및 담당자별 명확한 과업범위/책임설정
평가계획	8	적절한 자체평가 대상선정과 계획(지표설정 등) 마련	○ 자체평가 대상선정 기준 및 원칙 설정 ○ (필요시 22년/23년 자체평가 대상 재선정 및 지표수정)
평가이행	9	내부평가 시: 객관성/전문성 담보 방안	○ 내부평가의 객관성 개선
	10	외부평가 시: 제안요청서(RfP)의 적절성 확보방안 외부평가자 선정기준 및 주의항목 평가관리 과정 및 방법	○ 제안요청서 개선 (평가대상/시기에 따른 기준 적용 및 평가목적의 명확한 제시 등 포함) ○ 객관적인 외부평가자 선정 ○ 외부평가관리 프로토콜 마련 (보고서 심의절차, 품질관리 기준 등 포함)
환류	11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 평가결과 및 제언을 검토하여 반영계획 수립 ○ 이행과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활용
	12	평가결과의 공개 및 공유	○ 평가결과의 투명한 공개

5. 컨설팅 진행 절차

□ 기관과 일정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컨설팅을 진행함.

- (사전 기초조사) 대상기관 제출 자체 역량진단 점검내용 및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기초조사 수행 및 대상기관 선정
- (1차 협의·컨설팅) 사전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개최
 - 컨설팅 희망분야 관련 구체사항 및 기초조사 결과 검토사항 질의응답
 - 대상기관 희망 시 기관역량진단 워크숍 참관

- (2차 협의·컨설팅) 1차 협의·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대면 혹은 비대면 컨설팅 개최하여 결과 공유 및 최종 협의
- (간담회 개최) 대상기관 희망시 유관·산하기관과 워크숍 또는 간담회 개최
- (보고서 작성)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최종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기관별 추진현황 및 날짜

표 1-3. 기관별 추진현황 및 날짜

컨설팅 진행절차	인천시	부산시	중기부	질병청
사전 기초조사	8.5	8.11	9.6	8.5
1차 협의·컨설팅	8.26(비대면)	9.16(비대면)	10.13	9.1(비대면)
2차 협의·컨설팅	9.22	10.6	11.10(서면)	일시 보류*
(요청시) 간담회 개최	11.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기관별 추진일정 정리

* 기관(질병청) 사정(국제회의 등)으로 일시 보류, 서면 자료 전달 뒤 11월 재개 예정. 필요시 연구기간 종료시에도 컨설팅 수요항목에 대해 지원 예정

제2장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결과

1. 자체 역량진단 대상기관 현황 및 시사점

□ (사업현황)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17개)의 '21년도 ODA 사업 규모는 약 356억원이고 사업 수는 39개임.

○ 대부분 연수사업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와 지자체는 추진 분야가 서로 상이함.

- 중앙부처(7개)의 경우, 연수사업이 대다수이며 일부 분담금 등 기타 분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3개)은 양자 사업은 수행하지 않음.

- 지자체(10개) 경우, 1개 기관(경북)만 프로젝트 사업은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연수사업 및 민관협력 위주로 추진함. 기타로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무상 사업 총 33개 중 24개가 단년도 사업임.

- 중앙부처에서 양자무상으로 추진하는 연수사업(11개)은 전부 단년도 사업임.

- 지자체 사업의 경우 경북(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제외한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13개)을 추진 중임.

표 2-1. 2021년도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17개)의 분야·분류별 사업 수(개)

구 분	연수사업	민관협력	프로젝트	기타**	합계	양자무상	다자성 양자	다자
중앙부처	11	0	0	5	16	11	4	1
지자체	5	6	8*	4	23	22	1	0
합계	16	6	8	9	39	33	5	1

* 소규모 기관 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은 경상북도뿐임(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 기타 : 분담금·부담금 등(3), 장학지원(2), 봉사단(1), 기술협력(1), 국제기구고용지원(1) 등

※ 인사혁신처, 조달청, 질병관리청은 다자성 양자 또는 다자 사업을 수행(양자사업은 미수행. '21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36-2호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으로 재구성함

○ 대다수 사업이 연수사업 및 민간협력 사업인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분담금 등 다자성 양자(무상) 부문이 60% 이상을 차지함.

- 금액 기준으로 연수사업은 4%, 민간협력 사업은 8% 수준에 불과함.

- 다자성 양자 1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제외할 경우 금액 기준 양자무상 부문* 규모가 가장 크며, 분야별로 연수사업은 9.4%, 민간협력 사업은 18.7%를 차지함.

* 양자무상 46.5%, 다자성양자 14.8%, 다자 38.7%를 차지함.

표 2-2. 2021년도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의 분야별 금액 비중

구분	연수사업	프로젝트	민관협력	기타	합 계
양자무상	3.3%	7.2%	8.3%	1.9%	20.7%
다자성양자(무상)	0.9%	0.0%	0.0%	61.2%	62.1%
다자	0.0%	0.0%	0.0%	17.2%	17.2%
총 계	4.2%	7.2%	8.3%	80.3%	100.0%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36-2호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으로 재구성

□ (평가현황)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에 따라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또는 5건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의 경우, 최소한 2년에 1번씩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자체역량진단 대상 17개 기관의 대부분이 2년에 1번씩 자체평가를 추진함.

○ 17개 기관 중 '20년 5개 기관, '21년 4개 기관, '22년 8개 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표 2-3. 자체 역량진단 대상 기관의 연도별('20~'22) 자체평가 실시

연 도	외부평가	내부평가
2020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 경북, 인천
2021	경기, 경북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경북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울산, 제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37-3호, 제41-2호, 제40-5호에서 재구성함

- 17개 기관 중 양자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2개 기관(인사혁신처, 조달청)*은 '21년까지 자체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2020년에서 2022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1개(경북)뿐임.

* 질병관리청은 '20.9월 설립되어 '21년부터 ODA 시행기관에 해당

□ (시사점) 프로젝트 사업 위주 상·중위 규모 기관과 달리 기술협력 사업 위주 소규모 기관의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방안마련 및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며, 소규모 기관의 민관협력 사업 평가시 무상 주관기관의 성과보고서 또는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KOICA 민관협력 프로그램별 성과평가 보고서,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2018) 등

- 분야별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 취합, 중장기 사업 확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도 필요함.
-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상·중위 규모 기관과 달리 소규모 기관의 경우 2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고, 평가·환류에 대한 인식·관심이 낮아 ODA 평가교육,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평가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

2. 자체 역량진단 체크리스트 결과분석

□ (전체) 기관컨설팅 대상 17개 기관 중 성과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은 평균 12.6개(79%), 자체평가 역량을 갖춘 기관은 평균 8.75개(55%)로 성과관리보다 자체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 담당자와 평가 담당자 분리(2-1), 평가 예산 확보 역량(2-2)은 충족 기관 비율이 50% 미만으로 가장 취약함.
- 성과 관찰이 어려운 연수사업과 민관협력 사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충실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체평가 역량 제고가 더욱 시급함.

□ (성과관리 역량) 사업 기획 시 수원국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점은 양호하나 기관 차원의 전략/계획/규정/지침이 미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규정 보완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성과관리 역량 중 가장 양호한 항목은 수원국 수요 반영 여부(1-4, 94%)로서 1개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충족함.

○ 성과관리 역량 중 가장 취약한 항목은 내부 전략/계획 보유 여부(1-2, 56%), 사업관리 지침/규정 보유 여부(1-3, 69%) 순임.

- 대부분의 기관이 소수의 소규모, 단년도 사업을 수행하므로 내부전략 또는 지침/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사업 관리를 위해 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 또는 사무관리 규정을 활용함.

표 2-4. 항목별 충족 기관 수 및 비율

진단 항목	세부 항목	기관 수 ¹⁾	비율 (%)
① 성과관리역량	① 부처/기관 내 ODA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조직)를 갖추고 있는가?	14	88
	② 정부 ODA 전략*을 반영한 내부 전략/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종합계획, 중점협력, 각종 범부처 ODA 전략, 국정과제 등	9	56
	③ ODA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등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11	69
	④ 사업기획시, 수원국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	15	94
	⑤ 사업기획 단계에서 체계적인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14	88
	평균	12.6	79
② 자체평가역량	① 사업 담당자와 평가 담당자를 분리하고 있는가?	5	31
	② 평가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6	38
	③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기관별 내부 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준수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11	69

진단 항목	세부 항목	기관 수 ¹⁾	비율 (%)
	④ 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고 있는가? ※ 사업관리체계 개선에 환류, 유사사업 기획에 반영 등	13	81
	평균	8.75	55
[3] 지자체 ²⁾	①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개위 심사를 받고 있는가?	9*	90
	②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가?	8	80

주: 1) 조사에 응답한 16개(지자체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인사혁신처 미포함).

2)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 응답수는 9건이나 실제로 조사대상(10개) 모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사를 받는 기관임.

자료: 국무조정실

□ (자체평가 역량) 자체평가 역량 중 평가 결과 환류 역량이 가장 양호하고(2-4, 81%), 평가 인력(2-1, 31%) 및 예산(2-2 38%) 관련 항목일수록 취약함.

○ 기관별 ODA 담당 인력이 평균 1~2명이고 국제협력업무를 동시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사업 담당자와 평가 담당자 분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 내부평가 시 외부검토 실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등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대부분 별도 예산을 요하지 않는 내부평가를 시행하여 별도 평가예산을 확보한 기관이 31%에 불과함.

- 외부평가를 통해 종합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 별도 평가예산이 필요함.

- 별도 평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 사업 예산의 정해진 비율을 평가 용도로 활용하거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 총 10개 지자체 중 5개는 별도의 국제개발협력 조례를 보유, 나머지 5개는 국제개발협력 조항을 포함한 국제협력·국제교류 조례를 보유함.

- 항목 (3-2)를 충족하는 지자체 8개 중 5개만 별도의 국제개발협력 조례를 보유함.

□ (부처와 지자체 비교) 부처와 지자체가 취약한 항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항목별 충족 기관 평균 비율이 부처 76%, 지자체 63%로 부처보다 지자체가 취약함.*

* 세부 항목별 동일 비중을 사용한 평균임.

-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역량 모두 부처보다 지자체의 충족 기관 비율이 낮고, 자체평가 역량에서 그 차이가 더 큼.
 - 성과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 평균 비율이 부처 83%, 지자체 76%, 자체평가 역량을 갖춘 기관 평균 비율이 부처 67%, 지자체 48%임.
 - 부처와 지자체 간 역량 차이가 큰 항목은 평가지침 보유 여부(2-3), 평가 환류(2-4) 순이며, 특히 항목(2-3)의 경우 평가지침 보유기관 비율이 부처 100%, 지자체 50%로 격차가 가장 큼.
- 평균 충족기관 비율은 지자체가 낮으나 항목별 편차는 부처가 더 크므로 지자체는 전반적 성과관리 역량 제고, 부처는 항목별 성과관리 역량 제고에 집중을 요함.

제3장 기관별 컨설팅 요청사항

1. 수요조사 결과 요약

표 3-1. 컨설팅 세부 수요조사 결과

컨설팅 항목			인천시	부산시	중기부	질병청
가. 사업 수행체계						
ODA 수행체계	1	부처/기관 차원의 ODA 방향성 및 업무분장(부서/담당자)	○	○		○
사업계획	2	사업개요서 상 성과목표(output/outcome), 지표 설정	○			
	3	사업개요서 상 M&E 계획, 담당주체, 관련 예산	○		○	○
성과관리	4	주기적 성과데이터 수집		○	○	○
	5	기초선조사, 모니터링 실시		○	○	○
나. 평가 수행체계						
평가지침	6	평가지침 내용 및 조항의 적절성 검토		○	○	○
업무분장	7	부처/기관 차원의 자체평가 관리 업무분장			○	○
평가계획	8	적절한 자체평가 대상선정과 계획(지표설정 등) 마련	○	○	○	
평가이행	9	내부평가 시: 객관성/전문성 담보 방안		○	○	
	10	외부평가 시: 제안요청서(RfP)의 적절성 확보 방안, 외부평가자 선정기준 및 주의 항목, 평가관리 과정 및 방법		○	○	
환류	11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	○	
	12	평가결과의 공개 및 공유				

- 평가 수행체계보다 사업 수행체계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더 높음.
 - 3개 기관 이상 컨설팅 요청이 있는 항목이 사업 수행체계는 80%(4개/5개), 평가 수행체계는 29%(2개/7개)임.
- 세부 항목 중 평가 환류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가장 낮음.
 - 특히, '12. 평가 결과의 공개 및 공유' 항목은 유일하게 수요가 없는 항목임.

2. 공통 요청사항

- 대부분 기관(부산시 제외)이 ODA 사업 추진 초기 단계로 **사업수행 또는 성과관리 지침수립 관련 참고사례 공유**를 요청함.
 - 기관별 사업 특성에 맞춘 참고사례를 도출하여 공유하고, 필요시 지침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기로 함.
 - 타 기관 참고사례를 포함한 정보 공유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와 연계·협업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함.
 - 지자체의 경우 사업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원조 전담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추진 체제 개선에 대해 컨설팅 요청
- 소규모 또는 ODA 사업 초기인 대상기관 특성상, **성과관리 및 체계 강화보다 ODA 확대발전 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임.
 - 기관별 수요에 따라 ODA 확대발전을 위한 **체계 수립 컨설팅**과 동시에, ODA 예산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컨설팅**이 필요함.

3. 기관별 요청사항

- (인천시) 국제도시로서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방안 수립을 요청함.
 - (수행체계) 인천만의 강점있는 ODA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부서의 참여방안 마련 및 업무분장을 개선한 수행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추진함.
 - (성과관리) 수도권 매립지 관련 폐기물 처리정책 등 환경관련 연수 성과 목표 설정, 인천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업 관련 성과목표 설정 등
 - (평가계획)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과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함.
- (부산시) 부산시와 사업수행기관인 부산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체계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함.
 - (수행체계) 국제개발협력 조례 및 기관 특색에 맞는 ODA 전략을 강화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수행
 - (성과관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관리와 ODA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수립 방향을 검토함.
 - (평가계획) 자체평가 총괄, 관리, 기획 부서 및 담당자 설정, 부서 및 담당자별 명확한 과업범위 및 업무분담 방안을 협의함.
 - (평가지침)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평가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함.
- (중소벤처기업부) ODA 사업 추진 초기 단계로 전담기관 운영('24년~)을 위한 사업이행 및 평가 체계마련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함.

- (사업계획) 중기부의 사업추진전략과 통합적인 ODA 수행계 수립 방향과 산하기관의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ODA 전담기관 선정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함.
 - (성과관리) ODA 사업구조와 사업시행기관간 업무분장에 적합한 사업수행체제를 수립하고, 사업선정기준 및 성과측정을 위한 계획, 성과지표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함.
 - (평가지침) 중기부 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 및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방안을 협의함.
 - (평가이행) 평가예산 확보 및 내부평가 준비사항, 기준 등 운영사례를 협의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환류계획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사례를 요청함.
- **(질병관리청)** 사업수행기관 선정, 운영관리 및 평가지침 마련에 중점을 둔 컨설팅을 희망함.
- (수행체계) 사업운영관련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지침 마련
 - (사업계획) 외부용역시 모니터링 및 평가 지침 마련
 - (성과관리) 객관적 성과 측정 방안 이해 및 수행
 - (평가지침) 일관적·객관적 평가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 (평가관리) 자체평가 총괄, 관리, 기획 부서 및 담당자 설정, 부서 및 담당자별 명확한 과업범위/책임 설정

제4장 컨설팅 결과 공통내용

1. 사업 수행체계

□ (수행전략) 기관 차원의 ODA 추진 목표 및 중기(3년~5년)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체제를 통해 사업 기획과 추진에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함께, 연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 (수행체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ODA 위원회(가칭)를 설립·운영하여 사업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정당성 및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

○ ODA 위원회를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또는 대개도국 활동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간 소통·협의 원활화가 필요함.

- 기관 차원에서 관계자들간 소통을 확대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

○ ODA 위원회의 사업심의·자문을 통해 신규사업 기획 시 사업 근거 및 정당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필요시 평가위원회로서 평가계획 및 심의 역할 또한 수행이 가능함.

□ (전담기관) 전담기관이 있을 경우 총괄 역할과 사업 및 평가 시행 역할에 대한 관계자간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

○ 기관은 ODA 전략 및 방향성 제시, 위원회 운용, 사업기획, 조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 등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토록 함.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수립한 중기 발전방안에 따라 전담기관이 세부 이행 계획 수립, 수행기관의 지침에 따라 개별사업 및 평가를 이행하며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주기적인(연도별) 보고를 수행토록 함.

* 목표에 따른 주기적 이행현황 보고사항을 취합하여 ODA 성과 증빙 가능

□ (협업체제) ODA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담당인원 확충, 협력기관 모색 등 ODA 수행체계 강화가 필요함.

○ 관련 분야 ODA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자문·협업·협의체 구성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전담기관이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ODA 전담기관 설정을 통한 업무분장 검토가 가능함.

- 다만 외부 기관과의 업무분장에 대비하여 관리 체계 수립, 지침 및 규정 마련 등 거버넌스 사전 확립이 필요함.

○ 공공기관, 학계, 민간 등의 관련 분야 ODA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풀 구축을 제안함.

- 의사결정시 전문가 의견사항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정보 입수를 기대 가능

□ (사업계획)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한 지침 또는 운영규정 마련이 필요함.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체계(심의 및 평가위원회 운영 포함), △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 수행, △성과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이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경상북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예시 - 경상북도>

- 기관 대표 ODA 사업인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특화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함.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제정 : 2020. 02. 19.

개정 : 2020. 12. 31.

개정 : 2022. 0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기준”)은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리를 도모하며 국가별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사업효과성 제고 및 사업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제2호와 같이 정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재단 사무처장

나. 위원 :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

1) 당연직 :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세계화 팀장, 재단 기획총무부장, 사업1부장 <개정 2022.02.22.>

2) 선임직 : 4명 내외로 구성하며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관련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위촉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예시 - 국토교통부>

- 추진체계,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사업 시행, 성과관리 등 단계별 규정을 수립함.

국토교통부훈령 제1352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중점투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

□ (성과관리) 대부분 소규모·단년도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 사업의 경우 사업 실행계획 시 성과 합의 중심의 실행협의를 통한 성과목표 선정,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성과관리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 성과관리를 위한 협력 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함.

- 예시: KOICA 시민사회 협력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 결과 공유 일정을 명시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세밀하게 세움. (「KOICA 민관협력 사업안내서」(2022년) p.26-35 참고)

○ 연수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 및 DB 관리를 통한 사업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추적조사 및 관찰을 요하는 중장기성과(현업 적용도, 연수생의 장기적 역량 강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연수사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후속 사업(프로젝트 유형 포함) 발굴 및 연계사업 확대, 사업계획 수립시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 필요

○ 지표의 설정을 위해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 참고 가능

○ 기타 참고자료: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성과관리 매뉴얼」(2020년),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가이드라인」(2018년)

<연수사업 성과 평가지표 예시 - KOICA>

- KOICA 대표 연수사업인 글로벌연수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다른 기관의 연수사업에 적용 가능함.

영역	지표	연수유형별 배정			
		국별	다국가	현지	온라인
투입	연수생 선발의 적절성	8	10	8	8
	사전준비의 효율성	4			4
	연수기관의 효율성	4	6	7	4
	연수지원업무의 적절성	4	4		4
	소계	20	20	15	20
과정	과정기획의 적절성	10	8	10	10
	과정개발 및 전달의 효과성	7	9	6	5
	연수생 참여도	8	8	6	5
	현지사무소 참여도			8	5
	소계	25	25	30	25
산출	연수만족도	10	10	13	10
	학업성취도	8	8	10	8
	액션플랜 영향력	7	7		7
	현업적응도	10	10	12	10
	소계	35	35	35	35
결과	온라인교육매체 활용도				4
	지식확산도	8	8	8	4
	성과목표 달성도	12	12	12	12
	소계	20	20	20	20
계		100	100	100	100

주 1) 대각선 표시가 된 셀은 해당 연수유형에 활용되지 않는 성과평가 지표임을 의미함(배점: 0점)

2) 공동연수(초청/현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투입)협력기관 역량」, 「(과정)협력기관 파트너십」 지표는 평가체계에서 제외되었음.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일정 예시 - KOICA>

- KOICA 시민사회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안내서 「KOICA 민관협력 사업안내서」에 결과 공유 일정, 사업 평가표가 명시되어 있음.
- 아래 예시를 참고하되 각 기관/사업 특성에 맞춤화된 일정, 평가계획 수립 필요.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 공유 일정]

주체	구분		시기
KOICA	연간 결산		N+1.02.01~ (종료사업의 경우) N+1.02.15.~
	중간평가		사업 착수 1년 이후
	사업결과 이양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		사업 종료 연차 1차(상반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시기 - (3차년도 약정사업) 3차년도 08.31. 까지
	사업결과 이양계획 승인		사업 종료 연차 1차(상반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접수 이후 1개월 이내
	모니터링		사업 착수 시부터~사업 종료 후 2년까지 - 무상양도계약시 KOICA 모니터링 권한 및 협조 의무사항 명시(필수 포함)
	종료평가		사업 종료 후 1년 내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2년 간 대상으로 관리
	종료보고		종료평가 이후 1년 내(종료평가 + 종료연차 정산완료 후)
파트너기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보고대상 기간	(상반기) N.01.01.~ N년도전체사업비 40% 집행률 달성 시점까지 (하반기) N.01.01.~ N.12.31.
		제출기한	(상반기) N.07.01.~N.08.31. (하반기) N+1.01.01.~N+1.01.31. (종료사업의 경우) N+1.01.01.~N+1.02.14.
	사업결과 이양 계획 마련		사업 착수 후 사업 종료 연차 1차(상반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시기 까지
	종료연차 1차(상반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 * 차년도 지속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대체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사업결과 이양계획 승인 요청	사업 종료 연차 1차(상반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시기 - (3차년도 약정사업) 3차년도.08.31.까지 - 차년도 지속사업으로 지원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2022. 07.22.까지 제출
	약정이행 결과보고	사업결과 이양결과 보고 - 무상양도 계약 체결 및 공증	사업 종료 이후 45일 내
	종료평가		사업 종료 후 1년 내
	연차별(상반기/하반기) 정산검토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45일간) N.09.01.~/N+1.02.01.~(종료사업의 경우) N+1.02.15.~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일정 예시 - KOICA>

5.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가. 중간 평가

- > 평가 대상: 당해연도 진행 중인 사업
 - > 평가 주체: KOICA 사무소 및 내외부 전문가
 - > 주요 평가 항목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가?
- ※ 상위 기관(외교부 등)의 점검 평가 가능함

나. 종료 평가

- > 평가 대상: 사업이 종료되는 전체 사업
- > 평가 시기: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실시
- > 평가 주체: 내외부 전문가
- > 전체 종료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평가 실시

[참고1] 민관협력사업 중간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평점
목표 달성도 (15)	산출물(output) 연차별 달성 현황(7)		7	산출물 연차별 누적 성과 기준, 당초 계획의 90%이상 달성 7 70% 이상 90% 미만 달성 6 50% 이상 70% 미만 달성 4 50% 미만 1
	수혜자에 혜택이 계획대로 균등하게 돌아가는지 여부(4)		4	매우 균등 4 균등 3 일부 균등 2 미흡 1
	수혜자/관련 기관 의견/만족도(4)		4	매우 만족 4 만족 3 일부 만족 2 미흡 1
사업추진 계획관리 (15)	사업계획 일정상 적시 추진 여부(5)		5	계획된 기간 내 추진 5 계획된 기간의 101~120% 4 계획된 기간의 121~150% 2 계획된 기간의 150% 초과 1 *단, 현지 여건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고려하여 평가
	민관협력사업 규정에 따른 사업관리 여부(5)		5	매우 준수 5 준수 4 일부 준수 2 미흡 1
	현지 지역정부 및 파트너 기관 등 현지 파트너십/참여도 관리(5)		5	참여도 매우 높음 5 높음 4 일부 참여 2 미흡 1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 - 국무조정실>

- 분야별/유형별 활용 가능한 표준성과지표가 정리되어 있음.

1. 사업 분야별 성과지표

□ **보건 분야:** SDG3(건강과 복지) 관련 또는 보건과 밀접한 SDG2(기아의 종식), SDG6(깨끗한 물과 위생) 이행을 목표로 하는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SDGs 3.2, 3.3, 3.8)	감염병 예방 및 검사, 대응역량 강화	결핵 진단 및 치료 수혜자 수(비율)	성과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 수혜자 수(비율)	성과
		국제보건규약(IHR) 역량 및 공중보건 위기 대비 (국가표준실험실 중 국제공인 인정기준에 맞는 실험실의 수)*	성과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성과
		소외열대질환/감염병 대응, 예방교육 주민 수(명)	산출물
		살충제 처리 모기장 사용 가구 수	산출물
		HIV/AIDS 등 기타 질병 치료 수혜자 수	산출물
		감염병 관리 훈련을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명)*	산출물
		감염병 관리 훈련을 받은 보건 의료시설 수(개)*	산출물
		감염병 검사 및 진단 등 훈련된 실험실 연구인력수(명)*	산출물
		지원을 통해 전염병 검사 기술 이전을 받은 형식 수(개)*	산출물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장비, 물품 지원 시설 수(개)*	산출물
		감염병 치료를 위해 지원한 의료 장비 및 물품 지원 시설 수(개)*	산출물
	비감염성 질환 관리	성인/청소년/과체중/비만인 수	산출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수	산출물
		비감염성질환 관리 교육을 이수한 보건인력 수	산출물
		성인/청소년 평균 일일 소금섭취량	산출물
		비감염성 질환 관련 작성된 실행계획수	산출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암, 비만 등)율	
	교통사고 사망환자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성과
		지원한 교통 안전 시스템 수	산출물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	백신/면역/콜드체인 관리 교육받은 보건의료인 수(명)	산출물
		콜드체인이 구축된 보건 의료 시설의 수(개)*	산출물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인지도교육 주민 수(명)	산출물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	성과
		nkm 이내에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주민 비율	산출물
		질병 사망률	성과
		연간 외래환자 방문 횟수	성과
		지원을 통해 증축/개선된 병원 수(개)	성과
		사업대상 병원 환자수(명)	성과
		의료시설에서 필수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수(명)	산출물

2. 평가 수행체계

□ (평가체계) 평가의 체계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계획 수립 및 심의 수행이 필요함.

○ 필요시 ODA 위원회가 평가위원회 역할 겸행도 가능함.

○ 참고자료: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신규사업 심사기준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국개위 42-1호)」

□ (평가지침)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평가지침 미보유 상태로서 **평가지침 마련**이 필요함.

○ 지침 내용으로 △평가 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방안, △평가 방법 및 내용(평가 목적, 주체, 시기, 형태, 기준 등), △평가 품질관리가 포함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4장 7조 참조

○ 전담기관이 있을 시, 기관과 협조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방안은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참고사례 및 자료: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평가지침」, 행정안전부 「내부 평가지침」, 기획재정부 「EDCF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 국무조정실>

- 자체평가에 대한 총칙, 평가의 정의·원칙 및 기준, 종류, 시행, 연간계획수립, 결과 활용 등 각 단계별 시행기관 및 평가실시기관의 역할 및 요구되는 바에 대한 내용이 있음.
- 제4장7조는 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시행 2021. 5. 27.] [국무조정실예규 제21호, 2021. 5. 2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044-200-20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가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① 모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 가.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다.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라. 평가결과와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마. 그 밖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 평가전문위는 필요한 경우 각 시행기관에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평가지침 예시 - 행안부>

-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단계별 내용을 담은 평가지침을 마련함.

※ 사업비 규모, 고려사항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 선정, 단 상기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 부재 시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는 과제 중 선정

<평가대상 선정기준 예시>

- 정책연관성 : 평가실시기관 및 상위기관의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개혁성 : 평가실시기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 포함 여부
- 확대적용가능성 :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
- 유용성 : 평가실시기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
- 평가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 (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예비조사 수행)
- 비용대비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대비 평가실시기관에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 선정절차

- 평가시행부서가 제출한 개별 자체평가 계획서(개별평가계획안)(참고2) 기준
- 평가총괄부서는 자체평가 심의위원회(10월)를 거쳐 평가소위 대상과제 선정

- (업무분장) 전담기관이 있을 경우 기관과 전담기관간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

- 기관은 평가위원회 운용을 통한 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 평가결과 취합, 평가 환류 등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토록 함.
- 전담기관은 평가 이행 및 결과 보고를 하며 필요시 평가를 외부 기관에게 위탁 가능

□ **(평가계획)** 중·소규모 ODA 수행기관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및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계획과 함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기적 성과 검토가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소규모 기관은 2년에 1건, 중규모 기관은 연 최소 2건 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이 필수임.

○ 별도 평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 사업 예산의 정해진 비율을 평가 용도로 활용하거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등 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 별도 예산을 요하지 않는 내부평가를 시행하나 외부평가를 통해 종합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소규모, 단기간 연수사업의 경우 장기 성과 관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 산출물 또는 사업 수행의 충실성을 평가하여 차기 사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평가성을 고려한 지표 설정이 필요함.

- 평가 지표 설정 참고사례: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22년, 국무조정실),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성과관리 매뉴얼」('20년, p.4 성과평가 지표*)

* 본 보고서 p.91 예시 참고

□ **(평가이행)** 평가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를 나누는 등 내부평가 시 객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평가 담당자 분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평가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환류)** ODA 사업의 평가를 통해 성과를 취합, 중장기적으로 기관의 ODA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등 평가 결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3. 기타 사항

- ODA 사업 경험 확대와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KOICA를 포함한 타 기관의 산하·전담기관을 포함한 **외부 기관과 협력·연계 및 소통 확대**가 필요함.
- KOICA 공공의 정부부처 제안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체 신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협력 또한 가능함.
-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KOICA 센터 및 사무소와 협력하여 경험을 확대하고, 종료사업 중 성과 우수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코이카 본부 차원에서 코이카 지역센터 추천을 통한 지자체용 지정공모 제도 도입 등 KOICA 본부 및 KOICA 지역센터 협력 및 협조가 필요함.

부록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352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 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중점투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2.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
4.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협력사업 담당 임원
5. 해외건설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정책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건설정책국장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
2. 제10조의 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목록
5. 제11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제6조제3항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에서 제1항제3호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분야담당관 등) ① 해외건설지원과장은 협력사업의 총괄사업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기획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분야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해외건설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기획연구 과제 수행

2. 분야별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

3. 협력사업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참석 등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

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5.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
6. 협력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 참여
7. 협력사업 관련 수원국, 유관부처 등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8.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분야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4제2항의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내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운영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2항의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
3.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
4. 제8조의 전략기획연구과제 추진 지원
5. 제11조 및 제18조의 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6. 협력사업 관리, 정산 등 협력사업 수탁에 따른 부대업무
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

8. 협력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9. 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운영
 10. 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총괄담당관은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2.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목표
3. 중장기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협력사업 성과 분석

②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획연구 추진) ①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부서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 중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기획연구 과제로 확정한다. 다만, 제2항의 정기 수요조사 이후 수원국의 요청,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및 양국 경제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신속한 기획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담당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과제를 추진하게 하며,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담당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신규사업의 발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
2.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4. 필수제출 서류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업을 취합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자격조건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전문가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기로 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제3항제10호에 속하는 전문가, 공관 및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안의 작성) ①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 협력대상국에 알려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력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장 사업시행

제11조(사업의 발주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예산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담당관과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장,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전문가풀에 포함된 전문가 3인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지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협회의사록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회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회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에 따르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협의의사록 작성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제14조(사업비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명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결과의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사업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
2.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성과관리

제18조(자체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제19조(추적조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2월까지 수행기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2.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이하 “추적조사”라 한다)하고 제16조에 따른 사업 결과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적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 후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후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및 확산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위원회·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국토교통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이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자료보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시행 2021. 5. 27.] [국무조정실예규 제21호, 2021. 5. 2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044-200-20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평가의 정의) "평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기관) 영 제13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및 시행기관이 지침에 따른 평가실시기관이 된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가.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 마. 파트너십 : 개발도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가. 적절성 :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나.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다.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라.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 마.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바.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평가

제3장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실시기관 중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전문위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평가"라 한다.

②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사. 기관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 평가

아. 다자협력사업평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

자.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① 모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가.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라. 평가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마. 그 밖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 평가전문위는 필요한 경우 각 시행기관에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의 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연간평가계획의 수립) ① 모든 시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② 단, 시행기관 중 평가 대상 연도의 종합시행계획 내 양자사업 기준액이 10억 미만 또는 사업 건수가 5건 이하가 되는 시행기관은 2년에 1번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③ 자체평가계획에는 평가예산, 성과지표,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 시행기관은 평가전문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에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⑤ 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전문위의 연간 위원회평가계획을 심의·조정하여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⑥ 평가전문위는 수립한 연간 평가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실시기관은 이 지침, 제7조의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평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실시기관은 타 시행기관 및 개발도상국 또는 타 공여국의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① 시행기관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

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② 평가전문위는 협조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동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평가전문위의 평가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①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③ 평가전문위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 효과 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제21호, 2021. 5. 2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국무조정실 ODA 사업 성과지표 모델(안)

1. 사업 분야별 성과지표

□ **보건 분야:** SDG3(건강과 복지) 관련 또는 보건과 밀접한 SDG2(기아의 종식), SDG6(깨끗한 물과 위생) 이행을 목표로 하는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SDGs 3.2, 3.3, 3.8)	감염병 예방 및 검사, 대응역량 강화	결핵 진단 및 치료 수혜자 수(비율)	성과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 수혜자 수(비율)	성과
		국제보건규약(IHR) 역량 및 공중보건 위기 대비 (국가표준실험실 중 국제공인 인정기준에 맞는 실험실의 수)*	성과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성과
		소외열대질환/감염병 대응, 예방교육 주민 수(명)	산출물
		살충제 처리 모기장 사용 가구 수	산출물
		HIV/AIDS 등 기타 질병 치료 수혜자 수	산출물
		감염병 관리 훈련을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명)*	산출물
		감염병 관리 훈련을 받은 보건의료시설 수(개)*	산출물
		감염병 검사 및 진단 등 훈련된 실험실 연구인력수(명)*	산출물
		지원을 통해 전염병 검사 기술 이전을 받은 형식 수(개)*	산출물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장비, 물품 지원 시설 수(개)*	산출물
		감염병 치료를 위해 지원한 의료 장비 및 물품 지원 시설 수(개)*	산출물
	비감염성 질환 관리	성인/청소년/과체중/비만인 수	산출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수	산출물
		비감염성질환 관리 교육을 이수한 보건인력 수	산출물
		성인/청소년 평균 일일 소금섭취량	산출물
		비감염성 질병 관련 작성된 실행계획수	산출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암, 비만 등)율	
	교통사고 사망환자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성과
		지원한 교통 안전 시스템 수	산출물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	백신/면역/콜드체인 관리 교육받은 보건의료인 수(명)	산출물
		콜드체인이 구축된 보건의료 시설의 수(개)*	산출물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인지교육 주민 수(명)	산출물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	성과
		nkm 이내에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주민 비율	산출물
		질병 사망률	성과
		연간 외래환자방문 횟수	성과
		지원을 통해 증축/개선된 병원 수(개)	성과
		사업대상 병원 환자수(명)	성과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구분
		의료시설에서 필수약품 및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수(명)	산출물
		병상수	산출물
		의료장비수	산출물
		지원을 통해 증축/개선된 응급실수(개)	산출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공 진단 장비 및 진료 과목 관련 진단검사 건수	성과
		특정 수술(시술) 건수	성과
		사업대상 병원 사망률	성과
		전문의 수	산출물
		훈련받은 보건인력 수(명)	산출물
		역량강화된 보건의료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 수(명)	성과
		보건의료 인력, 장비, 시설 및 약품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비율	산출물
		재고관리 데이터, 안전한 보관 시설, 만료 기간 내 약품 및 의료용품 사용 등을 갖춘 시설 비율	산출물
		손위생 관련 기준 및 관행을 인지하는 보건인력 수	성과
		응급치료 훈련을 지원 받은 보건의료 인력 수(명)	산출물
보건의료체계 (SDG 3.8)	보건의료정책	일반 보건의료 관련 수립된 정책	성과
		감염병 관련 수립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성과
	의료보험	의료보험체계 구축	성과
		의료보험을 통해 수혜를 받은 환자수(명)	산출물
	보건의료 데이터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센터 구축	성과
		보건의료 시설 내 진료 데이터 시스템 구축	성과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활용 비율	산출물
		진료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비율	산출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수혜자 수	산출물
	스마트의료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산출물
		원격진료 시스템 이용자수	산출물
		원격진료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
	방역시스템*	감염병 관련 접촉자/환자 추적 시스템 구축	산출물
		감염병 접촉자/환자 추적자 수/비율	산출물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 보건 서비스 제공 (SDGs 3.1, 3.4, 3.7, 3.8)	모자보건	4회 또는 8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	성과
		출산 후 48시간 이내 산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	성과
		전문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명)/비율	성과
		보건의료시설에서 출산한 비율	성과
		산모 사망률 감소	성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아동 수(명)/ 비율	성과
		영유아 대상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인지교육 주민 수(명)	산출물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구분
	성 인식 함양과 성 생식권 보장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1000명당)	성과
		청소년 성인지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명)	산출물
		성적 학대 및 성폭력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보건의료 인력 수	산출물
생식보건 (SDGs 3.1, 3.7)	생식보건	성생식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 수	산출물
		성생식보건 서비스 이용 횟수/비율	산출물
	가족계획	현대적 피임 실천 여성 수(비율)	성과
		피임도구 배포율	산출물
		가족계획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명)	산출물
		가족계획 관련 교육이수 마을보건요원(CHW) 수(명)	산출물
보편적 건강한 삶 보장 (SDGs 3.4, 3.5, 3.8, 3.A.1)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	15세 이상 주민의 현재 흡연율/(흡연자수)	성과
		5세 이상 주민의 고위험 음주율/(음주자 수)	성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산출물
		건강증진 교육을 통해 건강행동 변화를 보인 인구 비중	산출물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의 수	산출물
영양상태 개선 (SDGs 2.1, 2.2)	영양상태 개선	5세 미만 영유아 중 쇠약증(Wasting)/성장부진(stunting) 이동수(비율)	성과
		6-23 개월 아동 중 최소적정식사를 한 아동수(비율)	성과
		최소식품다양성	성과
		최소식사빈도	성과
		식이에너지소비 최소요구수준 이하 인구 비중	성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	성과
		영양보충식을 받은 영유아/임산부/수유부 수(명)	산출물
		급성영양결핍보충식 프로그램에 등록된 6-59개월 아동 수(명)	산출물
		대상별(임산부/수유부/영유아/청소년/성인) 영양관련 교육을 받은 주민의 수(명)	산출물
		대상별(임산부/수유부/영유아/청소년/성인) 영양관련 교육 받은 보건의료인 수(명)	산출물
		과거 6개월간 구충제/철분보충제/비타민A보충제를 섭취한 6-59개월 아동 비중	산출물
식수위생 (SDGs 6.1, 6.2)	위생환경 개선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화장실) 이용하는 인구수(비율)	성과
		위생시설/화장실이 개선된 가구/병원/보건소/학교 수(개)	산출물
		비누를 사용하여 주요시점마다 손씻기를 행하는 인구수(가구/학교/보건시설)*	산출물
		위생 관리(손씻기) 교육을 받은 보건의료인력의 수(명)	산출물
		위생 관리(손씻기) 교육을 받은 마을주민의 수(명)	산출물

주: *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에 활용가능한 지표

□ **공공행정 분야:** SDG16(평화와 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도국의 제도 관련 역량강화 사업

1)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분야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제도 및 역량 강화 (SDGs 16.3, 16.5, 16.6, 16.7, 16.9, 16.10, 17.)	전자정부 관련 정책	전자정부 구축 등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성과
		전자정부 발전전략 우선순위 채택 및 실행 정도	성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기반시설(정부통합, 데이터센터, 통합 통신망) 지원 및 완료 건수	산출물
		대국민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 지원 건수	산출물
		정보화를 통한 업무처리시간 개선율	성과
		사업완공 후 정부 포털사이트 접속률 증가 비중(%)	성과
		사업완공 후 인터넷을 통한 정부의 정보 제공률 증가 비중(%)	성과
		사업완공 후 정부기관간 온라인 업무 수행량 증가율(%)	성과
		정보서비스 이용만족도	성과
		정보서비스 접속 회수	산출물
		정보서비스 안정성 증가	성과
		정보서비스 접속시간 단축	산출물
		전자정부 운영/관리 훈련 대상 인원(명)	산출물
	전자정부 (솔루션)	주요 업무(조달 프로세스, 주민증 발급 등 전자정부 솔루션으로 제공 되는 주민원 또는 기능) 처리 속도 향상	성과
		솔루션 사용자(공무원 등)의 수	성과
		전자정부 솔루션을 이용한 핵심 업무 처리 건수	성과
		솔루션 사용자(공무원 등)의 전자정부 업무 프로세스 만족도	성과
		전자정부 솔루션 SW 및 HW	산출물
		전자정부 솔루션 관련 교육·훈련 기간(개월)	산출물
		전자정부 솔루션 관련 교육·훈련 대상 인원(명)	산출물
		전자정부 솔루션 관련 직원용 교육 매뉴얼	산출물
	조세 및 관세 행정 역량 강화	세정/관세자동화 시스템구축	산출물
		세정 자동화 시스템 활용 기관 및 인원수	산출물
		재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결산 자료 비중	산출물
		재무관리시스템 활용 기관 및 인원수	산출물
		관세행정 현대화시스템을 활용하는 통관사무소 수 및 비중	산출물
		세정/관세 관련 절감된 행정절차 및 시간/비용	성과
		세정/관세자동화 또는 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
	사법 부문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	사법/법령정보화 시스템 구축	산출물
		사법/법령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심법원 및 법조인 수	산출물
		사법/법령정보화 시스템 활용 국민수	산출물
		사법/법령정보화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
		법령정보 접근을 통한 법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	성과
		사법/법령정보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단축된 민원접수 처리시간	성과
	사이버범죄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산출물
		사이버 보안 유망기술 도입 지원	산출물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프로그램 지원 개수	산출물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기간(시간/개월)	산출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자 수(명)	산출물
	민주적 선거제도 구축 및 책임성 강화	개표자동화 시스템 구축 유무	산출물
		개표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절감된 투표시간	성과
		개표자동화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신뢰도	성과
		개표자동화시스템 관련 역량강화 활동 수혜자수	산출물
	통계 역량	통계 관련 정보화시스템 만족도	성과
		통계 관련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활용 비율	성과
		통계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유무	산출물

2) 공공분야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제도 및 역량 강화 (SDGs 16.3, 16.5, 16.6, 16.7, 16.9, 16.10, 17.)	공무원 인적역량 강화	제안 입법화 정도 혹은 정부 정책 반영도	성과
		교육내용 현업 적용도	성과
		교육과정 참여 후 교육생 역량 강화	산출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횟수, 참가자 수(건수/명)	산출물
	조세 행정 역량 강화	조세 관련 입법화 혹은 정부 정책 반영도	성과
		지방세수 증대 (섹터별, 지방정부별 조세증대 비율)	성과
		조세행정 국민만족도	성과
		세무행정 현대화 교육실시 횟수, 참가자 수(건수/명)	산출물
	사법 부문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성과
		역량강화 교육생의 만족도	성과
		법률구조활동, 프로보노 활동 건수(건)	산출물
		사법 인력 역량 강화 교육받은 법조인 수(명)	산출물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분권화 관련 정책컨설팅에 기반한 정책 수립 여부	성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 만족도	성과
		지방분권화 전략에 대한 정책컨설팅 채택 여부	산출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이수 공무원 수(명)	산출물
	반부패/감사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입법화 혹은 정부 정책 반영	성과
		교육 이수자 만족도	성과
		감사 및 반부패 관련 교육 이수자의 부패 관련 인식 변화	성과
		감사 및 반부패 관련 교육 이수 공무원 수(명)	산출물
	취약계층 인권, 시민권, 사회권보장	취약계층 관련 정책 수립 여부	성과
		소외계층(여성, 아동, 장애, 난민 등)의 인권 및 정의 인식도 개선	성과
	민주적 선거제도 구축 및 책임성 강화	개선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능력에 대한 유권자/정당 만족도	성과
		민주적 선거운영과정 교육받은 선관위 공무원 비중(%)	산출물
		선거제도 개선 후 투표를 변화	산출물
	치안	대상 지역 범죄 감소율	성과
		대상 지역 치안개선에 대한 주민 만족도/신뢰도	성과
		교육/워크샵 참여자의 만족도	성과
		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샵 개최 횟수 및 참여 인원수	산출물
		치안 관련대상 지역 주민 신고 또는 민원 처리 건수	산출물

□ **교육 분야:** SDG4(양질의 교육) 이행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SDGs 4.1, 4.6, 4.7)	교원역량 강화 및 교수법 향상	신규양성/교사 자격증 취득 교원 수/비율	성과
		교사대비 학생 수/비율	성과
		교육훈련과정 이수한 교사 수/비율	산출물
		교보재 개발/배포 건수(건) (또는 교보재를 제공받은 학생 수)	산출물
		해당 학년 및 과목(지역) 시험수준을 충족하는 학생수/비율	산출물
	기초학력 증진 및 무상 기초 교육 접근성 향상	초등학교 등록률	성과
		중등교육 등록률	성과
		중등학교 졸업률	성과
		전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비율	성과
		기초교육 졸업생 수(명)	성과
		마지막 학년도 잔존율	성과
		학업성취도 개선율	성과
		섹터별 지원을 통해 초등교육을 수혜 받은 학생수/비율	산출물
		수혜 학습자 수	산출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학교 환경 개선 만족도	성과
		지원대상 학교 등록율	산출물
		지원된 시설물 개수 및 활용률	산출물
		시설개선 학교 수(개)	산출물
		지원된 학교 학생 수(명)	산출물
	고등교육	대학교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수	산출물
		장학금 수혜 학생의 대학교 등록률/이수율/졸업률	산출물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받은 학생 수*(명)	산출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SDGs 4.5, 4.7, 5.1, 10.2)	여성교육(정규/비정규 교육/평생학습)	지원 대상 여성 문해율(청소년, 성인)	성과
		초등학교 여학생 등록율	성과
		중등학교 여학생 등록율	성과
		지원된 교육시설 수(개)	산출물
		교육받은 수혜자(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수(명)	산출물
	특수교육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청소년 문해율	성과
		지원대상 학교의 등록율, 출석율, 교육 이수율	성과
		지원된 교육 시설 수(개)	산출물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SDGs 4.3, 4.4, 4.7, 8.3, 8.5, 8.6)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 체제 및 학생 역량강화	신규 도입/개발된 표준기술 역량 프로그램 이수, 응시 또는 합격수/비율	성과
		TVET 관련 교보재 개발/배포 건수	산출물
		최근 1년간 직업기술교육훈련 받은 성인 및 청소년 비율	산출물
		교육/훈련받은 학생수(명)	산출물
		훈련받은 교사 수(명)	산출물
		졸업생 취업률	성과
		노동 수요 분석 건수(건)	성과
	직업기술교육 훈련기관 선도 모델 구축	졸업생관련 자격증 취득율	성과
		졸업생 취업율	성과
		졸업생 창업율	성과
		교육/훈련받은 학생 수(명)	산출물
		지원기관 졸업율	산출물
		선도모델 기관 수(개)	산출물

□ **농수산업/농촌개발 분야:** SDG2(기아의 종식) 이행, 농수산업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농촌개발, 생태계 보호 등의 세부목표 관련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 (SDGs 2.3, 2.4, 17.11)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농업 인프라 분야 정부지출	성과
		농업 생산량 증가율	성과
		양식 생산량 증가율	성과
		식품 손실량(T/ha)	성과
		농촌지도 수혜농민 농업 생산량	성과
		전수된 영농기술의 활용도	성과
		친환경 농축산 적정 영농기술 개발 건수, 적용면적(ha), 대상 농가 수(개)	산출물
		농지 구획정리 면적(ha) 또는 신규 경작지 면적(ha)	산출물
		증가된 농업용수 공급량(T)	산출물
		제공된 농기계 및 트랙터 개수 및 활용률	산출물
		농수산업 연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산출물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조합 참여 농가 생산성(투입량 대비 산출량)	성과
		협동조합원 농가 생산량	성과
		협동조합 통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청장년, 성별)	산출물
		농민협동조직 조합원수(명)	산출물
		농민조직 여성회원 수(명)	산출물
		농민조직 내 증가한 농촌지도사 수	산출물
	수확 후 관리	농식품 안전 사고율	성과
		농식품 관리 정책 및 제도 입법화 정도	성과
		가축 전염병 발생율	성과
		작물 병해충 발생율	성과
		농가 농산물 판매단가 상승율	성과
		농산물 수확 후 손실율	성과
		농가 소득 증대율	성과
		농수산물 수출량/비율	성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SDGs 2.3, 2.4, 9.1, 11.1)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역주민 역량 강화	작물 및 농산물 생산량	성과
		사회적 자본 (신뢰도) 증대율	성과
		지역 가구 또는 주민 저축 증가액 (또는 증가율)	산출물
		적정기술 활용 농가 비율	산출물
		재해관리 및 대책방안 활용하는 주민비율	산출물
		정보기술 사용 주민 비율(%)	산출물
		재해대책 활용 주민 비율	산출물
		가계 신용 위험지수	산출물
		마을/지역 모임 참여율(봉사활동 횟수, 회의 참여도 등) (건 또는 %)	산출물
		부엌, 화장실 등 생활환경 개선 건수(건) 또는 가구 수(개)	산출물
		재건설된 도로 길이(km)	산출물
		농촌개발 관련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주민의 수	산출물
		농업 관련 자문 제공한 정부 및 민간 기관, 사업체 수	산출물
		식량부족 지역 주민 감소율	산출물
		역량개발 관련 활동 수	산출물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훈련받은 인원 수	산출물
		안전한 식수 보급 가구수	산출물
		농가 주택 개량 가구 수	산출물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SDGs 2.4, 2.5)	농수산업 생물다양성 보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성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면적 ha, 참여 농가 수)	산출물
		토종 종자, 생물종, 전통지식 활용 가구비중	산출물
		토양지력증진 등 적정기술 제공 건수(기술요소별)(건)	산출물
		사업 대상지 내 보존되는 종자, 생물종, 전통지식 수(건)	산출물
		유기농 농산물 인증 건수	산출물

□ 물/수자원 분야: SDG6(깨끗한 물과 위생) 이행지원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안전한 수자원 관리 및 강화 (SDGs 6.1, 6.4, 6.5)	최적의 활용을 위한 안전/위생 물관리 역량 강화	수자원 정보 이용 증가율	산출물
		신규 수자원 확보량/이용 증가율	산출물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활용 만족도	성과
		통합수자원 관리 관련 교육 만족도	성과
		통합수자원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반영도	성과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을 위한 참여도 증가	성과
		수자원 정보 시스템 구축	산출물
		통합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인원	산출물
		통합수자원관리 관련 마스터플랜 등 계획 수립 건수	산출물
		수자원 관리 협의체 개수/협의회 개최 횟수	산출물
용수 효율성 증대 (SDGs 2.4, 6.4, 6.5, 6.6, 7.3)	수자원 인프라 활용한 에너지 효율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주요 작물 생산량 증가율	성과
		신규 재배 가능 작물 수 증가율	성과
		농가 순 연평균 소득 증가율	성과
		전기 보급율	성과
		CO2 배출량 감소율	성과
		가용 수자원 증가량(T)	산출물
		수자원 혜택 농지면적 증가량(ha)	산출물
		식량 확보 프로그램(SWFP)의 농업용 물 소비량	산출물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수(개)	산출물
		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산출물
식수 및 위생개선 및 수자원 안정성 강화 (SDGs 3.3, 3.9, 6.1, 6.2, 6.3, 6.4)	지속적인 식수/위생 공급 및 접근성 향상 안전한 식수 환경 및 위생행태 인지제고	개선된/안전하게 관리된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수혜자 수(명) 및 비율(%)	성과
		개선된/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시설 이용 인구수/비율	성과
		안전하게 처리된 폐수 비율	성과
		안전하게 처리된 가정오폐수량 비율	성과
		상수시설 보급률(%)	성과
		하수처리시설 보급률(%)	성과
		기본적인 수준의 식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 수	산출물
		가구 내 안전한 식수 접근성 (% , 하위 40%, 평균까지의 격차)	산출물
		기본적인 수준의 위생시설에 이용이 가능한 인구 수	산출물
		상수시설 지원 건 수(건)	산출물
		하수처리시설 수혜자 수(명)	산출물
		하수처리시설 지원 건 수(건)	산출물
		처리시설 통한 BOD 오염부하 제거량	산출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된 폐수량(m³/day)	산출물
		인당 일간 수자원 공급량	산출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 인구수	산출물
		노상배변근절 인증 받은 마을 수	산출물
		여성과 아동들의 취수시간 감소치	성과
		여학생 및 여성을 위한 위생 시설 이용 비중 증가율	성과
		안전한 폐수처리, 식수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주민/관리자 수	산출물
지속가능한 수자원 발전 (SDGs 6.5, 6.6, 11.5)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재해 대응력 향상	재난위험감소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유관기관 수/비율	성과
		조기경보 및 재해위험정보 체계를 갖춘 지방정부/유관기관 수/비율	성과
		물관련 재해위험 이해도 개선	성과
		재해발생 전 대피 여유시간 증가율	성과
		강수강우 관측, 홍수 예보 정확도	성과
		재난위험감소전략 수립 건수	산출물
		조기경보 실행 계획, 재해위험정보 및 평가 수립 건수	산출물
		통합수자원관리/재해관리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받은 주민/관리자 수	산출물
		홍수/가뭄 위험에 노출된 가구 비중 감소율	산출물
		자료 분석시간 감소율(%)	산출물
		예보 정확도 증가율(%)	산출물

□ **교통 분야:** SDG9(혁신과 인프라 구축) 및 SDG11(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관련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SDGs 9.1, 10.4, 16.6)	정책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사업	교통 관련 제안 입법화 정도 혹은 정부정책 반영도	성과
		교통 사업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수원국 정부 승인	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재원(차관 포함) 확보	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재원 확보	성과
	기술협력 품질제고	성과물의 본 사업 추진 기준 만족도(%)	산출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국 시행역량 강화 여부	산출물
	후속사업 연계성 제고	계획의 정부정책 반영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승인 여부	성과
		본 사업 추진 위한 공적자금 또는 잠재적 투자자 확보 노력(관련 정책협의 횟수 등)(건)	산출물
지속가능하며 접근 용이한 교통시스템 제공 (SDGs 3.9, 7.3, 9.1, 9.2, 11.2)	교통 접근성 향상	교통시설에서 2km 이내 거주하는 주민 수(명)	산출물
		대중교통 접근범위 0.5km 이내 거주 인구 수(명)	산출물
		교통약자 및 소외계층 이동편의지원시설 구축 규모(km/개소/m2)	산출물
	교통 안정성 제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건) 또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성과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감소율(%)	산출물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정책/계획 수립 건수	산출물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된 도로구간(km), 교차로 또는 교량 수(개소)	산출물
		교통안전교육 자료/매뉴얼 수(개)	산출물
		교통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교사/주민 수(명)	산출물
	경제산업 발전 지원	교통 서비스 이용 만족도	성과
		통행시간 감소율(%) 또는 차량운행비(연료비) 감소율(%)	산출물
		평균 통행속도 변화율(%)	산출물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대)	산출물
		물류수송 변화율(%)	산출물
		교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규모(km/개소/m2)	산출물
		신설/개선된 교통시설/수단 규모(km/개소/m2)	산출물
	무역 발전 지원	공항/항만 이용 수송객 수(명)	산출물
		공항/항만 이용 물류수송량	산출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온실가스(CO2) 배출량 감소율(%)	성과
		차량 에너지효율 개선율(%)	성과
		친환경 교통 관련 법/제도/정책/계획 수립 건수	산출물
		친환경 교통시설(시스템) 구축 규모(km/개소/m2)	산출물
		친환경 교통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명)	산출물

□ **에너지 분야:** SDG7(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세부목표(접근성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효율 개선)를 목표로 하는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에너지 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 (SDGs 7.1)	에너지 현대화	친환경 난방/조리시설(클린쿡스토브) 보급대수(개수)	산출물
		전력분야(송배전, 발전, 마이크로그리드 등) 사업 (수)	산출물
		전력 접근가능 인구 비율(%)	성과
		친환경 난방/조리시설(클린쿡스토브) 사용인구(명)	성과
		화석 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 수/비율	성과
		청정 연료 및 기술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성과
		국가 차원 에너지 관련 정책, 법률, 전략 및 계획 (수)	성과
	전기보급률 개선	한국 지원으로 향상된 에너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수	산출물
		대상지역 전기 보급 증가율(%)	성과
		대상지역 평균 연료비 절감율(%)	성과
		대상지역 전력공급시간 (시간/일)	성과
		대상지역 전력공급량 (MWh)	성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SDGs 7.2)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상지역 전력소비량 (MWh)	성과
		한국이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건수	산출물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훈련, 연수를 받은 인력수(명)	산출물
		신재생에너지 관련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보고서(건)	산출물
		제공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산출물
		한국지원에 따라 구축된 송/배전선로(km)	산출물
		한국지원으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가구(수)	산출물
		한국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이 개선된 기관 수	산출물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매뉴얼(수)	산출물
		한국 지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kW): 지열, 태양열, 풍력 등 구분	성과
		대상지역 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성과
		대상지역 연간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	성과
		신재생에너지 ODA로 인해 신규 조성된 민간투자 금액(USD)	성과
		대상지역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력공급을 받는 가구(수)	성과
		대상지역 신재생에너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고용된 인력	성과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 (SDGs 7.3, 7.a, 7.b)	전력 품질 및 에너지 효율	대상지역 신규 설치/개선된 송전선/변전소, 관련 배전시설 (수)	산출물
		에너지효율 관련 교육, 훈련, 연수를 받은 인력수 (명)	산출물
		에너지효율 관련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보고서(건)	산출물
		에너지 효율관련 실증단지(수)	산출물
		에너지 효율관련 R&D 인프라(수)	산출물
		대상지역 단전, 정전시간 감소율	성과
		대상지역 일일 전력공급 증가시간	성과
		대상지역 전력손실 감소율(%)	성과
		대상지역 에너지판매량 증가율(%)	성과
		대상지역 내 공공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의 에너지 비용 감소율(%)	성과
		연간 총 에너지 절감비용(USD/year)	성과
		연간 총 에너지 절감량(TOE/year)	성과
		에너지효율 ODA 로 인해 신규조성된 민간투자금액	성과

□ **기후변화 분야:** SDG13(기후행동) 목표 외에 다양한 SDG(교육, 물, 에너지, 도시, 파트너십)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는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모, 역량강화 (SDGs 6, 7, 11, 13)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방식을 이해하는 수혜자 비율(%): 기후친화적 작물 종류, 농업용수 관리, 재난발생시 대응방식 등	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수 및 농업용수 보급률(%)	성과
		주요 작물 생산량 증가율(%)	산출물
		기후친화적 작물 생산량 증가율(%)	산출물
	기후사업주류화	전체사업 대비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기술 적용 비율(%)	성과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CO2) 감축량(tons CO2-eq)	성과
		수소 생산용량(MW)	성과
		전기차 충전소(수)	산출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관리되는 토지, 산림 면적(ha)	성과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가구/수혜자(수)	산출물
		저탄소 기술 관련 프로젝트 수	성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SDGs 4, 13)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훈련/연수/역량개발/세미나 건(수)	산출물
		기후변화 대응 훈련/연수/역량개발/세미나에 참여한 수혜자(수)	산출물
		기후변화 대응 인적/제도적 역량을 개선한 기관(수)	성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률, 규정, 표준에 대한 자문보고서(수)	산출물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률, 규정, 표준이 수립/개선되어 공식제안, 채택, 시행된 건(수)	성과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재원 접근성 제고 (SDGs 13, 17.3)	기후재원 접근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발컨설팅의 후속사업 연계 건(수)	성과
		온실가스 경감 관련 개발컨설팅의 후속사업 연계 건(수)	성과
		한국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신규/추가 조성된 민간투자 금액(USD)	성과
		한국지원으로 온실가스 경감에 신규/추가 조성된 민간투자 금액(USD)	성과

- **환경, 폐기물, 생태계 분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SDG 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 14(해양생태계 보호), SDG15(육상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하는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환경보호, 천연자원관리, 환경오염 (SDG 11.6, 12.2 12.4 12.5, 15.2, 15.3)	천연자원 관리, 환경 일반	천연자원 관리/지역단위 천연자원 관리계획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마을(수)	산출물
		개선된 생태계 범위(산림, 습지, 망그로브 숲) 변화율(%)	산출물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성과
		토지 황폐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 범위(ha/year)	성과
		한국지원의 결과로 천연자원 관리가 개선된 토지면적(ha/year)	산출물
		염류화/습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 범위(ha)	성과
	환경오염/ 폐기물	집안의 대기 미세먼지 수준	산출물
		대상지역 내 장작/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수)	산출물
		이륜차, 삼륜차의 가스 배출량	산출물
		환경오염 개선/복원사업이 진행된 대상지역 범위	산출물
		WHO 대기질 지침에 따른 대상지역/국가 대기질 기준	성과
		한국 지원에 따른 산업/시 단위 폐기물 처리 역량(tons)	성과
		한국 지원으로 관리된 오염 토지 혹은 폐쇄된 폐기장(ha)	성과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 (SDG 14.5, 15.1, 15.4, 15.5, 15.9)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사업이 포함하는 보호지역 범위(ha)	성과
		생물다양성 친화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 외 신규지역(ha)	성과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이 포함하는 해양지역(ha)	성과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이 포함하는 해안선(km)	성과
		생물다양성 관련 훈련/연수/역량개발/세미나 건(수)	산출물
		생물다양성 관련 훈련/연수/역량개발/세미나에 참여한 수혜자(수)	산출물
		생물다양성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을 개선한 기관(수)	성과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 규정, 표준에 대한 자문보고서(수)	산출물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 규정, 표준이 수립/개선되어 공식제안, 채택, 시행된 건(수)	성과
	사막화방지 생태복원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숲 관리 면적(ha)	성과
		생태복원 조림 및 식재 사업 면적(ha, 식재식물 종수)	산출물
		숲 관리 정부 공적 재정 규모	성과
		숲 관리 및 임산자원 개발 기술 보급 사업 건수 및 규모(ha 또는 USD)	산출물
		산림자원 보존 정책 입법화 정도	성과
		멸종위기식물복원 종수(복원식물 종수)	산출물
		사막화 방지 기술지원 건수(건)	산출물

- **과학기술혁신 분야:** SDG9(혁신과 인프라 구축) 이행을 위한 사업, 과학기술 분야의 범분야성으로 인해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7(파트너십) 관련 사업 일부 또한 해당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 (SDGs 9.1, 9.5)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관련 석박사 과정 개설수(건)	산출물
		과학기술 정책 수립참여, 교육인원(명)	산출물
		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관련 마스터플랜 수립건수	산출물
		사업수혜자에 의해 수립된 신규 과학기술정책 수	성과
		수원기관 과학기술분야 신규연구과제 발굴 수	성과
		과학기술분야 논문 발표 수(건)	성과
		과학기술분야 특허출원 수(건)	성과
		남-남, 남-북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과제 수(건)	성과
		과학기술분야 특허출원 수(건)	성과
과학기술혁신 기반 산업발전 지원 (SDGs 8.3, 9.5, 9.b, 12.a, 17.7, 17.8)	과학기술 혁신 기반 산업발전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수)	산출물
		창업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인원(명)	산출물
		산학연 연계 공동 과제 수(건)	산출물
		신규 창업기업 생존율	성과
		산학연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건수	성과
		창업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수(건)	성과
		혁신 클러스터 입주기관 수(개)	산출물
		클러스터 내 주요 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업 수(개)	산출물
개도국 경제·사회 문제의 혁신적 해결 활성화 (SDGs 8.3, 17.6, 17.7, 17.8)	국내 혁신문제해결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개도국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 참여기업 수(개)	산출물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개발 건수(개)	성과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활성화	협력국 현지 기술혁신센터 설립건수(개)	산출물
		협력국 현지 기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건수(건)	산출물
		협력국 현지 기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취업 수(건)	성과
ICT/통신기술이용 역량 및 접근성 향상 (SDGs 5.b, 9.c, 17.8)	개도국의 ICT 및 통신 인프라 지원	ICT/ 통신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술 접근성이 확보된 수혜자 수 (명)	산출물
		ICT 및 통신 인프라 시설 구축 수	산출물
		인터넷 이용자 수/비율	산출물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구 수/비율	성과
		신규 또는 개선된 ICT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수/비율	산출물
		ICT 관련 자문을 받은 정부 기관, 조직, 사업체 또는 사람의 수	산출물

□ **성평등: SDG5(성평등) 이행을 위한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성 평등한 경제적 역량강화 (SDGs 5.3, 5.1, 5.4)	성평등한 배분시스템 구축, 직업/금융접근성 확대	성별에 따른 비농업분야 고용에서 비공식적 고용의 비율	성과
		생산 자원·경제적 자원 지원 여성 수혜자 수(토지, 노동, 자본, 생산 도구, 기기, 시설 등)	산출물
		성평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수(성별, 직급별, 교육과정 수준(고급, 기본)별)	산출물
		대상지역 주민 중 금융접근성(소액금융 등)사업 수혜자 중 여성 비중	산출물
		대상지역 주민 중 금융접근성이 있는 여성 비율	성과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여성 신청자 (수), 졸업자(주)	산출물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졸업자 중 여성 취업자 수(비중)	성과
성 평등한 사회적 지위 향상 (SDGs 5.1, 5.5)	성평등한 의사결정, 여성리더십 확대	관리자 이상 직급 여성의 비율(수)	성과
		성별 기반으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 강화,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존재 여부	성과
		마을공동체, 의사결정기구 내 여성 구성원 수(비중)	산출물
		여성 주도 의사결정기구(부녀회의 등) 구축 수	산출물
		성평등 증진 활동 그룹 구축 수	산출물
		초청연수 프로그램 여성 참가자수(비중)	산출물
성 평등한 기본권 확보 (SDGs 5.1, 5.2, 5.3, 5.6)	여성 성생식 건강권 확보, 젠더기반 폭력감소	15-49세 여성 중 성관계, 피임 사용, 재생산 건강 돌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여성의 비율(%)	성과
		폭력 유형 및 연령 별 15세 이상 여성 중 최근 12개월 동안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수)	성과
		연령 및 발생장소 별 15세 이상 여성 중 최근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의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수)	성과
		젠더기반폭력 대응 시설 지원 수	산출물
		젠더기반폭력 대응 서비스 제공 횟수(상담, 신고, 의료, 법조, 수사 등)	산출물

□ **ICT/디지털뉴딜 분야:** SDG9(혁신과 인프라 구축) 이행을 위한 사업, 농업, 보건, 교육, 교통 등의 분야에서 ICT 기술을 융합한 ODA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ICT 이용역량 및 접근성 향상 (SDG 9)	ICT 인프라 구축	ICT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술 접근성이 확보된 수혜자 수(명)	성과
		ICT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수	산출물
		인터넷 이용자수/비율	산출물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구수/비율	산출물
	ICT 관련 역량 강화	ICT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수/비율	산출물
		ICT 인프라 시설 관리 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수/비율	산출물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 및 농촌 개발 (SDGs 2.3, 2.4)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스마트팜 구축/활용 농가 수	산출물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량/평균소득	성과
		스마트팜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농민수	산출물
		스마트팜 구축 농가 만족도	성과
	농촌역량	농업에 정보기술 사용 주민 비율	산출물
보건의료체계 (SDG 3.8)	보건의료 데이터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센터 구축	성과
		보건의료 시설 내 진료 데이터 시스템 구축	성과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활용 비율	산출물
		진료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비율	산출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수혜자 수	산출물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산출물
	스마트의료	원격진료 시스템 이용자수	산출물
		원격진료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
	방역시스템	감염병 관련 접촉자/환자 추적 시스템 구축	산출물
		감염병 접촉자/환자 추적자 수/비율	산출물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SDGs 4.1, 4.6, 4.7)	원격학습시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산출물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산출물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실/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산출물
		온라인 교육 이용자수	산출물
		온라인 교육 이용자 만족도	성과
	교실 내 ICT 인프라/장비 지원	WIFI가 구축된 교실 수	산출물
		PC, 노트북, 교육 관련 ICT 장비/기기 지원	산출물
		지원된 인프라/장비/기기 이용자수	산출물
		교육 목적의 인터넷, 컴퓨터를 갖춘 학교 비율	성과
		지원된 인프라/장비/기기 이용자 만족도	성과
지속가능하며 접근용이한 교통시스템 제공 (SDGs 9.1, 9.2, 11.2)	교통체계 효율성, 통합성, 연결성 강화	ITS/스마트 교통제도/계획 등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성과
		ITS/스마트 교통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승인 여부	성과
		ITS/스마트 교통 관련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성과
		ITS/스마트 교통 관련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수	산출물
		교통효율성 향상을 위한 ITS 시스템 구축/도입 규모(km/개소/m2)	산출물
		ITS/스마트 교통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구축 건수(개소)	산출물
		ITS/스마트 교통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명)	산출물
		ITS/스마트 교통을 활용해 신설/개선된 교통시설/수단 규모(km/개소/m2)	산출물
		교통사고 사망자수(명/10만 명당)	성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성과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	성과
		통행량 증가율(%)	성과
		통행시간 감소율(%)	성과
			성과

□ **스마트시티/도시개발 분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관련 사업, 일부 SDG6(물), SDG9(인프라), SDG16(평화) 관련 사업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분류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SDGs 9.1, 9.2, 11.2)	지능형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체계 효율성/접근성/이용가능성 개선구축	ITS/스마트교통 제도/계획 등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성과
		ITS/스마트교통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승인 여부	성과
		ITS/스마트교통 관련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 여부	성과
		ITS/스마트교통 관련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수	산출물
		교통효율성 향상을 위한 ITS 시스템 구축/도입 규모(km/개소/m2)	산출물
		ITS/스마트교통 활용 교통체계 개선 역량강화 교육센터 구축 건수(개소)	산출물
		ITS/스마트교통 활용 교통체계 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명)	산출물
		ITS/스마트교통 활용 신설/개선된 교통시설/수단 규모(km/개소/m2)	산출물
		교통사고 사망자수(명/10만 명당)	성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성과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	성과
		통행량 증가율(%)	성과
		통행시간 감소율(%)	성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SDGs 6.1, 6.4, 6.5)	지능형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수자원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DB 구축	산출물
		수자원 정보 이용 증가율	성과
		도시의 수자원 관리 개선	성과
		지능형 하수처리장 구축 및 보급률	산출물
		하수처리 효율 증가	성과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수혜자 수(명)	산출물
도시 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대기질 관리 (SDG 11.6)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 규모	산출물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산출물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한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화 비율	성과
		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자 매칭 수	산출물
		스마트 폐기물 처리 DB 활용 관련 만족도	성과
	대기질 관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출물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기질 관리 정책을 수립한 도시의 수	산출물
		미세먼지 측정/알림 서비스 이용자수	산출물
		미세먼지 측정/알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성과
대국민 안전보장 (SDGs 16.1, 16.3)	방법	IT 방법시스템 및 방법 정보 플랫폼 구축	산출물
		스마트 가로등 설치 개수/범위(개/km2)	산출물
		대상지역 치안개선에 대한 주민 만족도/신뢰도	성과
		대상지역 주민 신고 또는 민원처리 건수	성과
		대상 지역 범죄 감소율	성과
재난위기 경감 (SDG 11.b)	재난 대응 시스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산출물
		재난대응 알림시스템 구축	산출물
		재난대응 조기경보/알림시스템 이용자수	성과
		재난대응 조기경보/알림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산출물
	재난 대응 관리 역량	재난대응 조기경보/알림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자수	산출물
		센다이재난위험감축체계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이행한 지방정부	성과
DB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	재난대응 조기경보/알림시스템 활용 재난관리 법/제도/정책/계획 수립 건수	산출물
		공간정보센터 구축	산출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산출물
		공간정보센터 이용자수	성과
		공간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성과
		공간정보시스템 이용자수	성과
		공간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성과
	도시내 정보 관련 DB 구축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도시 정책 수립	성과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관련 DB 구축	산출물
		DB를 통해 관리된 문화 및 자연유산 수	성과
		구축 DB 활용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 법/제도/정책/계획 수립 건수	산출물

2.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 연수사업

분류	표준 지표
산출물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수료생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실시횟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개발된 커리큘럼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개발된 action plan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종료 이후 수료생의 평균 연수만족도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종료 이후 수료생의 평균 학업성취도
성과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개발된 action plan 중 현업에 적용된 action plan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종료 이후 소속기관/부처 내 지식전수(knowledge transfer)를 위해 실시한 회의/세미나/워크숍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종료 이후 범기관/부처 차원에서 지식전수(knowledge transfer)를 위해 실시한 회의/세미나/워크숍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법/법령 개선(안)을 위해 실시된 회의 횟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내용을 반영하여 논의 중인 제도/법/법령 개선(안) 수
	00 분야/주제관련 역량강화 연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개정된 제도/법/법령 수

□ 개발컨설팅

분류		표준 지표
산출물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과정에서 대상기관 역량개발 및 자문을 위해 실시한 회의/협의회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결과로 도출된 마스터플랜 수, 자문보고서 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과정에서 자문을 받은 대상 부처/공공기관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을 통한 역량개발 자문, 연수, 훈련에 참여한 수혜자 수
성과	정책 자문	00 분야/주제관련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을 통해 개편/신설된 부처, 기관의 수
		00 분야/주제관련 정책자문 개발컨설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정책자문 개발컨설팅과 연계된 후속사업수(무상/유상/타공여기관/민간사업)
		00 분야/주제관련 정책자문 개발컨설팅과 연계된 후속사업 재원규모(공공재원, 민간재원)
	기술 자문	00 분야/주제관련 기술자문 개발컨설팅의 결과로 설치된 연구기관, 조사기관 수
		00 분야/주제관련기술자문 개발컨설팅의 결과로 설치된 연구기관, 조사기관 내 고용된 인력수
		00 분야/주제관련기술자문 개발컨설팅의 결과로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저널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기술자문 개발컨설팅의 결과로 실시된 학회 횟수
		00 분야/주제관련 기술자문 개발컨설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기술자문 개발컨설팅과 연계된 후속사업수(무상/유상/타공여기관/민간사업)
		00 분야/주제관련 기술자문 개발컨설팅과 연계된 후속사업 재원규모(공공재원, 민간재원)
	인프라 연계	00 분야/주제관련 인프라구축 연계 개발컨설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어 연계된 인프라구축 무상사업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어 연계된 인프라구축 유상사업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어 연계된 인프라구축 MDB 사업 건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어 연계된 인프라구축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수
00 분야/주제관련 개발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어 연계된 인프라구축 사업에 조성된 공공/민간재원 규모		

□ 봉사단

분류		표준 지표
산출물		활동시작한 봉사단원 인원
		활동 완료한 봉사단원 인원
		봉사단 참가자 프로그램 만족도
성과	봉사단 역량	봉사단원의 봉사활동 업무목표 달성도
		봉사단원의 외국어 능력향상도
	수원국 만족	봉사단 협력기관의 봉사단 활동 만족도
		봉사단 협력기관에 기자재, 교보재 제공한 실적 달성도
		봉사단 협력기관에 역량강화 교육 제공한 실적 달성도
	봉사단 커리어개발	귀국단원 중 국제개발협력분야 진출자수 및 비중
분야별 지표	교육	봉사단원이 지원한 교사 중 한국어 교수법 향상시킨 교사의 수
		봉사단원이 지원한 교사 중 한국어 자격증 습득한 교사의 수
		봉사단원이 지원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증가한 학생 수
		봉사단원이 지원한 학생 중 학습태도가 개선된 학생수
	농업	봉사단 지원을 받은 기관 수, 농민 수
		봉사단 지원으로 농업기술, 관리방법이 향상된 농민 수
		봉사단원과 협력한 농민 중 작물 생산량이 증가한 농민 수
		봉사단원 지원으로 토질을 향상시킨 농민 수
	아동/청년	봉사단원과 협력한 청소년 중 자존감이 증가한 3개 이상 근거를 보여준 청소년 수
		(에이즈 예방) 에이즈 감염방지에 대한 3개 이상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 수
		(위생) 적절한 손씻기 원칙에 대해 3개 이상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수
		(취업) 봉사단원과 협력한 청소년 중 취업이 된 학생 수

부록 4.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기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제정 : 2020. 02. 19.

개정 : 2020. 12. 31.

개정 : 2022. 0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기준”)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리를 도모하며 국가별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사업효과성 제고 및 사업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제2호와 같이 정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재단 사무처장

나. 위원 :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

1) 당연직 :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세계화 팀장, 재단 기획총무부장, 사업1부장 <개정 2022.02.22.>

2) 선임직 : 4명 내외로 구성하며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관련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경상북도 등 유관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 간사 : 평가담당자

2.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본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나. 선임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재단 총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22.>

제3장 기능 및 회의소집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
2. 신규 사업 관련 마을선정 심의 및 자문
3. 각 종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결과심의 및 자문
4. 현장 모니터링 참여 및 시범마을 별 평가(우수마을선정 등)
5. 기타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아래사항의 검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신규 사업국가 시범마을 선정 심의 시
2. 사업평가 연간계획 수립 시
3. 평가결과보고서 심의 및 자문 시
4. 평가결과보고회 개최 시
5. 기타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

제4장 경비지급

- 제7조(경비지급) ① 재단「실비보상규정」, 「여비규정」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 ② 선임직위원이 평가 및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성과평가 지침」 및 「전문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간접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2022 ODA 성과관리 워크숍 발표자료

2022 ODA 성과관리 워크숍

'22년도 기관역량진단 시행 및 시사점

이 은 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2022년 9월 2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기관역량진단의 의의

- ▶ ODA 시행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제시
 - 성과관리: 중장기 목표 수립, 통합적·체계적 사업 기획 및 관리, 연계·협업, 성과 유지 노력
 - 자체평가: 평가 제도, 평가 기획·관리, 평가 품질, 결과 활용 및 공유
- ▶ 기관의 특수성, 다양성 존중
 - 사업 규모, 유형, 전문 분야 상이
 - ODA 시행 제반 여건: 조직, 수행 체계, 사업관리 인력·예산 등
- ▶ 기관의 관심 제고 계기
 - 자료 수집, 면담 과정을 통해 성과관리 필요성 인식
 - ODA 추진의 원칙과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
 - 개선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기회 제공
- ▶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학습 기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 기관역량진단 주요 결과

▶ 진단 항목별 주요 결과 요약

진단 항목		세부 진단지표	주요 결과
대항목	소항목		
① 성과관리 역량 (50%)	1. 사업기획	가.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 상위전략 반영 등 사업추진계획 수립 현황은 대체로 양호
		나. 계획 수립의 충실성	-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및 기관내 사업간 연계 개선 여지
	2. 사업관리	가. 수행체계의 명확성	-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노력 확인
		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 사업정보 활용관리 미흡
		다.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	- 실질적 사업 연계에 한계
	3. 사후관리 노력	가. 사후관리 이행 노력	- 사후관리 기준 지침 미흡
		나. 사업성과 유지 노력	- 성과유지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② 자체 평가 역량 (50%)	1. 자체평가 수행기반	가.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	- 자체평가 제도, 인식 개선 확인
		나. 평가계획의 명확성	- 통합적 평가계획 부재 - 지침의 실효성 미흡
	2. 자체평가관리	가. 평가 과정의 신뢰성	- 외부평가 확대, 객관성·신뢰성 개선
		나. 평가결과의 충실성	- 평가보고서 품질 편차 여전
		다. 평가품질 개선 노력	- 평가품질 관리·인식 미흡
	3. 평가 결과의 활용	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 제언 검토, 개선과제 도출에 소극적
		나. 평가결과 활용의 충실성	- 평가결과 공개, 공유 확대 필요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① 성과관리 역량 - 1. 사업 기획

▶ 명확한 ODA 전략·추진계획, 성과목표, 사업 간 연계성, 사업 발굴·기획 절차

우수 사례	미흡 사례
△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부처/기관의 중장기-단기-사업별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1) 중장기 국제협력 전략 - ODA 연계 2) 단기/연간 ODA 시행계획 3) 사업 유형별 이행 계획 △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관 사업 간 전략적 연계 초청 연수,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 수요 발굴 ⇒ 수요 기반 컨설팅 사업 추진 ⇒ 컨설팅 기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 확대	▽ 부처/기관 차원의 ODA 목표 및 추진전략 부재 - 중장기 전략목표 없이 매년 ODA 사업을 취합한 시행계획만 제출 - 다수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통합적 관리 미흡 ▽ 타당성조사 등 사업기획 절차 개선 여지 - 타당성조사 검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심의절차 미흡 - 분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성과목표 제시

- ✓ 기관의 통합적 ODA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사업 간 전략적 연계·시너지 확대 필요
- ✓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개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① 성과관리 역량 – 2. 사업 관리

- ▶ 사업 수행체계, 사업관리 지침 및 매뉴얼, 사업정보 관리체계, 협업·조정·연계

우수 사례	미흡 사례
△ 사업별 구체적인 관리 지침 및 매뉴얼 수립 적용 - 사업 시행지침, 위탁 관리용 사업수행 매뉴얼 - 사업 단계별 보고회 개최, 사업보고서 품질심사 실시 △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체계적 축적, 관리 - 사업문서 표준 양식 구비, 문서관리기준 보유 - 정보공개지침,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의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사업정보 공개	▽ 총괄부서 역할 미흡 및 수행체계에 맞는 사업 관리지침 미비 - 부처 내 다수 사업부서·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통합 관리·조정체계 미흡 - 사업위탁관리, 협조기관 지원 지침 등 부재 ▽ 사업정보 관리 및 활용 미흡 - 사업문서, 정보 관리기준 부재 - 담당부서나 실시기관에서 사업정보를 분산 관리, 활용에 한계

- ✓ 부처의 총괄적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지침 수립과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 사업정보의 통합적관리 필요: 문서관리, 정보 공개기준 마련

① 성과관리 역량 – 2. 사업 관리

- ▶ 사업정보 관리 및 활용

- 관리대상 문서의 종류에 따라 표준 양식, 관리 책임자, 활용 방안 수립 필요

<주요 사업문서 종류에 관한 규정 예시>

제5조(주요 사업문서)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사업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란 수원기관에서 협력단으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기본 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 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관리 및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다.
2. "집행계획(Project Document)"이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사업정의, 수행체계, 예산 및 일정, 조달·위험·의사소통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은 협력단과 수원기관 간 사업추진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문서로, 사업범위 및 양국간 분담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연차점검 보고서(Project Annual Report)"란 연도별로 집행계획 대비 진도, 예산, 성과 등을 중간 점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종료평가 보고서(End-of-project Evaluation Report)"란 「사업평가 시행세부지침」 제4조의2에 따라 종료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종료평가의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6. "종료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란 사업을 종료하며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KOICA 국별협력사업 규정(2021.8.24. 개정))

① 성과관리 역량 – 3. 사후관리 노력

▶ 사후관리 제도, 사후관리 이행, 사업성과 유지

우수 사례	미흡 사례
△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보유 - 사후관리 대상 선정, 지원 범위, 기간 및 예산 등 기준 설정 - 사업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 계획 포함 △ 국제기구와의 협업,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성과 유지·확대	▽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기준 미비 - 사후관리 규정 미보유 기관 다수 - 사후관리를 단순 유지보수, 후속사업 발걸로 인식하는 경향 ▽ 종료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후속조치 미흡 -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사후관리 추진에 한계

- ✓ 사후관리를 단순 유지보수에서 후속사업을 통한 사업고도화방안과 연계
- ✓ 기관의 ODA 성과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개념과 기준 정립,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① 성과관리 역량 – 3. 사후관리 노력

사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 예시

- ▶ 사후관리, 사후점검, 사후지원의 정의
- ▶ 지원 절차: 사후점검 ⇒ 계획 수립 ⇒ 대상 선정·승인 ⇒ 시행 ⇒ 종료·보고
- ▶ 사후점검: 모니터링, 종료·평가,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운영·관리 현황, 성과달성도, 후속조치 필요사항 점검 등
- ▶ 사후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사업비, 사업기간
 - (프로젝트) 시설물 교체·기술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내, 사업종료 원료 후 5년 이내 등
 - (연수사업) 귀국 연수생의 지식공유·연구활동, 지역사회 활동, 동문회 운영 등

<부처 사후관리 지침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지침

제정 2017.3.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적용한 제25호 인조, 3년 국제개발 협력 평가소위원회 평가 결과(1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종료된 이후에도 그 사업의 성과가 유지·확대되도록 하여 지속 활동 확립을 도모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 사후관리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사업"이라 함은(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 제25호 인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운영사업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② "사후관리"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에 대한(이하 "평가", "점검"이라 함) 및 추가 지원으로 다음 더 효과 활동을 의미한다.
1. 사후점검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에 그 지원 사업의 진행, 예산효과 등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후지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 투입을 지원하는 모든 후속지원 활동을 말한다.
- ③ "지원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위)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재기영양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사후점검) ① 지원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기영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집행, 평가·평가 등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수검자의 활동 현황 및 성과
2. 후속조치 필요사항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기영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① 성과관리 역량 - 3. 사후관리 노력

<수행기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예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 개요

- 사후관리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에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점검과 사후지원을 의미함
- ※ 사후점검 사업종료 후 지원 내용과 운영현황 및 성과 점검을 위해 실시된 정기적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비정기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
- ※ 사후지원 사업의 운영의 목적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본사업이 종료된 후 추가 예산투입을 지원하는 활동

2. 사후관리 대상사업

- 사업기간이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사업 중 사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3. 사후관리 지원 절차



4. 지원절차별 세부내용

① 사후 점검

- ① 모니터링,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후점검 실시
- ② 사업종료후(비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진행 점검 실시
- ③ 사업의 운영 및 관리 현황, 사업성과 달성도, 후속사업 필요사항 등
- ④ 점검은 자체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⑤ 사업종료후(비정기) 사후점검을 통해 사업진행 점검 실시

② 사후관리 계획계획 수립

- ① 사업종료후(비정기) 사후점검을 통해 사업진행 점검 실시 1회 실시하여 사후관리 지원계획,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사후관리 지원범위

- 지원에 대한 교육, 훈련, 조모금 및 부속 지원
- 해당사업의 검토, 점검 또는 내부 노후화 사업물의 교체
- 전문가 자문 및 연구회 조성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기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나. 사업비

-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단,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함)로 함.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변경 내 지원 한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종료 보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② 자체 평가 역량 - 1. 자체평가 수행 기반

▶ 평가지침·매뉴얼 구비 및 적용, 적절한 평가대상 선정, 명확한 평가 목적·계획

우수 사례	미흡 사례
△ 구체적인 평가지침 및 매뉴얼 적용 - 평가대상 선정 기준, 외부 평가팀 선정 등 절차 준수 △ 자체평가위원회, 외부 의견 수렴 활성화 - 평가 평가대상 선정, 평가결과 심의에 외부위원 참여로 객관성, 체계성 개선	▽ 자체평가지침은 있으나 실효성 부족 - 지침의 구체성 부족, 내용 상충, 매뉴얼 미비 - 자체평가위원회 역할 불분명, 운영 실적 저조 ▽ 형식적인 평가 계획 - 종합적 평가계획 미비, 일부 사업은 계속 제외 - 소수 개별 사업만을 대상으로 일회성 평가 반복 - 평가계획 제출양식에 따라 획일적 평가계획 제시 - 평가지표, 조사방법에 구체성 미흡

- ✓ 지침 개정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필요
 - 평가대상 선정, 평가계획결과 심의 개선과제 도출 등 전반에 역할 확대 필요
- ✓ 소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적 평가계획 수립 필요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② 자체 평가 역량 - 3. 평가결과 활용

- ▶ 개선과제 도출·이행, 사업 개선에의 환류, 평가 결과 공유·공개

우수 사례	미흡 사례
△ 평가결과 검토 후 구체적 개선과제 도출 - 성과관리 체계 정비 및 중장기 전략에 반영 △ 개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이행가능성 분석에 기반하여 이행계획 수립 - 이행 목표, 방법,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계획 수립 - 개선과제 이행점검 시 과제 이행의 주요 성과, 향후 조치계획 수립으로 지속성 제고	▽ 제언 검토 및 개선과제 도출에 소극적 - 평가보고서 제언의 타당성·이행가능성 검토 미흡 => 낮은 채택률 - 반복적이고 이행 용이한 개선과제 선정 - 보고되는 이행률은 높으나, 실제 사업관리체계 개선이나 유사사업 기획에 활용된 사례 저조 ▽ 평가보고서 공유, 공개 미흡 -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 수원국 정부와 공유, 의견 수렴 체계 미비

- ✓ 평가결과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평가결과 활용, 공유·공개 기준 마련 필요

시사점 및 제언

- ▶ 사업 기획: 부처의 종합적 추진 전략 하에 연계성 높은 사업으로 편성
 - 기존 사업의 반복보다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연계된 신규 사업 발굴
 - 부처 차원의 수원국 수요 조사,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연구 추진
 - 총괄부서의 주체적인 정책/이행 관리와 총괄 역할 강화
- ▶ 성과관리·평가 제도: 부처 여건에 맞는 지침, 규정의 필요성 검토 선행 필요
 - 사업 특성에 맞는 관리 매뉴얼, 사후관리 지침, 평가지침 등의 구체성 수준 검토
 - 사업 정보의 관리 필요성 인식
 -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 검토 및 현실적 운용 방안 마련
- ▶ 평가 활용: 평가의 목표 명확화 및 활용도 제고
 -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화
 -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업추진 개선, 향후 사업 발굴·기획에 유용한 정보 도출이 가능하도록 평가·제언 범위와 평가팀의 업무 구체화
 - 평가품질 검토 기준 수립 및 품질 미달 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감사합니다

이 은 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eslee@kiep.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록 6. 2022 ODA 성과관리 워크숍 토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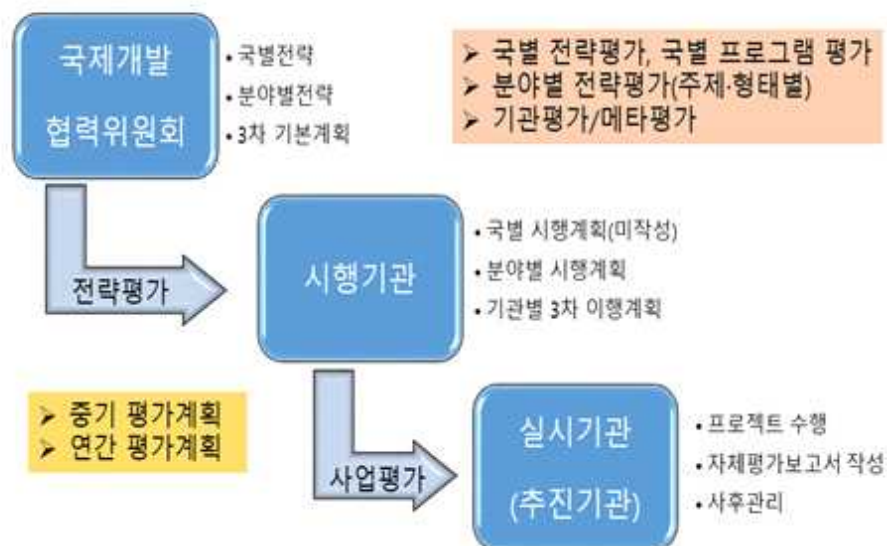
2022년 ODA 성과관리 워크숍 토론자료

ODA 성과관리 역량 제고방향과 과제

2022.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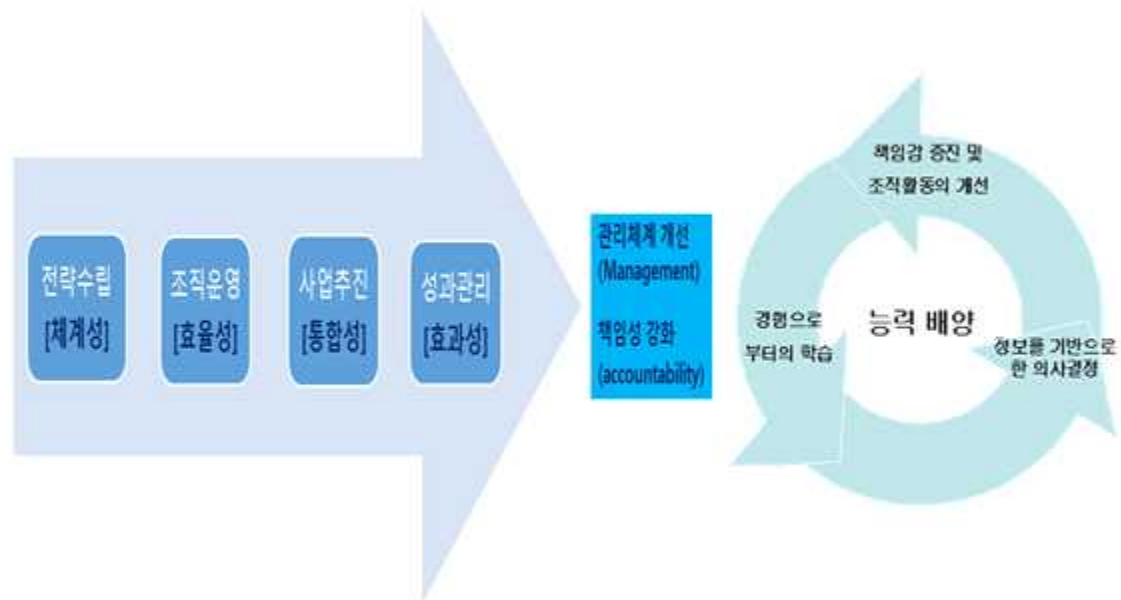
권 율/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ykw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나라 ODA 수행체제와 통합적 평가시스템



자료: 권율의,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p. 223 참조

우리나라 ODA 사업단계와 성과관리 역량



자료: 권윤희(2021),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p. 233 참조

시행기관별 수행체제와 사업구조

[’22년도 기관역량진단 시행 대상 기관]

구분	기관	ODA 총예산 (A)	순수양자 ODA 규모	사업실시/수행 기관 개수 (B)	실시기관별 평균예산(A/B)	사업건수 (C)	사업건별 평균예산(A/C)
상위	교육부	765.0	737.2	13	58.8	94	8.1
	보건복지부	677.4	407.0	8	84.7	46	14.7
	산업통상자원부	521.1	492.2	5	104.2	58	9.0
	농촌진흥청	260.8	256.5	1	260.8	29	9.0
	국토교통부	227.4	209.7	11	20.7	28	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5.9	170.0	14	14.0	56	3.5
	해양수산부	142.2	74.8	12	11.8	11	12.9
중위	문화체육관광부	118.6	60.9	7	16.9	25	4.7
	고용노동부	85.9	56.9	4	21.5	12	7.2
	관세청	78.7	55.2	2	39.4	14	5.6
	법무부	55.2	31.0	2	27.6	6	9.2
	기상청	48.1	40.8	2	24.1	8	6.0
	문화재청	27.1	26.1	3	9.0	10	2.7

자료: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역량평가 측정역 기준

[기관별 양자 ODA 사업 유형 비중(2021)]



■ 상위규모 기관별 주요 사업 유형

- 교육부: 장학지원(67.5%), 민간협력(13.2%)
- 보건부: 프로젝트(60.3%), 기타기술협력(18.3%)
- 산업부: 프로젝트(84.6%), 연수(9.5%)
- 농림청: 개발컨설팅(99.0%)
- 국토부: 프로젝트(74.1%), 개발컨설팅(22.9%)
- 과기부: 프로젝트(75.4%), 연수(8.3%)
- 해수부: 프로젝트(92.6%), 연수(5.8%)

■ 중위규모 기관별 주요 사업 유형

- 문체부: 프로젝트(52.3%), 연수(28.0%)
- 고용부: 프로젝트(55.7%), 기타기술협력(23.3%)
- 관세청: 개발컨설팅(51.1%), 프로젝트(36.6%)
- 법무부: 기타(49.5%), 프로젝트(40.3%)
- 기상청: 프로젝트(96.1%)
- 문화재청: 프로젝트(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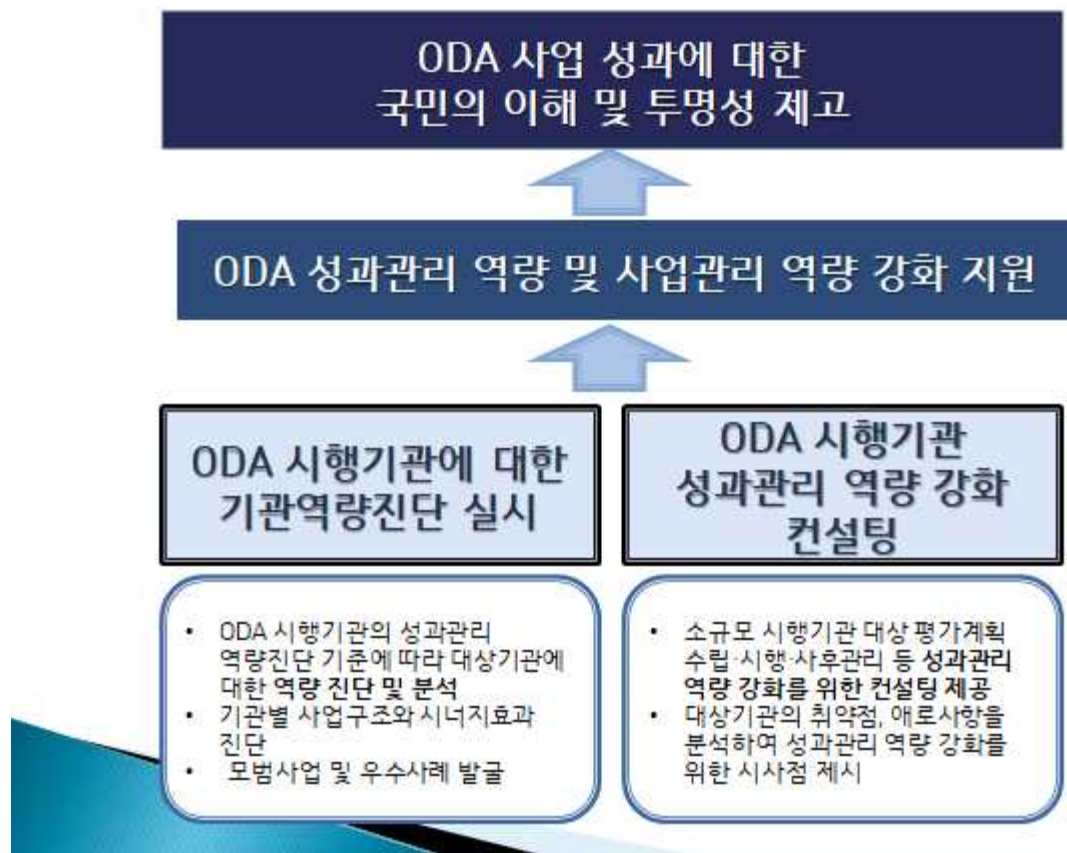
5

[대상기관별 자체평가 현황(2021)]

구분	기관	21년 자체평가 사업건수	21년 자체평가예산 (백만원)	ODA 사업건수	ODA 규모 (억원)	평균 자체평가예산 (1건당 백만원)	ODA 규모 대비 자체평가예산 비중
상위	교육부	3	100	94	765	33	0.13%
	보건복지부	3	160	43	571	53	0.28%
	산업통상자원부	3	150	56	502	50	0.30%
	농촌진흥청	2	60	28	257	30	0.23%
	국토교통부	3	60	27	226	20	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95	54	186	32	0.51%
	해양수산부	3	-	25	119	-	-
중위	문화체육관광부	2	85	12	75	43	1.13%
	고용노동부	2	20	10	73	10	0.27%
	관세청	2	20	11	56	10	0.36%
	법무부	1	-	6	55	-	-
	기상청	2	-	6	41	-	-
	문화재청	2	-	10	27	-	-

자료: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및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결과(안) 기준

6



7

20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실시

▶ 진단항목별 세부 질문 및 진단지표

[기관역량진단 항목]

진단 항목		세부 진단지표	배점
대항목	소항목		
① 성과관리 역량(50%)	1. 사업기획(15)	가.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10
		나. 계획 수립의 충실성	5
	2. 사업관리(25)	가. 수행체계의 명확성	5
		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10
		다.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	10
	3. 사후관리 노력(10)	가. 사후관리 이행 노력	5
		나. 사업성과 유지 노력	5
② 자체 평가 역량(50%)	1. 자체평가 수행기반(15)	가.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	5
		나. 평가계획의 명확성	10
	2. 자체평가관리(20)	가. 평가 과정의 신뢰성	10
		나. 평가결과의 충실성	5
		다. 평가품질 개선 노력	5
	3. 평가 결과의 활용(15)	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5
		나. 평가결과 환류의 충실성	10
가점	사업효과	우수사례 가점	3

8

기관역량진단 항목과 개선과제

진단 항목		세부 진단지표
성과 관리 역량 (50%)	사업기획(15)	1.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10) - 시행기관의 사업이 ODA 상위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2. 계획 수립의 충실성(5) -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실행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사업관리(25)	3. 수행체계의 명확성(5) - 기관 내 역할 분담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4. 사업관리의 체계성(10) - 계획된 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지침 보유 등)가 작동되고 있는지? - 사업추진시 발생한 관련 DB를 관리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는지? 5.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10) - 타 시행기관과의 사업 연계 실적 - 타 시행기관과의 사업 연계 협업 추진을 위한 노력 정도
	사후관리 노력(10)	6. 사후관리 이행 노력(5) -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노력 7. 사업성과 유지 노력(5) - 사업의 고른을 바탕으로 국내외 파트너십 유지 등 사업성과 지속을 위한 노력

9

자체 평가 역량 (50%)	자체평가 수행기반(15)	8.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5) -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지침,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9. 평가계획의 충실성(10) - 연간 자체평가 계획상의 과제가 목적에 적합한 과제로 선정되었는지? - 평가의 목적에 따라 방법, 수행 및 관리계획이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지?
		10. 평가과정의 신뢰성(10) - 자체평가가 평가기준 및 절차에 맞춰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 평가의 객관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 예산부족시 내부평가의 객관성 확보방안은?)
	자체평가 관리(20)	11. 평가결과의 충실성(5) - 평가보고서의 정책제언이 타당하고 유용한지?
		12. 평가품질 개선 노력(5) -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
	평가결과의 활용(15)	13.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5)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개선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해 냈는지?
		14. 평가결과 활용의 충실성(10)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이행 완료 비율 (※정량) - 이행된 과제가 당초 정책제언의 목적 달성에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10

기관역량진단 결과: 성과관리 역량부문 개선과제

- (수행체계) 시행기관(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관리체계 확립
 - 기관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업기획 및 사전검토 강화
 - ODA사업을 전담기관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도 중앙부처는 전략 수립, 위탁사무 관리 등 주도적인 관리 추진 필요
- (사업관리) 사업관리지침의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통합적·체계적 사업관리 기반 마련
 - 단계별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DB 관리를 통한 사업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공유를 위한 DB 관리 방안(플랫폼 활용, 정보공개 기준 등) 수립 필요
- (사후관리)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를 고려하는 체계 정착 필요
 - 수원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 수립·보완

기관역량진단 결과: 자체평가 역량부문 개선과제

- (수행기반) 자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대면 또는 화상회의)을 통한 자체평가 수행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
- (평가관리) 평가예산 확보,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내실화 필요
 - 평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외부평가 확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필요
 - 외부전문가 자문,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등 통해 품질관리를 적극 보완 필요
- (결과활용) 평가 제언의 적극적 환류 및 평가결과 공유 확대 필요



감사합니다



부록 7. 기관역량진단 기초자료 양식

[00부] 기관역량진단 기초 자료

< 000부 000과, 홍길동 事, ☎ 000-0000-000 >

I. 00부, ODA 사업 추진 개요 [5쪽 이내]

1. 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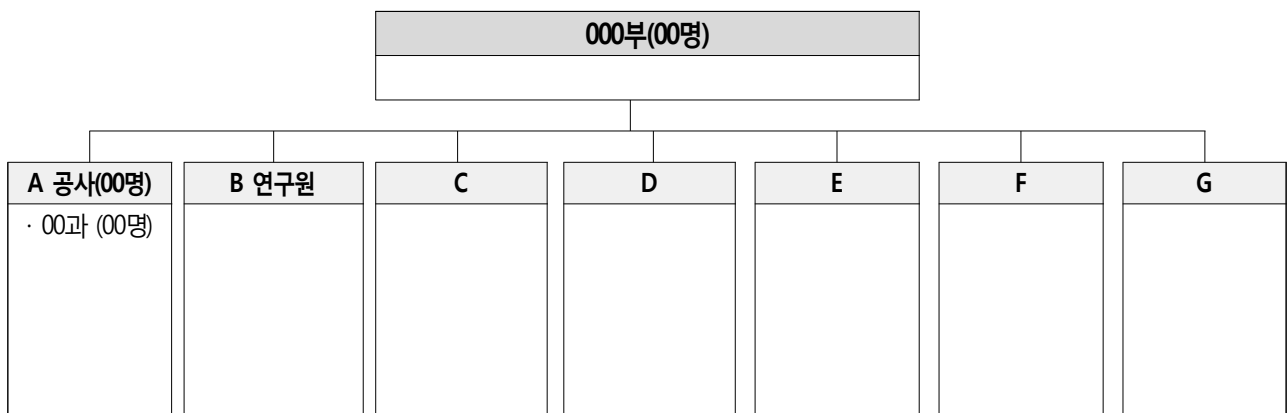
- ODA 추진 연혁 및 사업 분야
- 사업수행 방식

2. 추진 현황('20~'21)

- 사업비 규모(사업 유형 및 분야별)
☞ (작성안내) 사업분야 : 교통, 산업, 농림수산, 지역개발, 보건위생, 에너지, 물관리, 교육 등
/ 사업유형 :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연수사업 등
- 핵심 사업

3. 추진 체계

- ODA 시행기관: 전담·총괄 부서
- ODA 사업실시기관(사업추진기관): 소속·관계기관
- 사업발굴·관리 절차 등 사업추진 체계(사업관리 지침 목록 첨부)



☞ (작성안내) ODA 사업수행 조직도(부서·기관명, 담당업무 및 인원 표시) 포함

4. 평가 제도 및 실적

- 평가 예산 및 담당 인력
- 평가지침 또는 매뉴얼, 심의위원회 등 관련 조직
 - ☞ (작성안내) ODA 시행기관의 총괄부서 규정이 없을 경우, 산하 사업실시기관의 규정을 작성
- 사업비/건수 대비 평가 실적(평가과제 목록 첨부)

5. 기타 특징 및 고려 사항

II. 진단항목별 현황 및 실적 자료

1. 성과관리 역량(50점)

1-1. 사업기획(15점)

가.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 (기관의 ODA 추진전략/계획)
 - (추진전략/계획 상 ODA 추진 목표)
 - * (증빙자료) ㉠ (작성안내) 연번만 작성, (작성예시) 1-1-가-(a), 1-1-가-(b)
 - (정부 ODA 전략 반영 내용)
 - (수원국 전략 고려)
 - (국제규범 고려)
- (ODA 사업계획 및 구성)
 - (중점 사업 분야 및 유형)
 - (핵심사업)
 - (중점협력국 비중)

나. 계획 수립의 충실성

- (사업추진계획 수립 현황)
 - (사업단계별 관리 계획)
-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 (내부 지침 및 절차)
 - (수원국 수요 반영 방식 및 실적)

- (사업타당성 검토 방법 및 실적)
- (성과목표 제시)

※ 필수 제출자료: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계획서(사업이 많을 경우 핵심사업 중심), 관련 지침·규정(사업발굴 지침, 사업기획 가이드라인 등), 기타 실적(예시) 증빙자료

1-2. 사업관리(25점)

가. 수행체계의 명확성

- (조직 및 업무분담 현황)
 - ☞ (작성안내) I-3. 추진체계에서 제출한 조직도를 바탕으로 업무분담 및 관리체계의 특징 설명
-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체계)
- (산하기관의 관리체계)
- (외부 위탁관리)

※ 필수 제출자료: 조직도(담당업무, 인력수, 업무 체계 포함), 업무협약 실적자료, 산하기관 및 위탁관리 관련 지침, 기타 실적(예시) 증빙자료

나. 사업관리의 체계성

①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5점)

- (사업관리 지침)
 - (사업관리 절차 및 이행)
 - (기초선·종료선 조사)

- (사업 품질 및 위험관리)
- (사업위탁 관리)

※ 필수 제출자료: 사업관리 지침, 항목별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② 사업정보(DB) 관리체계

- (사업정보 및 문서 관리 기준)
- (주요 사업 문서)
 - (보유·관리중인 사업 문서)
 - (보유중 사업정보 활용 실적)
- (국내외 네트워크 DB 관리 실적)
- (사업정보 공개)
 - (공개 기준)
 - (공개 현황 및 실적)

※ 필수 제출자료: 관련 지침, 항목별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다.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

① 사업 간 연계·조정 노력

- (사업 연계)
 - (주요 연계 분야 및 노력)
 - (협의체 활동 참여 실적 및 성과)
- (사업연계·조정 권고 이행 실적)

☞ (작성안내) 국무조정실의 사업연계 권고 내용(목록) 및 이행 계획, 실적 및 성과를 작성

연도	연계·조정 권고 사업 및 내용	이행 내용 및 성과
2020	1. (사업명) - (권고 내용)	
	2.	
2021	1. (사업명) - (권고 내용)	

②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

-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 (파트너십 및 소통)
 - (민간부문)
 - (해외공관 및 국제기구)
 - (수원국 관련 기관)
- (협업의 주요 성과)

※ 필수 제출자료: 관련 지침/계획문서, 항목별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①-3. 사후관리 노력(10점)

가. 사후관리 이행 노력

- (사후관리 체계)
 - (사후관리 수요)
 - (사후관리 지침 내용)
 - (사후관리 대상 선정)

- (사후관리 이행 체계)
- (사업 사후관리 사례 및 성과)

※ 필수 제출자료: 사후관리 지침, 항목별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나. 사업성과 유지 노력

- (사업수행 교훈 반영)
 - (주요 교훈)
 - (교훈의 반영)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성과 유지·지속)
 - (수원국 현지 네트워크)
 - (국내 네트워크)
- (사업성과 유지·확대 추진사례)

※ 필수 제출자료: 항목별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2. 자체평가 역량(50점)

②-1. 자체평가 수행기반(15점)

가.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

- (자체평가 제도 현황)
 - ☞ (작성안내)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되는 경우 보유중인 관련 지침의 내용, 20~21년 이행실적 서술(증빙 제출). 미해당 시 '해당없음' 명시
 - (평가지침 및 매뉴얼)

- (평가 절차)
- (평가 결과 심의)
- (연간 평가계획 수립)
 - (평가 목적 및 활용 방안)
 - (평가 관리 계획)
- (자체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 및 한계)

※ 필수 제출자료: 항목별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나. 평가계획의 충실성

① 평가대상 과제의 적절성

- (평가대상 선정)
 - (선정 기준)
 - (선정 방법)
- (평가대상 과제)

☞ (작성안내) 20~21년 평가대상 과제로 목록 및 아래 표 포함하여 작성

[전체 사업 대비 평가대상 과제 비중]

	2020년 (평가예산: ***백만원)			2021년 (평가예산: ***백만원)		
	전체 사업 (A)	평가대상 사업(B)	비중 (%, B/A)	전체 사업 (A)	평가대상 사업(B)	비중 (%, B/A)
총 금액 (백만원)						
건수						

- (대표성)
- (평가 목적 부합도)

※ 필수 제출자료: 평가대상 목록, 관련 지침, 기타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② 평가계획의 명확성

☞ (작성안내) '20~21년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계획(또는 제안요청서)을 전수 제출하고, 대표 2건(연 각 1건)에 대해 아래 각 항목의 내용을 요약(쪽수 명시). 미해당 시 '해당 없음' 명시

1) ○○사업(금액/기간) 평가계획

- (평가 목적)
- (평가 활용방안)
- (평가 방법, 평가지표, 조사방법)
- (평가 예산)

2) △△사업(금액/기간) 평가계획

- (평가 목적)
- (평가 활용방안)
- (평가 방법, 평가지표, 조사방법)
- (평가 예산)

※ 필수 제출자료: '20~'21년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계획(또는 제안요청서)을 전수 제출

②-2. 자체평가 관리(20점)

가. 평가과정의 신뢰성

① 평가 수행의 적절성

☞ (작성안내) '20~'21년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보고서를 전수 제출하고, 대표 2건(위의 평가계획 제출한 평가대상)에 대해 아래 각 항목의 내용 및 특징을 요약(꼭수 명시). 미해당 시 '해당없음' 명시

1) ○○사업(금액/기간) 평가보고서

-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지침·절차 준수 점검 및 관리)
- (조사방법)
- (근거자료)

2) △△사업(금액/기간) 평가보고서

-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지침·절차 준수 점검 및 관리)
- (조사방법)
- (근거자료)

※ 필수 제출자료: '20~'21년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보고서를 전수 제출

② 평가 수행의 객관성 확보 노력

- (평가관리 체계)
 - (평가 담당 인력)
 - (평가 예산)
 - (외부 위탁 여부)
- (평가의 객관성 제고 노력)
 - (독립성·객관성 보장 장치)

※ 필수 제출자료: 관련 지침, 기타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나. 평가과정의 충실성

☞ (작성안내) 2-2.가 항목에서 제출한 대표 평가보고서 2건을 대상으로,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보고서의 관련 내용 및 자체적인 평가의견 제시(보고서 페이지 명시).

- 1) ○○사업(금액/기간) 평가보고서
 - (평가 분석의 적절성 여부)
 - (적절한 정보 활용 및 근거 제시)
 - (분석 및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
 - (도출된 제언의 구체성)
- 2) △△사업(금액/기간) 평가보고서
 - (평가 분석의 적절성 여부)
 - (적절한 정보 활용 및 근거 제시)
 - (분석 및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
 - (도출된 제언의 구체성)

다. 평가품질 개선 노력

○ (평가 품질)

- (평가품질 기준)
- (평가수행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평가 품질기준 및 절차 이행)

○ (평가품질 개선 노력)

- (평가보고서 품질에 대한 자체 의견 및 개선 필요성)
- (메타평가 결과 및 반영 노력)
- (개선 노력 및 결과)

※ 필수 제출자료: 관련 지침, 기타 실적 및 예시 증빙 자료

2-3. 평가결과의 활용(15점)

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 개선 과제 도출 현황

- (개선과제 도출 방법)
- (개선과제 도출 건수 및 내용)

☞ (작성안내) 모든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작성, 도출한 개선과제가 없을 시 해당없음 명시

연도	평가 결과	도출한 개선과제 및 이행 계획
2020	1. (평가대상 사업명) - (평가결과/제언 내용)	
	2.	
2021	1. (평가대상 사업명) - (평가결과/제언 내용)	

- (중장기 개선 과제 도출 사례)

※ 필수 제출자료: 실적 및 사례 증빙 자료

나. 평가결과 환류의 충실성

① 개선과제 이행 및 환류 체계

- (개선과제 이행 성과)  (작성안내) 20~21년 개선과제 건수 및 이행 내용을 작성

연도	개선과제	이행 내용 및 성과
2020	1.	
	2.	
2021	1.	
	2.	

- (개선과제 이행 점검 및 관리)
- (사업 개선 환류)

※ 필수 제출자료: 실적 및 사례 증빙 자료

② 평가 결과 공유 및 공개

- (평가결과 공유·공개 방침)
 - (수원국 정부와 공유 실적)
 - (국내외 협력기관과 공유 실적)
 - (일반 공개 방법 및 실적)
 - (의견수렴 체계 및 실적)

※ 필수 제출자료: 관련 지침, 실적 및 사례 증빙 자료

3. 우수사례(최대 3점 가점) (최대 1건 제출)

☐ 우수사례 사업명과 자료제출

- 우수사례 선정사유
- 우수사례 선정근거
- 우수사례 자료제출

근거자료 목록

구분	근거자료 연번/파일명	관련 고려 요소
① 성과관리 역량(50점)		
①-1.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1-1-가-a. ○○부 ODA 종합 추진계획 ※ 첨부물 분량이 많을 경우, 관련된 페이지 표기 1-1-가-b. 1-1-나-a. 1-1-나-b,c,d(동일)	
①-2. 사업관리		
①-3 사후관리 노력		
2. 자체평가 역량(50점)		
②-1. 자체평가 수행기반		
②-2. 자체평가 관리		
②-3. 평가 결과의 활용		
3. 우수사례(가점 3점)		
3-1. 우수사례 선정사유와 자료 제출		